

Ⅲ. 손해배상청구사례

전체 강연 내용 중 특정 일부만을 발췌하여 보도함으로써 그 강연 전체의 취지를 오해하게 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허위 사실의 전달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1.자 판결 (2004가합30267)

서울고등법원 2006. 7. 19.자 판결 (2005나102241)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2006년 7월 19일 주식회사 오마이뉴스가 주식회사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에게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한 1심 판결에 더해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조선일보가 2004년 4월 1일자 12면 『MBC 미디어비평 프로는 위험 - 진중권씨 서울대 강연서 비판』 제하의 기사로 서울대 진보정치 실천단 2004 총선정치강연회에서 강연한 진중권의 말을 인용해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과시스트’ 언론집단”라고 보도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연내용을 방송하거나 이를 신문기사화 하여 보도함에 있어서는 방송 시간이나 지면의 한계 때문에 그 강연 내용 전체를 보도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편집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중심 내용을 일관성 없이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을 동일성 없이 모호한 형태로 방송·기사화하거나 특히 전체 강연 내용 중 특정 일부만을 발췌하여 보도함으로써 그 강연 전체의 취지를 오해하게 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허위 사실의 전달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언론 보도가 학자의 저술이나 강연의 내용을 빌려 타인을 비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인용하여 그 전체적

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요청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면서 “이 사건 보도의 경우 피고 조선일보가 진중권이 오연호 기자의 발언을 직접 전해 들었던 것처럼 ‘오연호 기자가 ……라고 하더라’ 라는 형식으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보도한 것은 그 발언 취지를 정확히 옮겼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위 문장에 곧바로 이어서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는 문장을 붙여 적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중권의 강연 취지를 왜곡하여 독자로 하여금 ‘소위 진보논객인 진중권이 바라본 오마이뉴스는 없는 사건도 만들어 내는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다’라는 인상을 가지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4가합30267 손해배상(기)

원 고 :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 505호

대표이사 오 연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전 태 진

피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2. 이 ○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3. 최 ○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4.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서울 중구 정동 1-16

대표이사 김 찬

5. 최 △ △

서울 중구 정동 1-16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변론종결 : 2005. 9. 23.

판결선고 : 2005. 10. 21.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선일보 신문 A12면 오른 쪽 상단부에 상자기사로 '바로 잡습니다' 라는 제목을 사진식자 24급 고딕체 활자로, 그 아래에 [별지1] 기재 내용을 10급 명조체 활자(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선닷컴 인터넷 사이트 메인 초기화면(www.chosun.com) 및 사회면(www.chosun.com/national)의 각 메인 톱 기사목록 상단부에 '바로 잡습니다' 라는 제목을 11포인트 굴림체로 각 게재하고, 이에 각 하이퍼링크 하여 제목은 16포인트 굴림체, 본문은 10포인트 크기로 [별지2] 기재 내용을 24시간 동안 게재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가 위 제1, 2항 기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금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이○○, 피고 최○○, 피고 최△△에 대한 각 청구,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이○○, 피고 최○○은 연대하여 금 1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최△△은 연대하여 금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 한 조선일보 A12면 오른쪽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제목은 사진식자 24급 고딕체, 본문은 본문활자 크기의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시하고, (3)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 날 조선닷컴 인터넷 사이트 (www.chosun.com) 중 초기화면(http://www.chosun.com/) 메인 톱기사 목록 및 사회면 (http://www.chosun.com/national) 메인 톱기사 목록의 각 최상단에 각 제목은 붉은색 11포인트 굴림체, 본문은 10포인트 크기의 [별지4] 기재 정정보도공고문 및 이에 각 하이퍼링크 하여 제목은 16포인트 굴림체, 본문은 10포인트 크기의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4) 만약에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가 위 제(2)(3)항 기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진중권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를 관리,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배포하는 자, 피고 이○○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서 기사를 편집·게재하는 자, 피고 최○○은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보도내용을 작성 한 자,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털조선일보'라 한다)는 조선닷컴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경영하는 자, 피고 최△△은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부장으로 조선닷컴 인터넷 사이트에 기사를 편집, 게재하는 자이다.

나. 소외 진중권은 2004. 3. 31.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진보정치 실천단 2004 총선 정치강연회(이하 '이 사건 강연회'라 한다)에서 초청연사로서 '그리스의 폴리스와 동성애'라는 주제로 약 한 시간 정도 강연을 하고, 이어 30분 정도 '진보정당의 정치적 진출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강연을 하면서 다가오는 총선(2004. 4. 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강조하고, 우리 사회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기존 정치세력들이 서민의 정치적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우경화, 보수화 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어 그 말미에 미디어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의식 과잉과 당파성 과잉으로 인하여 지나친 편 가르기를 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조선일보, 일부 방송매체, 오마이뉴스에 대한 언급을 하였던 바, 특히 그동안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들이 보여 온 행태가 편파적이고 파시스트적인 등 매우 나쁜 것인데 최근 오마이뉴스를 보면 조선일보의 행태와 비슷한 일부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어 이를 닦아가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진보누리'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어느 네티즌이 오연호 기자가 했던 말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이를 재인용하여 '오연호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더라'고 하면서 언론비평을 모든 언론매체들을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고 조선일보는 2004. 4. 1. 익일자 조선일보 가판 A12면에서 『MBC 미디어비평 프로는 위협』이라는 제목 및 『진중권씨 서울대 강연서 비판』이라는 부제목 아래, 「인터넷언론 등 진보적 언론에 대해서도 진씨는 “오연호 기자(오마이뉴스 대표이사)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며,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 이라고 주장했다. 「...“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한겨레·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피고 디지털조선일보는 2004. 4. 1. 17:00경 조선닷컴 초기화면(www.chosun.com) 메인 톱 기사목록 최상단 및 사회면(www.chosun.com/national) 메인 톱 기사목록 최상단에 「진중권 “‘오마이’는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기사 제목을 게재하고, 사회면에 「진중권 “오마이뉴스는 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조선일보와 동일한 내용의 본문 기사를 보도(이하 피고 조선일보와 피고 디지털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을 모두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디지털조선일보는 다시 2004. 4. 1. 22:16경 조선닷컴 초기화면(www.chosun.com) 메인 톱 기사목록 최상단 및 사회면(www.chosun.com/national) 메인 톱 기사목록 최상단에 올라간 기사 제목을 「진중권 “영상매체 이젠 견제해야”」로, 사회면에 「진중권씨 “영상매체 영향력 커져...이젠 견제해야”」로 각 변경하고, 위 다.항 기재 ‘조선닷컴(www.chosun.com)’의 기사 본문 내용 중 「...진씨는...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 이라고 비판 했다」는 기사 부분을 삭제하여 게재하였고, 피고 조선일보는 2004. 4. 2. 조선일보 배달판 A12면의 제목을 『영상매체 영향력 커져...이젠 견제해야』로 바꾸고 「...진씨는...“오연호 기자(오마이뉴스 대표이사)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더라”고 비판했다」고 그 기사를 일부 수정하고, 종전의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 이라고 주장했다는 기사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이어 「“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한겨레·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격적인 시민참여 저널리즘으로 국내외로부터 주목받는 언론사로서의 신용과 명성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른바 진보 논객으로 잘 알려진 진중권의 이 사건 강연회 내용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 발췌하여 특히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직업윤리와 사회적 명예에 직결되는 내용에 관하여 진중권이 하지 않은 강연 내용을 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진중권이 이 사건 강연회에서 ①“오연호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②“오마이뉴스는 열린 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 ③“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 한겨레, 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부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언론매체 상호간의 비평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공개된 강연장에서 이루어진 발언 내용을 보도한 것인 만큼 왜곡보도가 있을 수가 없으며 그 발언 내용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의 성격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강연자의 강의를 직접 듣고 전달한 이상 진실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이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그것이 모멸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그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에 족하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의 특정인에 관한 기사가 직접 경험한 형식에 의하든 또는 전문(轉聞)한 형식에 의하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강연내용을 방송하거나 이를 신문기사화 하여 보도함에 있어서는 방송 시간이나 지면의 한계 때문에 그 강연 내용 전체를 보도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편집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중심 내용을 일관성 없이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을 동일성 없이 모호한 형태로 방송·기사화하거나 특히 전체 강연 내용 중 특정 일부만을 발췌하여 보도함으로써 그 강연 전체의 취지를 오해하게 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허위 사실의 전달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언론 보도가 학자의 저술이나 강연의 내용을 빌려 타인을 비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인용하여 그 전체적인 취지

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요청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보도의 경우 먼저, 진중권이 오연호 기자의 말이라면서 강연에서 했던 발언을 피고들이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는 바, 강연자가 직접 그 제3자로부터 들은 말인지 그 제3자 이외에 다른 중간 전달자의 개입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발언의 신빙성이나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측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앞서 살펴 본 진중권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피고 조선일보가 당초 진중권이 오연호 기자의 발언을 직접 전해 들었던 것처럼 ‘오연호 기자가 ……라고 하더라’는 형식으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보도한 것은 그 발언 취지를 정확히 옮겼다고 보기 힘들뿐더러, 위 문장에 곧바로 이어서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원래 발언의 취지는 ‘오마이뉴스에게 파시스트적인 조선일보를 닮아가지 말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다고 진중권은 증언하고 있다)이라는 문장을 붙여 적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중권의 강연 취지를 왜곡하여 독자로 하여금 ‘소위 진보논객인 진중권이 바라본 오마이뉴스는 없는 사건도 만들어 내는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다’라는 인상을 가지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언론비평을 모든 언론매체들을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강연 내용을 ‘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 한겨레, 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고 보도한 부분은 그 전반적인 취지의 왜곡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살피건대,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는 다른 언론사의 보도태도나 역할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함이 그 주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

나아가, 진실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증인 진중권의 증언에 의하면, 진중권은 오연호 기자를 직접 만나서 ‘좋은 기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이 사건 강연회에서 ‘조선일보가 파시스트적인데 왜 오마이뉴스 등이 이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조선일보, 피고 디지털조선일보가 진중권이 직접 오연호 기자를 만나서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진중권이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은 그 진실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오연호 기자 및 진중권에게 다시 한 번 이 사건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아니한 채 취재 기자들의 메모에만 의지한 채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사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그 동안 피고 조선일보, 피고 디지털조선일보에 대하여 수많은 악의적이고 비방적인 보도를 해왔으므로 이 사건 보도는 그 반격권의 범위에서 이전에 행하여진 원고의 비방적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루어졌고, 그 비판의 수위에 있어서도 원고의 피고 조선일보, 피고 디지털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의 수위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는 그 한도 내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펴건대, 설사 원고가 종래 피고 조선일보나 피고 디지털조선일보에 대하여 보도 행위를 통하여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별개의 위법행위인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이 상쇄된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위법행위자는 각기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며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또 다른 위법행위가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보도는 위법한 명예훼손 행위이므로 이 사건 보도를 각 게재한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원고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고 언론사 상호간의 소송이라는 특색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적인 보도에 의한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다만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에 대하여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1,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원고에게 각 1일 금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이○○, 피고 최○○, 피고 최△△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섭
판사 이봉수
판사 황인경

2심 판결문

사 건 : 2005나10224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 505호

대표이사 오연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 전태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상훈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서울 중구 정동 1-16

대표이사 김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김태수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4가합30267 판결

변론종결 : 2006. 6. 7.

판결선고 : 2006. 7. 19.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5. 4.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선일보 A12면 오른쪽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제목은 사진 식자 24급 고딕체, 본문은 본문활자 크기의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시하고,

(3)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 조선닷컴 인터넷 사이트(www.chosun.com) 중 초기화면(<http://www.chosun.com/>) 메인 톱기사 목록 및 사회면(<http://www.chosun.com/national>) 메인 톱기사 목록의 각 최상단에 각 제목은 붉은색 11포인트 굴림체, 본문은 10포인트 크기의 [별지4] 기재 정정보도공고문 및 이에 각 하이퍼 링크하여 제목은 16포인트 굴림체, 본문은 10포인트 크기의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4) 만약에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가 위 제(2)(3)항기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진중권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를 관리,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배포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털조선일보'라 한다)는 조선닷컴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경영하는 자이다.

나. 소외 진중권은 2004. 3. 31.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진보정치 실천단 2004 총선 정치 강연회(이하 '이 사건 강연회'라 한다)에서 초청연사로서 '그리스의 폴리스와 동성애'라는 주제로 약 한 시간 정도 강연을 하고, 이어 30분 정도 '진보정당의 정치적 진출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강연을 하면서 다가오는 총선(2004. 4. 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강조하고, 우리 사회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기존 정치세력들이 서민의 정치적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우경화, 보수화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어 그 말미에 미디어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의식 과잉과 당파성 과잉으로 인하여 지나친 편 가르기를 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조선일보, 일부 방송매체, 오마이뉴스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바, 특히 그동안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들이 보여 온 행태가 편파적이고 파시스트적인 등 매우 나쁜 것인데 최근 오마이뉴스를 보면 조선일보의 행태와 비슷한 일부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어 이를 닦아가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진보누리'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어느 네티즌이 오연호 기자가 했던 말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이를 재인용하여 '오연호 기자가 좋은 기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더라.'라고 하면서 언론비평을 모든 언론매체들을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고 조선일보는 2004. 4. 1. 익일자 조선일보 가판 A12면에서 『MBC 미디어비평 프로는 위협』이라는 제목 및 『진중권씨 서울대 강연서 비판』이라는 부제목 아래, 「인터넷언론 등 진보적 언론에 대해서도 진씨는 “오연호 기자(오마이뉴스 대표이사)가 ‘좋은 기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며,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한겨레·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피고 디지털조선일보는 2004. 4. 1. 17:00경 조선닷컴 초기화면(www.chosun.com) 메인톱 기사목록 최상단 및 사회면(www.chosun.com/national) 메인톱 기사목록 최상단에 「진중권 “‘오마이’는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기사 제목을 게재하고, 사회면에 「진중권 “오마이뉴스는 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조선일보와 같은 내용의 본문 기사를 보도(이하 피고 조선일보와 피고 디지털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을 모두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디지털조선일보는 다시 2004. 4. 1. 22:16경 조선닷컴 초기화면(www.chosun.com) 메인 톱 기사목록 최상단 및 사회면(www.chosun.com/national) 메인 톱 기사목록 최상단에 올라간 기사 제목을 「진중권 “영상매체 이젠 견제해야”」로, 사회면에 「진중권씨 “영상매체 영향력 커져…이젠 견제해야”」로 각 변경하고, 위 다.항 기재 ‘조선닷컴(www.chosun.com)’의 기사 본문 내용 중 「…진씨는…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비판했다」는 기사 부분을 삭제하여 게재하였고, 피고 조선일보는 2004. 4. 2. 조선일보 배달판 A12면의 제목을 『영상매체 영향력 커져…이젠 견제해야』로 바꾸고 「…진씨는…“오연호 기자(오마이뉴스 대표이사)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더라.”라고 비판했다」고 그 기사를 일부 수정하고, 종전의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주장했다」는 기사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이어 「“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한겨레·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격적인 시민참여 저널리즘으로 국내외로부터 주목받는 언론사로서의 신용과 명성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른바 진보 논객으로 잘 알려진 진중권의 이 사건 강연회 내용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 발췌하여 특히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직업윤리와 사회적 명예에 직결되는 내용에 관하여 진중권이 하지 않은 강연 내용을 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진중권이 이 사건 강연회에서 ①“오연호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②“오마이뉴스는 열린 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 ③“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 한겨레, 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부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언론매체 상호 간의 비평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공개된 강연장에서 이루어진 발언 내용을 보도한 것인 만큼 왜곡보도가 있을 수가 없으며 그 발언 내용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의 성격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강연자의 강의를 직접 듣고 전달한 이상 진실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1)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이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그것이 모멸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그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에 족하다.

(2)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의 특정인에 관한 기사가 직접 경험한 형식에 의하든 또는 전문(轉聞)한 형식에 의하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강연내용을 방송하거나 이를 신문기사화 하여 보도함에 있어서는 방송 시간이나 지면의 한계 때문에 그 강연 내용 전체를 보도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편집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중심 내용을 일관성 없이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을 동일성 없이 모호한 형태로 방송·기사화하거나 특히 전체 강연 내용 중 특정 일부만을 발췌하여 보도함으로써 그 강연 전체의 취지를 오해하게 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허위 사실의 전달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언론 보도가 학자의 저술이나 강연의 내용을 빌려 타인을 비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인용하여 그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요청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보도의 경우 먼저, 진중권이 오연호 기자의 말이라면서 강연에서 했던 발언을 피고들이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는바, 강연자가 직접 그 제3자로부터 들은 말인지 그 제3자 이외에 다른 중간 전달자의 개입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발언의 신빙성이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측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앞서 살펴 본 진중권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피고 조선일보가 진중권이 오연호 기자의 발언을 직접 전해 들었던 것처럼 ‘오연호 기자가 ……라고 하더라.’라는 형식으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보도한 것

은 그 발언 취지를 정확히 옳겼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위 문장에 곧바로 이어서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원래 발언의 취지는 ‘오마이뉴스에게 파시스트적인 조선일보를 닮아가지 말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다고 진중권은 증언하고 있다)이라는 문장을 붙여 적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중권의 강연 취지를 왜곡하여 독자로 하여금 ‘소위 진보논객인 진중권이 바라본 오마이뉴스는 없는 사건도 만들어 내는 파시스트 언론 집단이다.’라는 인상을 가지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언론비평을 모든 언론매체들을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의 강연 내용을 ‘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 한겨레, 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라고 보도한 부분은 그 전반적인 취지의 왜곡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여부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건대, 이 사건 보도는 다른 언론사의 보도태도나 역할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함이 그 주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

(3) 나아가,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진중권의 증언에 의하면, 진중권은 오연호 기자를 직접 만나서 ‘좋은 기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바 없고, 이 사건 강연회에서 ‘조선일보가 파시스트적인데 왜 오마이뉴스 등이 이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조선일보, 피고 디지털조선일보가 진중권이 직접 오연호 기자를 만나서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진중권이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은 그 진실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공동피고 최○○의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를 취재한 제1심 피고 최○○(조선일보 사회부 기자이다)은 후배인 신○○과 함께 기사취재의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진중권의 강연을 듣고 있다가 진중권 강연 내용 중 진보논객인 진중권이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이 특이하다고 생각하여 데스크에 보고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게 된 것이고, 당시 최○○은 진중권의 강연내용을 녹취한 바도 없고, 강연 내용을 메모한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적어도 이 사건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진중권에게 다시 한번 이 사건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특별히 어렵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그동안 피고 조선일보, 피고 디지털조선일보에 대하여 수많은 악의적이고 비방적인 보도를 해왔으므로 이 사건 보도는 그 반격권의 범위에서 이전에 행하여진 원고의 비방적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루어졌고, 그 비판의 수위에 있어서도 원고의 피고 조선일보, 피고 디지털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의 수위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는 그 한도 내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원고가 종래 피고 조선일보나 피고 디지털조선일보에 대하여 보도행위를 통하여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별개의 위법행위인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이 상쇄된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위법행위자는 각기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며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또 다른 위법행위가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따라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사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손해의 범위

(1) 그렇다면 이 사건 보도는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를 각 게재한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 중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보도의 제목과 내용, 각 보도의 시기, 피고들의 영향력, 이 사건 보도 후 피고들이 기사의 내용의 일부를 정정한 점 등의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4. 5.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

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1,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원고에게 각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인정된 금원 지급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 병 덕

판사 이 승 한

판사 장 일 혁

〈별지 1〉 정정보도문

바로 잡습니다

본보는 2004. 4. 2.자 가판 A12면에서 “MBC 미디어비평 프로는 위험”이라는 제목 및 「진중권씨 서울대 강연서 비판」이라는 부제목 아래, 진중권씨가 서울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이사)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하며,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진중권씨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오연호 기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익명의 글을 보고 이를 재인용한 것이었고, 실제로 오연호 기자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진중권씨가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집단’ 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2〉 정정보도문

바로잡습니다

본 사이트는 2004. 4. 1. 사회면에 「진중권 “오마이뉴스는 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제목 아래, 진중권씨가 서울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이사)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하며,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진중권씨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오연호 기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익명의 글을 보고 이를 재인용한 것이었고, 실제로 오연호 기자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진중권씨가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집단’ 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3~5〉 정정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

원 기사를 작성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9.자 판결 (2005가합10390)

서울고등법원 2006. 11. 29.자 판결 (2006나2355)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2006년 11월 29일 주식회사 연합뉴

스가 주식회사 뉴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기사를 복제, 배포, 전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뉴시스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작성하여 송고한 기사는 원고 소속 기자들이 먼저 취재하여 작성, 송고한 기사를 그대로 베끼거나, 문장의 일부를 발췌하는 방식 등으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원고 기사와 같은 보도기사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 길이 등에 비추어 소재의 선택, 배열,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어투, 그 밖의 문장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거나,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평가, 비판 등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의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원고의 각 기사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사의 내용인 사실을 기초로 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 있고, 그 길이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작성한 기자가 그 수집한 소재를 선택, 배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자신의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배열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고,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저작권인정 기사는 원고의 기획 하에 원고의 소속 기자들이 업무로서 작성한 것으로 원고의 명의로 공표된 기사라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침해 기사를 복제, 배포, 전송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기타 이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매체에서 각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의 기사 송고시간이 피고의 기사 송고시간보다 빠르다는 점, 원고기사에 표현된 작성자의 개성적인 소재선택, 배열, 구체적인 용어선택, 어투, 문장표현 등이 피고기사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동종업계의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5가합10390 저작권침해금지등

원 고 :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장 영 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민 인 기

피 고 : 주식회사 뉴시스
서울 종로구 경운동 91-1 서원빌딩 7층
대표이사 최 해 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민 수

변론종결 : 2005. 10. 13.

판결선고 : 2005. 11. 9.

주 문 : 1. 피고는 별지1 기사목록 기재 각 기사 중 피고기사저작권침해여부란에 “○”로 표시된 각 기사를 복제, 배포,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각 기사를 피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기타 이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매체에서 삭제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550,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5.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1 기사목록 기재 각 기사를 복제, 배포, 전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각 기사를 피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기타 이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매체에서 삭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2 목록 기재 해명서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의 각 사회면 광고란에 가로 13cm, 세로 18cm의 크기로, 제목을 32급 신명조체 활자, 피고 및 원고의 명칭을 20급 고딕체 활자, 본문을 14급 신명조체 활자로 하여 각 1회씩 게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47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간 통신과 기타 통신의 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 각지에 취재망을 갖추고, 원고 소속의 기자들이 취재, 작성한 하루 약 1,200건의 국내의 뉴스 기사를 신문사 등에 제공하면서, 자신의 웹사이트(www.yonhapnews.co.kr)를 통하여 일반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피고 또한 통신의 발행, 인터넷 신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소속 기자가 취재, 작성한 기사를 신문사 등에 제공하고, 자신의 웹사이트(www.newsis.com)를 통하여 일반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기사는 원고 소속의 기자들이 원고의 기획에 따라 소재선택, 자료조사, 현장방문, 인터뷰, 사실확인 등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원고의 기획 및 편집 의도에 맞게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고, 그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03. 10.부터 2004. 11.까지 사이에 작성하여 송고한 별지1 기사 목록 기재 각 기사(이하 '이 사건 피고 기사'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속 기자들이 이 사건 피고 기사와 각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 기사의 송고시간보다 먼저 취재하여 작성, 송고한 기사(이하 '이 사건 원고 기사'라고 한다)를 그대로 베끼거나, 문장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원고기사에 사용된 단어를 유사한 단어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피고 기사는 원고의 이 사건 원고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침해행위를 정지하고,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며,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원고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원고 기사의 저작권인정여부 및 그 저작권자

(1) 이 사건 원고 기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에 대하여

(가)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범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창작성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와 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등을 전하는 짧은 기사, 누가 작성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기사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님을 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기사와 같은 보도기사들은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되고 따라서 동일한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는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기사와 같은 보도기사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 길이 등에 비추어 소재의 선택, 배열,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어투, 그 밖의 문장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거나,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평가, 비판 등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 내지 47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 13, 21, 38, 45, 53, 55, 57, 62, 68, 84, 90, 92, 101, 102, 104 내지 107, 126, 129, 132, 133, 134, 140, 145, 150, 160, 162, 171, 172, 179, 200, 214, 223, 225, 235 내지 237, 240, 242, 246, 256, 258, 260, 263, 265, 269, 270, 272, 274, 275, 285, 286, 292, 343, 344, 346, 356, 357, 359, 360, 370, 371, 376, 380, 382, 391, 392, 398, 406 내지 410, 412, 414, 416, 422, 426, 428, 433, 441, 446, 449, 452 내지 454, 456, 459 내지 462, 467, 470, 473, 474호증 제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 기사 중 별지1 기사목록 '원고기사저작권인정여부'란에 "○"로 표시된 각 순번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저작권인정기사들'이라고 한다)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사의 내용인 사실을 기초로 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 있고, 그 길이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작성한 기자가, 그 수집한 소재를 선택, 배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자신의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배열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원고 기사 중 이 사건 저작권인정기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13, 21, 38, 45, 53, 55, 57, 62, 68, 84, 90, 92, 101, 102, 104 내지 107, 126, 129, 132, 133, 134, 140, 145, 150, 160, 162, 171, 172, 179, 200, 214, 223, 225, 235 내지 237,

240, 242, 246, 256, 258, 260, 263, 265, 269, 270, 272, 274, 275, 285, 286, 292, 343, 344, 346, 356, 357, 359, 360, 370, 371, 376, 380, 382, 391, 392, 398, 406 내지 410, 412, 414, 416, 422, 426, 428, 433, 441, 446, 449, 452 내지 454, 456, 459 내지 462, 467, 470, 473, 47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기사는 그 내용이 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체포, 구속 등에 관련된 기사(1유형), ② 단일한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는 기사(2유형), ③ 법원의 재판, 판결에 관한 기사(3유형, 위 각 기사의 기사별 유형은 별지1 기사목록 유형란에 기재된 숫자와 같다)로 구별할 수 있는데, ① 1유형의 기사는 사건발생 경위, 사건의 결과, 관계자의 언급 내용,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상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로 구성되고, 그 배열은 보통 체포·구속되었다는 사실, 혐의내용, 체포·구속의 과정, 목격자 또는 수사관계자의 언급내용, 향후 수사방향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그 표현 또한 “누가 체포·구속됐다”, “...적발됐다”, “목격자는 ...라고 말했다”, “경찰은 ... 조사 중이다”, “...라고 드러났다”, “...입건했다”, “...기소했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의 전형적인 표현이 사용되며, ② 2유형의 기사는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과거에 있었거나, 앞으로 예정된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구성되고, 그 배열은 보통 사건의 발생·예정, 관계자의 언급, 관련사항(주로 사건, 사고의 경우 경찰의 조사상황)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그 표현 또한 “언제, 어떤 일이 발생했다”, “원인은 ...로 밝혀졌다”, “관계자(목격자)는 말했다”, “...할 예정이다” 등의 전형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③ 3유형의 기사는 법원의 재판과정에 있었던 사실이나,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관련된 객관적 사실만으로 구성되고, 그 배열은 판결의 선고사실, 선고결과, 재판부의 언급, 판결의 대상이 된 관련사실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그 표현 또한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라고 강조했다”, “...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냈다”는 등의 전형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위 각 기사는 비교적 길이가 짧고, 기사의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의 선택, 배열 등에 있어 특별한 순서나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그 표현 자체가 지극히 전형적으로 이루어지고, 깊이 있는 취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관계기관의 발표, 자료 등에 의존하여 간단하게 구성되어 그 작성이 다양한 표현방법 중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등 위 각 기사는 위와 같은 사항을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라면 누구나 위 각 기사와 같거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기사로서 그 내용, 길이 등에 비추어 소재의 선택, 배열,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어투, 그 밖의 문장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평가, 비판 등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기사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저작권인정기사들의 저작권자에 대하여

위 (1) (나) 1)항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권인정기사들의 상단에는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그 기자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제478호증의 1 내지 3, 갑 제480호증, 갑 제48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간통신과 기타통신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는 원고 소속의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위 각 신문사에 제공하고, 위 각 신문사들은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전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전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저작권인정기사들은 원고 소속의 기자들이 취재와 조사를 거쳐 작성하게 되나, 원고의 기본적인 기획 하에 업무로서 취재 및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실, 원고 소속의 기자들이 작성한 기자의 경우 그 작성 기자 이름 옆에는 원고의 상호가 기재되고 {예를 들면 (서울=연합뉴스), (여수=연합뉴스)등으로 기재된다}, 언론사 등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그 기사 아래에는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라는 당해 기사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표시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와 같이 위 각 기사의 상단과 하단에 기자의 이름 및 이메일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그 기사에 대한 책임과 평가를 전적으로 그 기자에게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 내부의 업무분담을 표시하고 독자로 하여금 제보사항이나 기사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그 작성 기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작성 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저작권인정기사들은 원고의 기획 하에 원고의 소속 기자들이 업무로서 작성한 것으로 원고의 명의로 공표된 기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저작권인정기사들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저작권침해 여부

(1) 의거관계의 유무

위 가. (1) (나) 1)항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8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저작권인정기사들을 송고한 시간은, 피고가 이 사건 피고 기사 중 이 사건 저작권인정기사들 해당 순번의 기사를 송고한 시간보다 수십분 내지 수시간 빠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의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통신사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기사 중 이 사건 저작권인정기사들 해당 순번의 기사를 송고할 무렵에는 원고의 이 사건 저작권인정기사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저작권인정기사들에 의거하여 이 사건 피고

기사 중 이 사건 저작권인정기사들 해당순번의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2) 실질적 유사성 유무

살피건대, 위 가. (1) (나) 1)항에서 든 증거(갑 제11, 14, 44, 47, 52, 54, 61, 65, 66, 72, 74, 89, 93, 94, 164, 204, 218, 257, 266, 278, 313, 314, 320, 325, 326, 329, 334, 335, 375, 435호증 제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 기사 중 별지1 기사목록 ‘피고기사저작권침해여부’란에 “○”로 표시된 해당 순번의 각 기사(이하 ‘침해기사’라고 한다) 및 그 순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저작권인정기사들(이하 ‘피침해기사’라고 한다)을 대비하여 보면, 침해기사는 피침해기사와 기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있어서 소재배열 순서,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그 밖의 문장표현이 동일하거나, 일부 문장의 배열순서를 변경하고, 일부의 어휘를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침해기사는 피침해기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저작권인정기사들 중 피침해 기사를 제외한 다른 기사와 이 사건 피고 기사 중 그에 해당하는 각 기사의 실질적 유사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14, 44, 47, 52, 54, 61, 65, 66, 72, 74, 89, 93, 94, 164, 204, 218, 257, 266, 278, 313, 314, 320, 325, 326, 329, 334, 335, 375, 4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피고기사는 위 각 원고기사와 ① 전체적인 기사의 내용과 전개는 유사하나, 구체적인 표현, 소재 배열, 어휘선택 등에 있어 원고 기사를 단순히 수정,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거나(별지1 기사목록 순번 8, 41, 44, 49, 63, 69, 71, 90, 91, 161, 201, 278, 313, 314, 320, 325, 375, 435번 기사), ② 일부 문장이 동일하거나 일부 개별 사실이 동일하지만 전체적인 기사의 내용과 전개가 다르거나(별지1 기사목록 순번 11, 51, 58, 62, 266, 325, 334, 335번 기사), ③ 일부 문장이 동일하나 그 동일한 부분이 원고기사의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기사 또한 구체적인 사실로만 구성되었거나(별지1 기사목록 순번 86, 215, 329번 기사), ④ 극히 일부 개별사실만 동일함에 불과할(별지 1 기사목록 순번 255, 256, 257번 기사) 뿐인바, 위 각 기사와 같은 보도기사의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취재, 작성된 기사라면 일부 구체적인 사실은 동일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위 각 피고기사가 위 각 원고기사와 일부 문장이나 구체적 사실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각 기사가 원고의 위 각 기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피침해기사의 창작적 표현부분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침해 기사를 작성하여 원고의 피침해기

사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정지청구 등에 대한 판단

(1) 정지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피침해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침해기사는 피침해기사와 전부 또는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침해기사 전체에 대한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기사 송고시간이 피고의 기사 송고시간보다 빠르다는 점, 원고 기사에 표현된 작성자의 개성적인 소재선택, 배열, 구체적인 용어선택, 어투, 문장표현 등이 피고기사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동종업계의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다른 언론사와 원고의 기사에 대한 전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월 5,700만 원의 전재료를 지급받으므로 위 전재료 상당액인 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피고의 저작권침해행위 기간인 14개월 동안의 전재료 합계액인 700,000,000원(5,000만 원×14개월)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갑 제47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와 원고의 기사에 대한 전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각 신문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전재료는 1998. 기준으로 월 5,7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도 원고가 신문사 등에 원고의 기사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전재료는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 상당액임을 추인할 수 있으나, 위 전재료는 원고가 한달간 작성하는 약 36,000건(하루 1,200건×30일)의 기사 전체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신문사로부터 받는 전재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피침해기사에 대한 실시료를 산정하면 건당 1,583원(57,000,000원/36,000개, 원미만 버림)임은 계산상 명백한바, 결국 피고의 위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550,884원(1,583원×348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8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명예회복청구에 필요한 조치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위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

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의 각 사회면 광고란에 가로 13cm, 세로 18cm의 크기로 위쪽에는 해명서라는 제목으로 32급 신명조체 활자로, 피고 및 원고의 명칭을 20급 고딕체 활자로 나머지 본문은 14급 신명조체 활자로 별지3 목록 기재 해명서를 각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나. (2) 항 전단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침해 기사를 송고함에 있어 그 저작권자인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피침해 기사를 복제, 배포, 전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각 기사를 피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기타 이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매체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550,88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저작권 침해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5. 6.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정 영 진
 판 사 김 영 훈
 판 사 박 원 철

2심 판결문

사 건 : 2006나2355 저작권침해금지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장 영 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 보 영, 정 상 철, 조 원 희, 민 인 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뉴시스

서울 종로구 경운동 91-1 서원빌딩 7층

대표이사 최 해 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민 수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가합10390 판결

변 론 종 결 : 2006. 10. 11.

판 결 선 고 : 2006. 11. 29.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기사목록 기재 각 기사 중 '항소심 추가 인정'란에 "○"로 표시된 해당 순번의 각 기사를 복제, 배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가.항 기재 각 기사를 피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기타 이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매체에서 삭제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449,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6.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기사목록 기재 각 기사를 복제, 배포, 전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각 기사를 피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기타 이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매체에서 삭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3 목록 기재 해명서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의 각 사회면 광고란에 가로 13cm, 세로 18cm의 크기로, 제목을 32급 신명조체 활자, 피고 및 원고의 명칭을 20급 고딕체 활자, 본문을 14급 신명조체 활자로 하여 각 1회씩 게재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기사목록 기재 각 기사 중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해당 기사를 복제, 배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위 각 기사를 피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기타 이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매체에서 삭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699,449,1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해명서를 게재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2 내지 47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일간 통신과 기타 통신의 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 각지에 취재망을 갖추고, 원고 소속의 기자들이 취재, 작성한 하루 약 1,200건의 국내외 뉴스 기사를 신문사 등에 제공하면서, 자신의 웹사이트(www.yonhapnews.co.kr)를 통하여 일반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는 통신의 발행, 인터넷 신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소속 기자가 취재, 작성한 기사를 신문사나 다른 웹사이트 등에 제공하고, 자신의 웹사이트(www.newsis.com)를 통하여 일반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별지 1 기사 목록 기재 각 기사(이하 '이 사건 피고 기사' 라고 한다)는 피고가 2003. 10.부터 2004. 11.까지 사이에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다른 웹사이트 등에 제공한 기사들이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기사는 원고 소속의 기자들이 원고의 기획에 따라 소재선택, 자료조사, 현장방문, 인터뷰, 사실확인 등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원고의 기획 및 편집 의도에 맞게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고, 그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03. 10.부터 2004. 11.까지 사이에 작성하여 송고한 이 사건 피고 기사는 원고의 소속 기자들이 이 사건 피고 기사와 각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 기사의 송고시간보다 먼저 취재하여 작성, 송고한 기사(이하 '이 사건 원고 기사' 라고 한다)를 그대로 베끼거나, 문장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원고기사에 사용된 단어를 유사한 단어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피고 기사는 이 사건 원고 기사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침해행위를 정지하고,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며,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원고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3. 저작권침해로 인한 정지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원고 기사에 대한 저작권인정 여부

(1) 이 사건 원고 기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에 대하여

(가)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창작성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와 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등을 전하는 짧은 기사, 누가 작성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기사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님을 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기사와 같은 보도기사들은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되고 따라서 동일한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는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기사와 같은 보도기사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 길이 등에 비추어 소재의 선택, 배열,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어투, 그 밖의 문장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거나,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평가, 비판 등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ㄱ) 별지 1 기사목록 ‘원고기사저작권인정여부’ 란에 “○”로 표시된 피고의 기사에 대응하는 원고의 각 기사(이하 ‘이 사건 저작권인정 기사’라고 한다)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사의 내용인 사실을 기초로 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 있고, 그 길이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작성한 기자가, 그 수

집한 소재를 선택, 배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자신의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배열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저자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다.

(ㄴ) 나아가 이 사건 원고 기사 중 이 사건 저작권인정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이 사건 원고 기사 중 별지 1 기사목록 '원고기사저작권인정여부'란에 “x”로 표시된 피고 기사에 대응하는 원고의 기사)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기사는 그 내용이 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체포, 구속 등에 관련된 기사(1유형), ② 단일한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는 기사(2유형), ③ 법원의 재판, 판결에 관한 기사(3유형, 위 각 기사의 기사별 유형은 별지1 기사목록 유형란에 기재된 숫자와 같다)로 구별할 수 있는데, ① 1유형의 기사는 사건발생 경위, 사건의 결과, 관계자의 언급 내용,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상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로 구성되고, 그 배열은 보통 체포·구속되었다는 사실, 혐의내용, 체포·구속의 과정, 목격자 또는 수사관계자의 언급내용, 향후 수사방향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그 표현 또한 “누가 체포·구속됐다”, “...적발됐다”, “목격자는 ...라고 말했다”, “경찰은 ... 조사 중이다”, “...라고 드러났다”, “...입건했다”, “...기소했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의 전형적인 표현이 사용되며, ② 2유형의 기사는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과거에 있었거나, 앞으로 예정된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구성되고, 그 배열은 보통 사건의 발생·예정, 관계자의 언급, 관련사항(주로 사건, 사고의 경우 경찰의 조사상황)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그 표현 또한 “언제, 어떤 일이 발생했다”, “원인은 ...로 밝혀졌다”, “관계자(목격자)는 말했다”, “...할 예정이다” 등의 전형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③ 3유형의 기사는 법원의 재판과정에 있었던 사실이나,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관련된 객관적 사실만으로 구성되고, 그 배열은 판결의 선고사실, 선고결과, 재판부의 언급, 판결의 대상이 된 관련사실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그 표현 또한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라고 강조했다”, “...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냈다”는 등의 전형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위 각 기사는 비교적 길이가 짧고, 기사의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의 선택, 배열 등에 있어 특별한 순서나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그 표현 자체가 지극히 전형적으로 이루어지고, 깊이 있는 취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관계기관의 발표, 자료 등에 의존하여 간단하게 구성되어 그 작자가 다양한 표현방법 중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등 위 각 기사는 위와 같은 사항을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라면 누구나 위 각 기사와 같거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기사로서 그 내용, 길이 등에 비추어 소재의 선택, 배열,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어투, 그 밖의 문장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평가, 비판 등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기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저작권인정 기사의 저작권자에 대하여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478호증의 1 내지 3, 갑 480호증, 갑 48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 주요 신문사, 방송사, 포털업체 등 언론기관과 사이에, 원고는 원고 소속의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위 언론기관에 제공하고, 위 각 언론기관은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전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전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저작권인정 기사들은 원고 소속의 기자들이 취재와 조사를 거쳐 작성하게 되나, 원고의 기본적인 기획 하에 업무로서 취재 및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실, 원고 소속의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의 경우 기사 상단에는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그 기자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작성 기자 이름 옆에는 원고의 상호가 기재되고 {예를 들면 (서울=연합뉴스), (여수=연합뉴스)등으로 기재된다}, 언론기관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그 기사 아래에는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라는 당해 기사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표시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권인정 기사는 원고의 기획 하에 원고의 소속 기자들이 업무로서 작성한 것으로 원고의 명의로 공표된 기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저작권인정 기사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위 각 기사의 상단과 하단에 기자의 이름 및 이메일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그 기사에 대한 책임과 평가를 전적으로 그 기자에게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원고 내부의 업무분담을 표시하고 독자로 하여금 제보사항이나 기사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그 작성 기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작성 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불과하다).

나. 피고의 저작권침해 여부

(1) 의거관계의 유무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저작권인정기사들을 송고한 시간은, 피고가 그에 대응하는 이 사건 피고 기사를 송고한 시간보다 수십분 내지 수시간 빠른 사실, 원고는 “뉴스리더” 내지 “인포맥스”라는 이름의 뉴스 제공 단말기를 개발하여 다른 기업 및 관공서에 제공하고 있고, 기업 및 관공서에서는 위 단말기를 출입 기자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의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통

신사의 특성, 피고 소속 취재 기자들이 원고 기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기사를 송고할 무렵에는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저작권 인정 기사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저작권인정 기사들에 의거하여 이 사건 피고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2) 실질적 유사성 유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데,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저작권인정 기사와 그에 대응하는 피고 기사의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하기로 한다.

먼저, 제1심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피고기사(이 사건 피고 기사 중 별지 1 기사 목록 '제1심 침해 인정' 란에 "○"로 표시된 해당 순번의 각 기사)는 대부분 그에 대응하는 이 사건 저작권인정 기사들과 기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있어서 소재배열 순서,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그 밖의 문장표현이 동일하고, 단지 일부 문장의 배열순서를 변경하고, 일부의 어휘를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기사들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별지 1 기사목록 '항소심 추가 인정' 란에 "○"로 표시된 해당 순번의 각 기사들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들의 경우에는 일부 문장의 구체적인 표현, 어휘선택 등에 다소 변경을 가하고, 문장들의 배열 순서를 앞뒤로 바꾸거나, 원고의 기사 중 일부 문장을 생략하는 등 변화를 주려고 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위 피고의 기사들 역시 원고의 기사 중 핵심적인 표현부분을 그대로 전제(轉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사의 톤과 전개 과정에 있어서 동일성이 감지되므로, 원고의 기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피고 기사 중 별지 1 기사목록 '제1심 침해 인정'란에 "○"로 표시되거나, '항소 심 추가 인정'란에 "○"로 표시된 해당 순번의 각 기사(이하, '이 사건 침해기사'라 한다)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침해 기사를 복제, 배포, 전송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각 기사를 피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기타 이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매체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다.

4.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기사 송고시간이 피고의 기사 송고시간보다 빠르다는 점, 원고 기사에 표현된 작성자의 개성적인 소재선택, 배열, 구체적인 용어선택, 어투, 문장표현 등이 피고기사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동종업계의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범위

(가) 원고는, 원고가 다른 언론사와 기사에 대한 전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월 5,700만 원의 전재료를 지급받으므로 위 전재료 상당액인 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기간인 14개월 동안의 전재료 합계액인 700,000,000원(5,000만 원 × 14개월)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갑 478호증의 1 내지 3, 갑 487호증의 1, 2, 갑 49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송○○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국내 방송사 및 신문사를 비롯한 언론기관들과 사이에 원고가 취재, 작성한 기사를 제공하고 위 기사를 전재하도록 허락하는 데 대한 대가로 정액의 전재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전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위 전재료는 기사를 공급받는 언론기관의 발행부수, 영향력을 기준으로 산정될 뿐 실제로 보도되는 기사의 수와는 무관한 사실, ② 국내 신문사의 경우 원고로부터 하루에 약 1,200건의 기사를 제공받으나 실제로 신문에 게재하는 기사는 하루에 20여 개에 불과한 사실, ③ 현재 원고가 각 언론기관들과 전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전재료는, 공중파 TV 방송국의 경

우에는 매월 2억 2천만 원 정도, 라디오 및 케이블 방송국의 경우는 매월 3,300만 원 정도, 중앙일간지의 경우는 매월 5,700만 원 정도, 지방일간지의 경우는 매월 1,300만 원 정도, 포털사이트의 경우는 매월 4,500만 원 정도인 사실, ④ 2006. 3. 현재의 취재인력 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원고는 약 500명 정도, 피고는 약 120명 정도이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의 경우는 각 300명 내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가 2003. 10.부터 2004. 11.까지 1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액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전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전제료 상당액으로 볼 것이다.

나아가 앞서 드러난 제반 정황과 함께, 피고의 경우에는 방송, 신문, 포털사이트 등 기존의 언론기관과는 달리 뉴스보도 뿐 아니라 다른 언론기간에 뉴스를 공급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본적인 성격은 신문에 가깝다는 점, 피고의 취재보도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취재인력 규모는 중앙일간지의 1/3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전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전제료 액수는 중앙일간지에 대한 전제료의 1/3에 해당하는 월 1,900만 원(= 5,700만 원 × 1/3)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은 피고의 저작권침해 기간인 14개월 동안의 전제료에 상당한 266,000,000원(= 1,900만 원 × 14개월)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266,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 550,88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5. 6.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1. 9.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265,449,116원(= 266,000,000원 - 550,884원)에 대하여는 2005.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29.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해명광고청구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의 각 사회면 광고란에 가로 13cm, 세로 18cm의 크기로 위쪽에는 해명서라는 제목으로 32급 신명조체 활자로, 피고 및 원고의 명칭을 20급 고딕체 활자로 나머지 본문은 14급 신명조체 활자로 별지 3 목록 기재 해명서를 각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침해기사를 송고함에 있어 그 저작권자인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추가로 인용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기동
판사 최재혁
판사 구회근

□

**언론의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언론이 어느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의견표명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 2006. 2. 9.자 판결 (2005가합1120)

광주고등법원 2006. 11. 17.자 판결 (2006나298)

대 법 원 2007. 2. 22.자 판결 (2006다87217)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07년 2월 22일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와 소속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는 피고 제주일보사가 2005년 3월 11일자 『골프장 재벌 ○○○○○의 ‘안하무인’』 제하의 사실로 원고가 골프장 입장요금 인하를 조건으로 하여 제주도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았으나, 자신의 이윤을 위해 다시 입장요금을 인상하였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은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일반인들에게 ‘원고가 세금감면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이윤을 위하여 제주도 지사의 입장요금 인하 권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장요금을 인상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주도지사의 입장요금 인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입장요금을 인상하였다는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또한 “이 사건 사실 중에는 다소 감정적이고 거칠거나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으나 이러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는 언론 등에 의한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언론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어 위법성이 있는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게재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나, 피고 김○○은 공익적인 사정에 관한 별다른 언급없이 사실을 게재하고 있고, 그 표현방법 또한 다소 감정적이고, 비방적이거나 모멸적인 측면이 있으며 원고의 입장요금 인상 이유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실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5가합1120 손해배상(기)

원 고 : 주식회사 ○○○○○

공동대표이사 허 ○, 서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정 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선 우

피 고 : 1.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제주시 연동 2324-6

대표이사 김 대 성

2. 김 ○ ○

제주시 연동 2324-6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승 석

변론종결 : 2006. 1. 5.

판결선고 : 2006. 2. 9.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06.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8. 22.에 설립되어, 2002. 12. 13.경부터 서귀포시 ○○동 ○번지에서 27홀 규모의 '○○○○○제주컨트리클럽'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이하 '피고 제주일보사'라 한다)는 1962. 12. 31. 설립되어 제주도 내 일간신문인 '제주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김○○은 피고 제주일보사의 상임논설위원이다.

나. 원고는, 제주도 내 골프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특별소비세 등 약 46억원의 세금감면을 받고, 그 세금감면분(27,000원~33,000원)을 골프장 입장요금(그린피)에 반영하고 거기에다가 주중 5,000원, 주말 10,000원을 추가로 인하하도록 하는 제주도의 입장요금 인하권고안을 받아들여 입장요금을 비회원 기준으로 주중 83,000원, 주말 120,000원으로 정하여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 2. 위 입장요금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2003년의 누적적자가 약 51억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도지사에게 입장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요금변경심의신청서(비회원 기준 주중 112,000원, 주말 161,000원)를 제출하였는데, 제주도지사는 2004. 1. 13.경 '원고가 신청한 입장요금에는 도외 골프장 평균입장요금과 비교하여 조세감면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고, 원고가 2004. 2. 8. 다시 제주도지사에게 골프장입장요금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제주도는 같은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원고는 2004. 3. 10. 입장요금을 비회원 기준 주중 125,000원, 주말 17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004. 3. 27.경부터 위와 같이 인상된 입장요금을 받기 시작하였고, 제주도는 다시 원고에게 입장요금 시정권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04. 3. 26.과 2004. 6. 1. 두차례에 걸쳐 제주도에게 다시 입장요금 인상신청을 하자, 제주도는 2004. 6. 4. 한국레저산업연구소와 사이에 골프장 입장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13. 그 용역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입장요금을 비회원 기준 주중 108,000원, 주말 140,000원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원고는 종래 인상하였던 입장요금보다 3,000원을 인하하여 입장요금을 주중 122,000원, 주말 171,000원으로 책정하였다.

마. 피고 김○○은 2005. 3. 11.자 제주일보 사설에서 『골프장 재벌 ○○○○의 '안하무인'』이란 제목으로 원고에게 입장요금을 인상한 이유 등에 대한 아무런 사실확인절차를 거침이 없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설을 작성하여 제주일보에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 한다).

『서귀포시 ○○동 소재 27홀 규모의 ○○○○ 골프장의 물염치가 도를 넘어섰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당국의 요금인하 권고를 한 귀로 듣고는 한 귀로 흘려버리기를 수차례다. 관련 용역을 거쳐 책정된 요금인데도 자신들 마음대로 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써 제주도 골프관광 경쟁력 추락은 안중에도 없다. 노골적으로 제 뱃살 불리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46억원이란 세금을 감면받고도 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더불어 사는' 기업윤리는 아랑곳없는 작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된다. 속내를 들여다보니 ○○○○는 잘나가는 한국 골프장 재벌이었다. 제주 외에 용인과 안성 등 현재 3개 골프장 63홀을 운영중이다. 착공에 들어간 경남 함안 18홀을 포함하면 ○○○○는 골프장 81홀을 확보한 상태다. 게다가 전남 순천에 36홀, 속리산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모두 완공된다면 국내 최다인 135홀 규모를 보유하게 된다. 골프 레저 산업하면 ○○○○로 통하게 한다는 기업 마스터플랜이 구체화되는 셈이다. 이는 건전 스

포츠를 이끌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그것은 걸치장일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의 제주 행태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재벌의 '안하무인'이다.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재벌이면 재벌답게 기업윤리를 지키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당국의 ○○○○○○ 골프장 세무조사 의뢰 방침은 옳은 방향 설정이다. 이는 제주도 골프장 요금정책의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때문에 당국은 더 고삐를 쥐어 실추된 행정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여기서 유야무야 한다면 골프행정은 무한대 실종이다. 다만 요금인하 시정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당국은 영업정지 등 강제처벌이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4, 을5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8, 을8호증의 각 기재, 피고 김○○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 또는 논평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지극히 감정적인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비난, 비방,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및 인격권 침해 등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실은 풍자적인 표현을 사용한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의 기준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2)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였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

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협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5)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

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그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실에서, ① 원고는 입장요금 인하를 조건으로 하여 제주도 등으로부터 약 46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는 사실, ② 원고는 제주도로부터 관련 용역을 거쳐 책정된 입장요금안을 기준으로 한 입장요금 인하권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요금을 인상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② 원고의 몰염치가 도를 넘어서다. ③ 원고는 제주도의 요금인하 권고를 한 귀로 듣고는 한 귀로 흘려버리기를 수차례다. ④ 원고 마음대로 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⑤ 제주도 골프관광 경쟁력 추락은 안중에도 없다. ⑥ 노골적으로 제 뱃살 불리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⑦ 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⑧ ‘더불어 사는’ 기업윤리는 아랑곳 없는 작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⑨ 한마디로 재벌의 ‘안하무인’이다. ⑩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의 입장요금 인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실에 나타난 어휘들이 다소 감정적이고 거칠며 일방적인 표현으로서 언론인인 피고 김○○로서는 그러한 표현을 자제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실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제주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입장요금을 인상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데 있다는 사정 등을 비추어 그러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 김○○이 이 사건 사실에서 주로 원고를 비난,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실은 원고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기업목표와 달리 상생의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그 동안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국으로부터 약 46억원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골프장 재벌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챙길 의도로 제주도가 제시한 적정한 입장요금 권고안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세금감면분을 입장요금에 반영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 입장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제주도 내 골프관광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여 원고의 골프장 운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실의 작성자인 피고 김○○과 제주일보의 발행인인 피고 제주

일보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공익성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사실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게재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와 제주도는 제주도 내 골프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제주도 내의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감면하고 그 조세감면분을 입장요금에 반영하기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특별소비세 등 약 46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으므로, 제주도민 등 일반 국민들로서는 위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골프장 운영기업은 어디이고 얼마를 감면받았는지,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이 이를 입장요금에 반영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입장요금이 인하된 금액이 얼마이고 그 반영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입장요금이 인하됨으로써 제주도 내 골프관광객이 증가되었는지, 그로 인한 제주도 내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권리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실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당국으로부터 약 46억원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았음에도 제주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입장요금을 인상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데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게재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진실성에 관한 부분

다음으로, 이 사건 사실에서 암시한 사실에 진실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는 입장요금 인하를 조건으로 하여 제주도 등으로부터 약 46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는 사실, 원고는 제주도로부터 관련 용역을 거쳐 책정된 입장요금안을 기준으로 한 입장요금 인하권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요금을 인상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실 중 이 부분에 관한 사실은 진실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갑4호증, 을1호증의 4, 을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부영주의 증언, 피고 김○○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기업목표와 달리 상생의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그 동안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 원고는 골프장 재벌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챙길 의도로 제주도가 제시한 적정한 입장요금 권고안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세금감면분을 입장요금에 반영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 입장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제주도 내 골프관광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사실 등 이 사건 사실에서 암시한 나머지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당성에 관한 판단

마지막으로, 피고 김○○에게 이 사건 사실에서 암시한 사실 중 진실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4호증, 을1호증의 4, 을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부○○의 증언, 피고 김○○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김○○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익적인 사정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사실을 게재하고 있고, 그 표현방법 또한 다소 감정적이고, 비방적이거나 모멸적인 측면이 있는 점, 피고 김○○은 언론인으로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사실확인절차를 거친 후 공정하고 바르게 원고의 입장요금 인상에 관한 의견표명 또는 논평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실은 시급히 게재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신문 기사를 검색하고, 제주도로부터 원고의 입장요금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제공받은 외에, 원고에게 원고가 입장요금을 인상한 이유 등에 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방법으로 입장요금을 결정하고 있는 사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이라는 점 등이 이 사건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에게 이 사건 사실에서 암시한 사실 중 진실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사실을 게재함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실의 제목과 내용 및 보도 시점, 피고 김○○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원고가 제주도 내의 골프장업계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 피고 제주일보사가 제주도 내의 언론에서 차지하는 위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배상할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실을 게재한 날인 2005. 3.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고 충 정
판 사 김 창 권
판 사 이 제 식

2심 판결문

사 건 : (제주)2006나29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허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범 관, 이 정 재, 이 종 서, 김 준,

김 낙 형, 이 승 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 봉 훈

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제주시 연동 2324-6

대표이사 김 대 성

2. 김 ○ ○

제주시 연동 2324-6 제주일보 논설위원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승 석

제 1 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가합1120 판결

변 론 종 결 : 2006. 10. 13.

판 결 선 고 : 2006. 11. 17.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 2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돈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8. 22.에 설립되어 2002. 12. 13.경부터 서귀포시 ○○동에서 27홀 규모의 '○○○○○제주컨트리클럽'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제주일보사는 1962. 12. 31. 설립되어 제주도내 일간신문인 '제주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김○○은 제주일보의 상임논설위원이다.

나. 원고는 제주도 골프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등 약 46억 원의 세금감면을 받으면서, 그 세금감면분(27,000원 내지 33,000원)을 골프장 입장요금(그린피)에 반영하고 거기에다가 주중 5,000원, 주말 10,000원을 추가로 인하도록 하는 제주도의 입장요금인하권고를 받아들여 입장요금을 비회원 기준으로 주중 83,000원, 주말 120,000원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4. 1. 2. 제주도지사에게 위 입장요금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2003년의 누적적자가 약 51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입장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요금변경심의신청서(비회원 기준 주중 112,000원, 주말 161,000원)를 제출하였는데, 제주도지사는 2004. 1. 13.경 '원고가 신청한 입장요금은 도외 골프장의 평균 입장요금과 비교하여 조세감면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시 2004. 2. 8. 제주도지사에게 골프장입장요금변경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4. 3. 10. 입장요금을 비회원 기준 주중 125,000원, 주말 17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004. 3. 27.경부터 위와 같이 인상된 입장요금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제주도지사는 원고에게 입장요금을 시정하도록 하는 권고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다시 2004. 3. 26.과 2004. 6. 1.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지사에게 입장요금인상신청을 하였고, 이에 제주도지사는 2004. 6. 4. 한국레저산업연구소와 골프장 입장요금 산정기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용역 결과에 따라 2005. 1. 13. 원고에게 입장요금을 비회원 기준 주중 108,000원, 주말 140,000원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하자, 원고는 종래 인상하였던 입장요금에서 3,000원을 인하한 입장요금(비회원 기준 주중 122,000원, 주말 171,000원)을 책정하여 시행하였다.

다. 한편, 피고 김○○은 2005. 3. 11.자 제주일보 사설에서 『골프장 재벌 ○○○○의 ‘안하무인’』이란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사설’이라고만 한다)을 작성하여 제주일보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호증의 4,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8, 을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피고 김○○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설은 단순한 의견 표명 또는 논평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지극히 감정적인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비난, 비방,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설은 풍자적인 표현을 사용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설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1)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살피건대, 피고 김○○이 작성한 이 사건 사설은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일반인들에게 ‘원고가 46억 원의 세금감면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이윤을 위하여 제주도지사의 입장요금 인하 권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장요금을 인상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원고는 여기에서 나아가 이 사건 사설이 ‘원고가 그 동안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로부터 약 46억 원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재벌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챙길 의도로 제주도지사가 제시한 적정한 입장요금 권고안을 무시하고 세금감면분을 입장요금에 반영함이 없이 마음대로 그 입장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제주도 내 골프관광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는 부도덕한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실의 객관적인 내용, 이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이 사건 사실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실은 본질적으로 원고가 제주도지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장요금을 인상한 '사실'을 적시하고 이것을 비판하면서 이로 인하여 제주도 골프관광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지, 나아가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제주도의 골프관광 사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단 이 사건 사실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고, 아래에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들의 위법성조각 항변에 관하여

(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우선 이 사건 사실이 오로지 공익을 위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와 제주도는 제주도의 골프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제주도 내의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어 그 조세감면분을 입장요금에 반영하기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특별소비세 등 약 46억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제주도민 등 일반 국민들로서는 위 조세감면혜택을 얻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누구이고 얼마를 감면받았으며 이를 입장요금에 반영하였는지, 입장요금이 인하됨으로써 제주도 내 골프관광객이 증가하였는지, 그로 인한 제주도 내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실에서 암시한 사실에 진실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건대, 먼저 원고가 입장요금 인하를 조건으로 하여 제주도 등으로부터 약 46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았고 제주도지사로부터 입장요금 인하 권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입장요금을 인상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피고 김○○이 작성하여 제주일보에 게재된 이 사건 사실은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나. 이 사건 사실 중 의견표명 자체의 불법성 여부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실 중 원고가 지적하는 ‘몰염치가 도를 넘어섰다’, ‘한 귀로 듣고는 한 귀로 흘려버리기를 수차례다’, ‘제주도 골프관광 경쟁력 추락은 안중에도 없다’, ‘노골적으로 제 뱃살 불리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기업윤리는 아랑곳없는 작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잘 나가는 한국 골프장 재벌이었다’, ‘한마디로 재벌의 안하무인이다’,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재벌이면 재벌답게 기업윤리를 지키며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표현은 다소 감정적이고 거칠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서 언론인인 피고 김○○로서는 그러한 표현을 자제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실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제주도지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윤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골프장 입장요금을 인상한 것을 비판하는 데에 있는 점, ② 이는 원고의 입장요금 인상이 제주도 내 다른 골프장의 입장요금에도 영향을 미쳐 제주도 내 대부분 골프장의 입장요금도 연쇄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제주도 내 골프장의 가격경쟁력이 약해짐으로써 결국 제주도의 관광산업까지 침체될 우려가 있다는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 점, ③ 이러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는 언론 등에 의한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언론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데, 이 사건 사실 중의 의견표명이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의견표명이 비난이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위법성이 있는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갑주
판사 구자현
판사 홍진호

3심 판결문

사 건 : 2006다8721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허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범 관, 이 종 서, 김 낙 형, 이 승 욱

피고, 피상고인 : 1.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제주시 연동 2324-6

대표이사 김 대 성

2. 김 ○ ○

제주시 연동 2324-6 제주일보 논설위원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승 석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제주)2006나298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 흥 훈
주 심 대법관 김 영 란
대법관 김 황 식
대법관 안 대 희

□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보도내용은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1.자 판결 (2005가합8324)

서울고등법원 2007. 1. 24.자 판결 (2006나56918)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서울특별시와 시장의 비서관 김○○이 문화방송 소속 보도본부장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문화방송이 2005년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프로그램에서 원고 김○○이 청계천 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분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구성원 전부인 것은 아니며 법인격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서울특별시는 그에 속한 공무원들 및 그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서울시청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피고들이 원고 서울특별시에 속한 공무원 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하여 그로 인해 원고 서울특별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는 원고 김○○이 ‘서울시장의 비서관 한 사람’ 또는 ‘시장 측근’으로 표현되어 직접적으로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서울시청의 공무원이나 청계천 재개발 관련업자들로서는 원고 김○○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김○○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보도는 공직자의 청탁 또는 뇌물수수 문제를 다루고 있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및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 방송보도 문구들의 객관적 내용은 검찰 수사 및 그 결과 내용과 같고, 피고들이 증거관계가 표시된 영장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보도한 이상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보도는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5가합8324 손해배상(기)

원 고 : 1.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이 명 박

2. 김 ○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김 선 중, 이 왕 민

피 고 : 1. 정 ○ ○

2. 이 ○ ○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 병 직, 문 건 영

변론종결 : 2006. 4. 20.

판결선고 : 2006. 5.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서울특별시에게 500,000,00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각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되는 헌법 제 117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김○○은 서울시청에서 시장의 비서관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이다.

(2) 피고 정○○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함)의 보도본부장이고, 피고 이○○은 기사를 취재하여 문화방송이 방송하는 '엠비씨(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등에 제공하는 기자이다.

나. 보도 내용

(1) 문화방송은 2005. 5. 17. '엠비씨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방송 중 21:06부터 '1억 수뢰 의혹'이라는 소재목을 달아 별지 보도내용과 같이 약 1분 25초 동안 방송보도(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라 함)하였다.

(2) 이 사건 방송보도는 ① 먼저 '1억 수뢰 의혹'이라는 제목을 보여주면서 앵커가 "서울 청계천 재개발사업과 관련 업자들로부터 돈 받은 사람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후, ② 부동산 개발업자 '길 씨'가 한나라당 전 지구당 위원장인 김○○에게 14억 원을 주었는데 그 14억 원 중 1억 원이 서울시장 측근 중 한 사람에게 건네진 것으로 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는 내용을, 이 사건 보도의 기사를 취재한 피고 이○○이 직접 보도하면서, 위 '길 씨'의 진술을 요약한 화면을 보여주고, ③ 이 시장 측근으로 표현된 원고 김○○의 말을 녹음한 내용 중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검찰에서 소환 시 입장을 당당히 밝히겠다'라는 취지의 부분을 들려 준 후, ④ 다시 피고 이○○이, 검찰은 김○○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 시장 측근이 '길 씨'를 여러 차례 만나 준 것은 돈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고 시장 측근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방송보도 후 정황

서울시청에서는 이 사건 방송보도 직후인 2005. 5. 17. 21:03경 문화방송에 전화하여 이 사건 방송보도 내용에 대한 항의를 하는 한편 즉시 정정보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문화방송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 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및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길 씨'로 표현된 소외 길○○으로부터 '김□□가 길○○으

로부터 받은 14억 원 중 1억 원을 김○○에게 전달하였다'는 말을 소의 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 김○○의 계좌에 대하여 계좌추적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수사하였으나, 최종 수사 후에도 원고 김○○을 기소하지 않았다.

2. 원고 서울특별시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원고 김○○이 청계천 개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 김○○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그로 인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속한 원고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등을 그 사무범위로 하며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구성원 전부인 것은 아니며 법인격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서울특별시는 그에 속한 공무원들 및 그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서울시청과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 서울특별시에 속한 공무원 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하여 그로 인해 원고 서울특별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가사 그로 인해 원고 서울특별시에 속한 대다수의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 서울특별시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서울특별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김○○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방송보도에 적시된 사실

(가) 판단 기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

에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전체적 인상

이 사건 방송보도는 첫머리에 ‘1억 수뢰 의혹’이라는 제목을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서울 청계천 재개발사업과 관련 업체들로부터 돈 받은 사람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비서관 한 사람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라는 앵커의 말로 시작한 뒤 그 수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소외 길○○의 진술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후 수뢰 사실을 부인하는 원고 김○○의 말을 녹음하여 들려준 다음, 확정적이지는 않으나 원고 김○○이 청탁과 관련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검찰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한다면 ‘원고 김○○의 위 수뢰 사실은 진술증거가 있음에도 당사자인 원고 김○○은 이를 변명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에 관하여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보도는 그 전체적인 인상을 통하여 단순히 ‘길○○의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보도를 넘어 ‘원고 김○○이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 김○○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는 원고 김○○이 ‘서울시장의 비서관 한 사람’ 또는 ‘시장 측근’으로 표현되어 직접적으로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서울특별시 시장의 비서관은 총 4명이고 그 중 소외 김□□나 길○○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는 서울시장의 공무원이나 청계천 재개발 관련업자들로서는 원고 김○○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두 4명에 지나지 않는 비서관들 모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장 비서관의 1인인 원고 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방송보도는 원고 김○○이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 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방송보도를 취재하고 보도한 피고들은 원고 김○○에게 그 사회적 평가 저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항변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안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방송보도의 공공성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보도가 공직자의 청탁 또는 뇌물수수 문제를 다루고 있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및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3) 이 사건 방송보도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 등

피고들은, 소외 길○○이 소외 김□□에게 준 14억 원 중 1억 원이 원고 김○○에게 전달되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소외 길○○의 검찰 진술이 있었던 것과 원고 김○○이 위 김□□의 소개로 위 길○○을 만난 것은 모두 사실이므로 이 사건 방송보도는 진실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시청자들이 이 사건 방송보도로부터 받는 인상은 위 길○○의 검찰 진술이 존재한다거나 원고 김○○이 길○○을 만

났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원고 김○○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이 사건 방송보도가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보도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이○○이 검찰관계자로부터 원고 김○○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그 영장 내용을 보고 이 사건 방송보도의 문구와 같은 취지의 사실들을 확인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2명으로부터도 그 내용을 재차 확인한 다음에 이 사건 방송보도를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직접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이 사건 방송보도 문구들의 객관적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검찰 수사 및 그 결과 내용과 같은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이○○이 원고 김○○의 계좌추적을 위한 영장 내용을 확인하여 보았다는 취재경위는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증거관계가 표시된 영장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보도한 이상 이 사건 방송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원고 김○○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 및 소외 김□□가 소외 길○○에게 한 말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한 검찰의 판단 내용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보도의 객관적 문구에서는 원고 김○○의 1억 원 수수 사실의 진위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점, 이 사건 방송보도의 내용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보면, 이 사건 방송보도는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주 원
판사 최 두 호
판사 강 은 주

2심 판 결 문

사 건 : 2006나56918 손해배상(기)

원 고 : 1.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 세 훈

2. 김 ○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김 선 중, 이 왕 민

피 고 : 1. 정 ○ ○

2. 이 ○ ○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문 건 영, 차 병 직

변론종결 : 2006. 11. 15.

판결선고 : 2007. 1. 24.

주 문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서울특별시에게 500,000,00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조 용 구

판 사 이 승 한

판 사 장 일 혁

□

포토앨범 서비스 사이트 등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미지 파일들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삭제의무를 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자 판결 (2004가단292358)

서울고등법원 2007. 1. 10.자 판결 (2006나48160)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황○○이 엔에이치엔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피고 엔에이치엔이 운영하는 포털검색 사이트에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된 원고의 사진등이 게시되어 있는데도 피고가 이를 방치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원고의 퍼블리시티권과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포토앨범 서비스사이트 등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이 등록되어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삭제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측이 피고에게 이미지파일들에 관한 삭제 요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미지파일들이 검색될 수 있도록 방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포토앨범을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수시로 등록하는 이러한 이미지파일들을 일일이 검색하여 삭제할 수는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피고는 원고 이름을 키워드로 한 이미지파일들의 검색을 차단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통상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의 검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미지파일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4가단292358 손해배상(기)

원 고 : 황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재 영

피 고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빌딩

대표이사 김 범 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 승 한

변론종결 : 2006. 4. 7.

판결선고 : 2006. 5. 12.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피고는 인터넷 검색 포털서비스 네이버 등을 인터넷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전문기업으로서, 인터넷이용자들에게 포토앨범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서비스이용자들은 포토앨범서비스를 이용하여 포토앨범서비스사이트상에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등록할 수 있고, 다수의 인터넷이용자들은 위와 같이 등록된 이미지파일을 이미지검색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사실, 그런데 2001. 11. 및 같은 해 12.무렵 수차에 걸쳐 위 사이트상에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된 원고와 관련하여, 포승줄 및 수갑을 찬 죄수복의 원고사진, 필로폰주사중인 원고의 패러디사진, 필로폰 소주광고의 패러디사진, 필로폰과 감옥을 연상시키는 패러디사진, 원고의 편지 등이 담긴 사진(이하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이라 한다)이 등록된 사실, 그리고 그때부터 2004. 9.경까지 계속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이 위 사이트상에 게시되어 있어 불특정다수인들에게 검색될 수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아버지가 2003. 11.경 피고가 운영관리하는 위 이미지검색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을 발견하고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불특정다수인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방치하여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및 명예를 훼손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여자연예인으로서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어 방송 등에 출연이 거절되는 등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를 고려하여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측이 피고에게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에 관한 삭제요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외에 피고에게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

2심 판결문

사 건 : 2006나4816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황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재 영

피고, 피항소인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빌딩

대표이사 최 휘 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 승 한, 박 상 호, 이 상 훈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4가단292358 판결

변 론 종 결 : 2006. 11. 1.

판 결 선 고 : 2007. 1. 10.

주 문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인터넷 검색 포털서비스 ‘네이버’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전문기업으로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포토앨범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위 서비스 이용자들은 포토앨범 서비스 사이트상에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등록할 수 있고,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위와 같이 등록된 이미지파일을 이미지 검색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나. 그런데 2001. 11. 및 같은 해 12. 무렵 수회에 걸쳐 위 사이트상에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된 원고와 관련하여, 포승줄 및 수갑을 찬 죄수복 차림의 원고 사진, 필로폰 주사 중인 원고의 패러디 사진, 필로폰 소주광고의 패러디사진, 필로폰과 감옥을 연상시키는 패러디사진, 원고의 편지 등이 담긴 사진(이하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이라 한다) 등이 등록되었고, 그때부터 2004. 9.경까지 계속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이 위 사이트상에 게시되어 있어 불특정다수인들이 이를 검색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아버지가 2003. 11.경 피고가 운영관리하는 위 이미지 검색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을 발견하고 여러 번 피고에게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를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을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및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여자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어 방송 등에 출연이 거절되는 등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포토앨범 서비스사이트 등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이 등록되어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사

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삭제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데,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측이 피고에게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에 관한 삭제 요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이 검색될 수 있도록 방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2, 4의 영상 및 기재만으로는, ① 피고가 포토앨범을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수시로 등록하는 이러한 이미지파일들을 일일이 검색하여 삭제할 수는 없는 점, ② 을 제5 내지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원고 이름을 키워드로 한 이미지파일의 검색을 차단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통상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의 검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이미지파일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조 용 구
판 사 이 승 한
판 사 장 일 혁

□

인터넷 쇼핑몰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는 메인이미지가 노출되었으므로 원고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특정되었다고 볼이 상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8.자 판결 (2005가합14166)

사실개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2006년 6월 8일 신○○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터넷 꽃배달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가 2005년 5월 11일 KBS-2TV 「8시 뉴스타임」프로그램에서 인터넷 꽃배달업체들이 중개수수료로 대금의 40%를 수수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배경화면으로 방영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 중 하나라고 오인하게 하여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을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터넷 쇼핑몰사이트들은 메인화면의 상단 중앙에 쇼핑몰의 분위기와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유의 메인이미지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와 같은 메인이미지는 당해 쇼핑몰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 메인이미지가 드러났는지 여부가 피해자 특정 여부의 판단에서는 도메인 이름 못지 않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도메인 이름이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직접 방영된 것은 아니고, 일부 상품의 사진과 일부 메뉴바의 노출만으로는 이 사건 사이트의 식별이 어렵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이트 메인화면의 메인이미지가 노출되어 이 사이트를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이 사건 사이트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 사건 각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각 보도를 접한다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도 40%의 폭리를 취하는 인터넷 업체의 사이트이고 따라서 상품의 내용이 부실할 것이다’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개수수료로 40%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14166 손해배상(기)

원 고 : 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승 구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오 수, 신 성 철, 이 해 수, 이 승 준

변론종결 : 2006. 5. 16.

판결선고 : 2006. 6. 8.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9.부터 2006.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국 꽃배달 서비스를 위하여 생화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플라워협회의 협회장으로서, 인터넷에 꽃배달 쇼핑몰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8시 뉴스타임(KBS-2TV)' 및 '뉴스9(KBS-1TV)'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소비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꽃배달을 의뢰하면 배달 장소와 가까운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원에게 이를 발주하여 배달하게 하고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서 10% 내지 20%의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뒤 그 나머지 금액을 수주회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다.

다. 2005. 5.경 이 사건 사이트의 메인화면(이 사건 사이트의 현재의 메인화면은 2006. 1. 13. 새로 개편된 것이다)은 가장 상단에는 좌측에 상호 및 전화번호가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로는 좌측에 상품 카테고리 메뉴바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고(이하 ①부분이라 한다, 한편 메뉴바 바로 위에 전화번호가 다시 기재되어 있다), 중앙에는 꽃바구니 사진을 소재로 한 메인이미지가 위치하고 있으며(이하 ②부분이라 한다), 우측에는 추천상품이라는 타이틀 아래 장미 꽃상자의 사진(이하 ③부분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었다. 위

①, ②, ③부분 아래로는 다시 추천상품이라는 타이틀 아래 주력상품의 사진과 가격이 카테고리 별로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메인화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이하 ④부분이라 한다). 그 외 공간에는 부가정보, 검색바, 사이트 기본정보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라. 인터넷 꽃배달 시장은 소비자들이 회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그 규모가 연간 2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여 왔고 현재에도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 그런데 피고 소속 기자인 소외 공〇〇은 2005. 5. 8.경 주부 송모로부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보낸 꽃바구니가 매우 부실하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고, 취재 결과 일부 인터넷 꽃배달업체들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하여 직접 사는 경우에 비하여 상품의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공〇〇 및 피고 소속 보도담당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별지1, 2 각 보도내용 기재와 같은 뉴스프로그램을 각 제작하였고, 피고는 2005. 5. 11. 20:00경 KBS-2TV의 '8시 뉴스타임' 시간에 [인터넷 주문 꽃값은 '폭리']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이를 보도(이하 '이 사건 제1보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21:00경 KBS-1TV의 '뉴스9' 시간에 [인터넷 꽃 '시들']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이를 보도(이하 '이 사건 제2보도'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제1보도에서는 별지1 대사 중 '최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꽃배달을 신청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가는 6초 동안과 마지막의 'KBS뉴스 공〇〇입니다'라는 멘트 중 'KBS뉴스' 부분이 나가는 1초 동안에 이 사건 사이트의 메인화면 중 일부가 총 6장면에 걸쳐 배경화면으로 방영되었는데, 첫째 장면에서는 메인화면 전체 중 ①, ②, ③부분 전체와 ④부분 중 일부가, 둘째 장면에서는 ④부분 중 상품 사진 열 개 정도가, 셋째 장면에서는 ①부분 및 ②부분 중 꽃바구니 사진 부분이, 넷째 장면에서는 ④부분 중 상품 사진 두 개 정도가, 다섯째 장면에서는 ③부분이, 여섯째 장면에서는 다시 ④부분 중 상품 사진 두 개 정도가 각 방영되었다. 이 사건 제2보도에서는 별지2 대사 중 '선물에 담긴 마음이 훼손되고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가는 2.7초 동안 이 사건 사이트의 메인화면 중 일부가 2장면에 걸쳐 배경화면으로 방영되었는데, 첫째 장면에서는 ④부분 중 상품 두 개의 사진이, 둘째 장면에서는 ①부분 및 ②부분 중 꽃바구니 사진 부분이 각 방영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이 사건 사이트의 메인화면이 방영되는 동안 도메인 이름이나 상호, 전화번호가 노출되지는 아니하였다(다만, 이 사건 제1보도의 셋째 장면, 이 사건 제2보도의 둘째 장면에서 ①부분 메뉴바 바로 위에 기재된 원고의 전화번호의 아

래 절반이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시간이 각 1초 정도에 불과하여 그 정도로는 전화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인터넷 꽃배달업체들이 중개수수료로 대금의 40%를 수수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가 위 1의 마항과 같이 배경화면으로 방영됨으로써, 이 사건 각 보도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업체도 그와 같이 폭리를 취하는 업체 중 하나라고 오인하게 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 당시 피고는 원고의 상호나 전화번호 등을 직접 방영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이트의 메인화면 중 이 사건 각 보도에 나타난 부분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이 사건 사이트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일반 시청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임을 식별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 중 40%의 중개수수료 관련 보도 부분에서는 해당 업체의 사이트를 화면으로 내보냈고, 이 사건 사이트는 그와 관련없는 부분에서 자료화면으로 방영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이 사건 사이트를 식별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이 사건 사이트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업체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사이트의 경우에도 그 특정을 위해서 반드시 도메인 이름이나 상호, 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써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이트와 같은 쇼핑몰 사이트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편의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화면 구성방식을 추구하다 보니 쇼핑몰마다 메인화면 구성방식이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아(실제로 이 사건 사이트와 같은 꽃배달 쇼핑몰의 경우, 이 사건 사이트와

같이 좌측에 상품카테고리 메뉴바가, 중앙에 메인이미지가 위치하면서, 그 아래쪽으로 주력 상품들의 사진이 나열되는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텔레비전 화면에 특정 쇼핑몰의 메인화면 중 일부가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곧 시청자들이 해당 사이트임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사이트들은 메인화면의 상단 중앙에 쇼핑몰의 분위기와 개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유의 메인이미지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바(이 사건의 경우 ②부분), 이와 같은 메인이미지는 당해 쇼핑몰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 메인이미지가 드러났는지 여부가 피해자 특정 여부의 판단에서는 도메인 이름 못지않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원고의 도메인 이름이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직접 방영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제1보도에서의 둘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장면이나 이 사건 제2보도에서의 첫째 장면과 같은 일부 상품의 사진과 일부 메뉴바의 노출만으로는 이 사건 사이트의 식별이 어렵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1보도의 첫째, 셋째 장면과 이 사건 제2보도에서의 둘째 장면에서 이 사건 사이트 메인화면의 메인이미지(②부분)가 노출되었고 그중에서도 후 2자의 장면은 메인 이미지를 클로즈업한 화면이어서, 이 사건 각 보도를 시청한 사람 중 적어도 이 사건 사이트를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메인이미지 장면이 포함된 원고의 메인 화면 방영 부분을 보고 그것이 이 사건 사이트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사이트는 인터넷 꽃배달 사이트 중 상당히 알려져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 중 이 사건 사이트의 방영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사이트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시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는 이 사건 사이트가 바로 40%의 폭리를 취하는 업체의 사이트라는 표현을 직접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각 보도는, 첫머리에 [인터넷 주문 꽃값은 '폭리'] 또는 [인터넷 꽃 '시들']이라는 제목을 화면

으로 내보내면서 앵커가 인터넷을 통한 꽃배달의 경우 배달된 꽃이 엉망인 경우가 많으나 받는 사람이 이를 문제삼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멘트를 하면서 시작한 뒤, 부실한 꽃을 배달받은 피해자 2명과의 인터뷰 장면을 내보내고 이는 인터넷업체가 중개수수료로 40%의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기자의 멘트를 내보낸 다음, 같은 가격으로 직접 꽃을 사는 경우와의 비교 장면을 내보낸 후 이와 같은 인터넷 업체의 행태는 주문자가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상술이라는 기자의 평가로 보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사이트가 방영된 부분은 이 사건 제1보도에서는 중간에 등장하는 기자의 멘트(최근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업체가 중개수수료를 40%를 챙기기 때문이다)의 앞부분이고, 이 사건 제2보도에서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기자의 멘트(주문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상술로 선물에 담긴 마음이 훼손되고 있다)의 뒷부분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각 보도를 접한다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도 40%의 폭리를 취하는 인터넷 업체의 사이트이고 따라서 상품의 내용이 부실할 것이다'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개수수료로 40%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할 것이다(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에서 보도내용과 이 사건 사이트 화면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히지도 아니하였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도는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를 방영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각 보도가 진실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문제되는 이 사건 각 보도의 진실성은 이 사건 각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 각 보도 중 원고와 관련된 사실적시 부분의 진실 여부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보도 중 원고에 대한 사실적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개수수료로 40%의 폭리를 취하고 있고 따라서 상품의 내용이 부실할 것이라는 부분인바, 위 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위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실제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인터넷업체의 사이트를 방영하는 것 외에 원고의 이 사건 사이트를 방영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를 하기 전에 원고가 어느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지조차 알아보지 않은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사이트를 방송에 내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위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이트의 지명도 및 매출 규모, 피고의 공영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와 영향력, 이 사건 각 보도의 경위와 내용, 방송시간, 이 사건 각 보도 후 피고가 2005. 5. 31. KBS-2TV '8시 뉴스타임'에서 이 사건 사이트와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은 전혀 무관함이 밝혀져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11.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6.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용 석
판사 이 재 신
판사 남 세 진

〈별지 1~2〉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

보도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주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특정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3.자 판결 (2004가합62370)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자살한 경남 ○○중학교 윤○○ 교장의 유족들이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마산문화방송 주식회사 그리고 취재기자 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2004년 2월 16일과 20일 「뉴스데스크」프로그램 ‘학교는 나몰라라’와 ‘수업 중 왕따 촬영’ 제하의 보도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된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인용하여 “동영상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1년 가까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왔고, 그 부모가 학교 측에 제발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동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왕따 동영상’ 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등의 내용을 방영하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윤○○ 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방송 전에 이미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에 학교 이름, 가해학생의 성명, 교장의 성명까지 공개된 사실, 다른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된 내용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와 같은 보도를 본 사람이라면 쉽게 그 중학교가 경남에 있는 ○○중학교이고 그 교장이 윤○○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방송의

대상인 청소년 학생 사이의 집단 괴롭힘(소위 ‘왕따’) 현상은 그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제기와 그 대책마련이 이슈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방송이 주로 그와 같은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도 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은 인정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의 동기와 경위,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의 실태, 이 사건 동영상 유포 후 학교의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화해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방송에서 보도된 주요 내용인 ‘1년 가까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온 학생의 부모가 학교 측에 재발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왕따 동영상은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등은 왕따 동영상과 관련하여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방송은 피해 학생 측의 입장에만 치우쳐 학교 측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을 주로 보도한 것으로서, 주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하고 “청소년 학생문제에 관한 한 언론기관이 비판자의 입장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언론기관은 청소년 학생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 요청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62370 손해배상(기)

원 고 : 1. 윤 △ △

2. 윤 □ □

3.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김 대 현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 긍 희

2. 마산문화방송 주식회사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525-1

대표이사 김 상 균

3. 김 ○ ○

송달장소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525-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변론종결 : 2006. 5. 26.

판결선고 : 2006. 6. 23.

주 문 : 1.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윤△△, 원고 윤□□에게 각 금23,000,000원씩, 원고 김△△에게 금3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8. 14.부터 2006.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윤△△, 원고 윤□□에게 각 금33,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4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윤○○은 2002. 3. 1.부터 경남 ○○시에 있는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각 방송 후인 2004. 2. 22. 그 유족으로 원고 윤△△(아들로서 법정상속분 2/7), 원고 윤□□(아들로서 법정상속분 2/7), 원고 김△△(처로서 법정상속분 3/7)을 남기고 자살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 피고 마산 문화방송 주식회사(이하 “피고 마산방송”이라 한다)는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송출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이며, 피고 김○○은 피고 마산방송의 기자로서 이 사건 각 방송의 취재·보도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동영상의 유포 경위 등

(1) 최○○은 2004년 2월 당시 ○○중학교(3학년 4반) 졸업예정자(2004. 2. 12. 졸업식)로서, 2004. 2. 10. 두 번, 다음날 한 번, 반 교실 등에서 자신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카메라로 조○○을 포함한 같은 반 친구들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를 편집하고,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붙여 2004. 2. 13. 23:00경 자신의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편집한 동영상을 올렸다.

(2) 최○○이 편집하여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에는 조○○이 카메라에 찍히기를 거부하고 책상에 엎드려 있자, 최○○을 포함한 같은 반 친구들은 그러한 조○○의 머리를 건드리고 귀에 입바람을 불거나 가방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 2004. 2. 14. 새벽 최○○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네티즌들은 최○○의 홈페이지를 무단 해킹하여 “디씨인사이드닷컴”, “웃긴대학”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이 사건 동영상을 급속도로 유포시켰다.

다. 이 사건 각 방송 및 그 내용

피고 문화방송, 피고 마산방송은 MBC 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2004. 2. 16. 21:00경 <학교는 나 몰라라>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된 이 사건 동영상의 일부장면을 인용하여 방영(이하 “이 사건 제1방송”이라 한다)하고, 2004. 2. 20. 21:00경 <수업 중 왕따 촬영>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인용하여 방영(이하 “이 사건 제2방송”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방송을 “이 사건 각 방송”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각 방송보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동영상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1년 가까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왔고, 그 부모가 학교 측에 재발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이 사건 제1방송).

- 이 사건 동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왕따 동영상”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 사건 제2방송).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의 성부 등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윤○○의 피해자로서의 특정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방송의 기사 또는 영상에서 ○○중학교나 그 교장인 윤○○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막연히 중학교 교실에서의 왕따 동영상 파문에 관하여 보도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2, 3, 을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방송 전에 이미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사이트에 학교 이름, 가해학생의 성명, 교장의 성명까지 공개된 사실, SBS TV "8시뉴스" 프로그램은 2004. 2. 15. "왕따 동영상 논란"이라는 제목 아래 경남 ○○에 있는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왕따"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는 2004. 2. 16.부터 "경남 ○○의 ㅂ중학교... 교장..." 등으로 지칭하여 각 보도한 사실, 이 사건 각 방송의 기사에서 "왕따 동영상 파문", "중학생", "경상남도 교육청"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학교 교장과의 인터뷰 내용과 아울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하려 한다"는 교육감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와 같은 보도를 본 사람이라면 쉽게 그 중학교가 ○○에 있는 ○○중학교이고 그 교장이 윤○○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성부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방송사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방송을 보도하는 경우 그 방송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방송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방송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학생인 조○○의 부모가 이 사건 동영상이 문제되기 이전에도 학교 측에 집단 괴롭힘 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동영상

상이 문제된 이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동영상에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사태수습에 나섰다. 취지로서, 마치 그 학교의 교장으로서 운영책임자인 윤○○이 이 사건 동영상과 같은 수업시간 중의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 방치하는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하고, 나아가 그 동영상으로 인한 파문을 축소·은폐하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방송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윤○○이 이 사건 각 방송으로 인하여 그 명예를 훼손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윤○○의 아들인 원고 윤△△, 원고 윤□□과 윤○○의 배우자인 원고 김△△도 이 사건 각 방송으로 인하여 경험적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3.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방송은 당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던 청소년 학생의 집단 괴롭힘 현상(소위 “왕따”현상)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방식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 파문을 계기로 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방송으로 인하여 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앞서 본 이 사건 각 방송 보도의 주요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피고 김○○이 이 사건 각 방송 보도의 내용을 취재함에 있어 조○○ 측의 입장에만 치우치고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각 방송보도의 공익성 여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한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공

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및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방송의 대상인 청소년 학생 사이의 집단 괴롭힘(소위 “왕따”) 현상은 그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제기와 그 대책마련이 이슈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방송이 주로 그와 같은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도 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은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각 방송보도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 여부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와 을가 제1, 19, 21 내지 32, 35, 37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학교 졸업 직전의 수업상황

당시는 2004. 2. 12. 거행될 ○○중학교의 졸업식을 1, 2일 남겨둔 상황이어서 정규 수업 대신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자율학습이 진행되고, 선생님도 학생들과 사적인 대화를 하기도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나)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의 동기와 경위

• 최○○은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의 추억거리를 남기기 위해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디지털카메라로써 2004. 2. 10. 3교시 수업 종료직전인 11:53경부터 쉬는 시간인 12:03경 사이에, 같은 날 4교시 수업종료직전인 12:48경부터 쉬는 시간인 12:53경까지 사이에, 다음날인 2. 11. 2교시 수업종료 후 쉬는 시간인 11:00경부터 11: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수업시간 중의 촬영분은 약 1분 30초 정도이고, 촬영대상은 사진 찍히기를 거부하고 책상에 엎드리거나 복도를 뛰어다니는 모습, 최○○을 포함한 반 친구들은 그러한 조○○의 머리를 건드리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가방을 빼앗는 등 짓궂은 행동을 하는 모습 등이다.

• 그런데, 2004. 2. 10. 3교시 촬영분에는 어느 여자 선생님이 “하지 마라. ○○야. 그만해라”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 실제 인물인 고○○ 선생님은 졸업을 앞 둔 시점에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지도하다가 교실 4분단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이 앞자리에 앉아 있

던 조○○의 이름을 크게 부르자,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될까봐 이○○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하였을 뿐 최○○이 카메라를 숨기고 이 사건 동영상 촬영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 또한 2004. 2. 11. 3교시 촬영분에는 어느 남자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실제 인물인 이△△ 선생님은 졸업 전의 마지막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반 학생인 최○○ 및 박○○이 사제 간의 정을 간직한다면서 사진을 찍자고 제의하여 촬영에 응했을 뿐, 조○○에 대한 이 사건 동영상 촬영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동영상의 편집, 게재

최○○은 이와 같은 촬영분을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 1부”라는 대제목 아래, “1. 조○○의 등장, 2. 죄인, 3. 쥐새끼, 4. 10단 콤보, 5. 스피더 10단 콤보 실패, 6. THE END”라는 소제목으로,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 2부”라는 대제목 아래, “1. 오프닝 조○○의 등장, 2. 아니 이건 또 뭐야, 3. 앗!!!! 젠장 이게 누구야!!!, 4. 이스트런을 사수하라, 5. ○○ 드디어 성질 나온다, 6. “THE END”라는 소제목으로 각 편집하고, 중간에 촬영자가 자신(VJ 최○○)임을 밝히고 말미(THE END)에 “리얼한 연기를 해 주신 조○○을 비롯한 많은 엑스트라 여러분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며, 2003. 2. 13. 23:00경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라) 이 사건 동영상 유포 후 학교의 조치

이 사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네티즌 사이에 파문이 일어 ○○중학교 홈페이지에 최○○의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글이 쇄도하자, 윤○○은 2004. 2. 14. 학교 교감에게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학교를 찾아 온 조○○의 아버지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최○○의 부모에 대하여는 피해학생 측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최○○은 2004. 2. 15. 자신의 홈페이지에 “짧은 생각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려 앞드려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한 후, 그 홈페이지를 폐쇄하였다.

한편,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이 사건 동영상이 졸업식을 앞둔 같은 반 학생들의 심한 장난이었을 뿐 집단 따돌림은 아니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후, 2004. 2. 16. 조○○의 담임교사인 엄○○이 작성하여 교직원 일동 명의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사건 동영상의 제작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추어 실제 집단 괴롭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교직원들 모두가 더욱 더 인성지도에 노력하겠으니 아직 미성숙한 관련 학생들이 큰 상처를 남기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도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게시하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같은 날 학교와 가해학생 측의

해명 내용을 설명하고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그 노력을 지켜보아 달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마) 학부모 사이의 화해

최○○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의 부모와 조○○의 아버지 조△△은 2004. 2. 18. 이 사건 동영상 파문과 관련하여 조○○ 측에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쌍방은 앞으로 인터넷, 언론, 기타 제3자가 가해학생들을 비난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그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이 사건 제2방송 후의 사정

이 사건 동영상이 수업 중에 촬영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방송 후에 “왕따 동영상 파문”이 다시 증폭되자, 경남교육청은 전면재조사 및 관련자 엄중 문책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윤○○은 2004. 2. 20. 이 사건 동영상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04. 2. 21. 경남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직원으로부터 문답조사를 받은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2004. 2. 22.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 조○○의 학교생활실태

한편, 조○○은 평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경남 △△에 있는 중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3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중학교로 전학 왔는데, 조○○의 아버지는 전학 온 당시 엄○○ 담임선생님에게 조○○의 보살핌을 당부하였다. ○○중학교로 전학 온 후 이 사건 동영상 촬영시까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상담을 받았고, 친구들로부터 또래끼리의 장난의 정도를 현저히 초월할 정도의 집단적 또는 일방적인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조○○은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이 있던 후 졸업식 전에 교실에서 최○○ 등과 함께 이 사건 동영상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시청하기도 하였다.

(아) 이 사건 각 방송의 취재경위

- 피고 김○○은 조○○의 아버지를 비롯한 조○○ 측을 인터뷰하고 2004. 2. 16. ○○중학교 인근의 ○○파출소에서 최○○ 및 그 부모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을 인터뷰하였으며, 2004. 2. 18. 당사자 사이의 합의과정에도 입회하였다.

- 또한 피고 김○○은 윤○○ 및 이△△ 선생님도 인터뷰하였는데, 당시 윤○○은 학교가 너무 시끄러워 학교 홈페이지의 글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삭제하였고, 자신은 아직 입장을 밝히기 어려우며, 조○○의 부모가 이전에도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서 크게 항의를 하던데 확인해보아야 알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내용이 이 사건 제1방송

상 “인터뷰(교장) : 올라오는 글이 너무 자극적인 얘기기 때문에...”라는 멘트로 보도되었다.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의 동기와 경위, 조○○의 학교생활의 실태, 이 사건 동영상 유포 후 학교의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화해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방송에서 보도된 주요 내용인 “1년 가까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온 학생의 부모가 학교 측에 제발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왕따 동영상은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등은 왕따 동영상과 관련하여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 및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과 그 후 같은 홈페이지에 올린 최○○의 사과문 내용, 학교 측의 해명과 경남교육청의 보도자료 내용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그 당시 같은 “왕따 동영상 파문”에 관하여 방송한 KBS, SBS의 보도내용에는 “1년 가까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온 학생, 수업시간에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 등의 사실적시는 없는 반면, 피고 문화방송과 피고 마산방송은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방송을 한 이후에도 연이어 2004. 2. 21. 21:00경 뉴스 프로그램에서 “왕따 이상 열기”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동영상 파문을 상기시키면서 홍콩의 한 교실에서 찍힌 또 다른 집단 괴롭힘 영상을 방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방송은 피해학생 측의 입장에만 치우쳐 학교 측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을 주로 보도한 것으로서, 피고 김○○이 위에서 인정한 취재과정을 거쳤다고 하여 위 주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청소년 학생은 우리의 후계세대로서 비행을 저지른 자를 포함하여 그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청소년 학생문제에 관한 한 언론기관이 비판자의 입장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언론기관은 청소년 학생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 요청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들의 책임 범위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방송으로 인하여 윤○○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의 사회적 영향력, 윤○○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각 방송의 시기·횟수, 내용,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 후 가까운 시점에 윤○○이 자살을 선택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부진정)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윤○○에 대하여 금 70,000,000원, 원고 윤△△, 원고 윤□□, 원고 김△△에 대하여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인 각 금 3,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윤△△, 원고 윤□□에게 각 금 23,000,000원 {(각 윤○○에 대한 위자료 70,000,000원 × 법정상속분 2/7) + 고유위자료 3,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33,000,000원{(윤○○에 대한 위자료 70,000,000원 × 법정상속분 3/7) + 고유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방송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다음날인 2004. 8.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섭
 판사 황인경
 판사 이영남

□

**보도내용이 그 목적에 있어 공익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특별히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울산지방법원 2006. 7. 13.자 판결 (2005가단30114)

사실개요

울산지방법원 민사1단독(백승엽 판사) 재판부는 ○○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 김○○이 주

식회사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는 당시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인 교육연구단지의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내용들을 소재로 한 것으로 보도대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도 교육연구단지의 부지선정과 관련한 ○○광역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던 원고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위한 것으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피고들의 보도내용 중 감정평가액에 관한 보도부분이 다소 부정확함은 인정되나, 전체적인 기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지엽 말단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소한 허위사실이 보도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중 어떤 내용을 기사화하고 어떤 내용을 생략할 것인지 는 기자나 신문사의 문필 또는 편집 작업의 일환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고 기사화된 보도내용이 진실인 이상 사실관계 중 일부를 생략해 보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보도의 진실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실관계를 다소 왜곡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기사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인의 객관적인 잣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원고가 한 이상, 그에 따른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에 있어 공익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보도내용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연구단지의 부지선정과 관련한 의혹의 제기가 특별히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보도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2002년 10월 12일자 A25면 『○○교육청 교육연구단지 부지 시교위 의장 땅 포함 논란』등 2004년 9월~2005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교육연구단지 부지에 포함 된 원고의 토지 보상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단30114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을

담당변호사 곽 지 환

피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2. 김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변론종결 : 2006. 6. 8.

판결선고 : 2006. 7. 13.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5, 갑6호증의 1 내지 9,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4,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6, 갑13호증의 1 내지 6, 갑14호증의 1 내지 5, 갑17호증의 1, 2, 3, 갑18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27,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15호증의 1 내지 19, 을6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및 피고 김△△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87.경 학교법인 ○○학원을 설립한 이래 1997. 5.경까지 위 ○○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이후, 1997. 8.경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근무하면서 1999년 제2대 전반기 ○○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이래 현재까지 위 교육위원회 의장을 연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조선일보사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언론사이고, 피고 김△△은 2001. 1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조선일보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자이다.

나. 기사내용

(1) 피고 조선일보사는 피고 김△△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02. 10. 12.자 조선일보

부산·울산·경남판 에이(A) 25면에 “○○교육청 교육연구단지 부지 시교위 의장 땅 포함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제1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2) 그 후, 피고 조선일보사는 2004. 9. 24.자 조선일보 부산·울산·경남판 에이(A) 16면에 “○○교육연구단지 부지 큰 의혹”이라는 제목 하에 “김○○ 교육위의장 땅이 부지 40% 보상가도 크게 높아 공시지가 4배”라는 부제목을 붙여 피고 김△△이 작성한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제2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시교육청이 여론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연구단지 건립부지로 선정한 토지 가운데 40% 가량이 원고와 그의 장남, 원고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등 특수관계인 소유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② 원고와 특수관계인 소유의 이 토지는 ○○시교육청의 편입토지 매입과정에서 전체 편입토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낮았는데도, 실제 보상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③ 현재의 ○○교육연구단지 부지는 앞서 1999년 5월과 2002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교육위가 반대결의안을 채택해 부지선정을 부결시켰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지난 해 5월 30일 ○○시교육위원 7명 가운데 4명의 찬성으로 토지매입예산안이 통과돼 교육연구단지 건립이 본격 추진됐다. 당시 교육위원들의 찬반의견은 3대3으로 갈려 부결될 상황이었지만, 사회자인 김 의장이 찬성 쪽으로 캐스팅보트(의장결정권)를 행사해 확정됐다. ④ 김 의장 장남과 의장 본인 명의의 산 39의1과 산39의2(지분율 1/3) 등 2필지는 지목이 임야로 공시지가가 평당 13만 원으로 전체 편입토지 33필지 가운데 가장 낮았다. 그러나 실제 보상가는 평당 52만 1,000원씩으로 공시지가의 4배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김 의장 땅인 산39의1~2 등은 교육연구단지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시세가 평당 30만 원을 밑돌았을 것”이라며 “교육연구단지가 들어서는 점을 감안하다라도 평당 40만~45만 원을 넘기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장의 땅과 인접한 산 38의37, 39, 40 등도 공시지가가 16만 5,000원으로 김 의장 땅보다 비쌌지만, 실제 보상가는 평당 46만 원으로 오히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3) 그리고 다시 피고 조선일보사는 2004. 10. 7.자 조선일보 부산·울산·경남판 에이(A) 14면에 “○○교육연구단지 땅 보상 의혹 커져”라는 제목 하에 “기관들 감정가 똑같은 필지가 70%나, 교육위의장 땅 유독 높아…검찰내사”라는 부제목을 달아서 피고 김△△이 작성한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제3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이 가운데 토지소유자 측이 추천한 ○○의 감정가액이 전체 33필지 가운데 △△△과 15필지가 똑같았고, □□□과도 8필지가 똑같았다. 반면 바로 옆 부지인 ○○시보건환경연구원 편입토지 27필지는 토지소유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과 ○○시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액이 단 한 필지도 똑같은 사례가 없어 대조를 보였다. ② 특히 ○○교육연구단지 편입부지의 3분의 1 이상 차지하는 ○○시교육연구위원회 김○○ 의장과 장남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구 ○동 산39의1~2 2필지(4,500여 평)는 감정평가액이 평당 52만 원선으로, ○○교육연구단지 평균보상가보다 평당 5만 원 가량 높았고, ○○시보건환경연구원 편입토지보다는 7만 원 이상 높게 평가된 점이 의혹의 대상이다. 이 때문에 ○○교육연구단지와 ○○시보건환경연구원 편입토지 평균보상가는 2003년 1월 공시지가보다 평균 2.5배 오른 금액으로 책정됐지만, 김 의장과 특수관계인들 땅은 공시지가가 13만 원선으로 편입토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감정평가금액은 최고 수준인 4배가 적용됐다. ③ ○○시보건환경연구원 편입토지 감정평가에 참여했던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공시지가의 4배 이상을 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개발대상지 등을 제외하면 매우 이례적이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4) 그 후, 피고 조선일보사는 2005. 7. 29.자 조선일보 부산·울산·경남판 에이(A) 12면에 “○○교육연구단지 백지화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 하에 “김□□ 교육감당선자 회견”이라는 부제목을 붙여 피고 김△△ 작성의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제4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

(1) ○○교육연구단지는 1997. ○○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후 낙후된 ○○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직원 연수, 학생들의 자연체험 및 문화공간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1999.경 교육단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기로 하여 2001년부터 2년에 걸쳐 247억 원을 국가로부터 교부받았다.

(2) ○○광역시 교육청은 1999.경 ○○ ○구 ○동(이하 “○동”이라고 한다) 894 일대에 교육연구단지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산 일대의 녹지를 훼손한다는 지역시민단체의 반대여론과 교육연구단지 예정부지 내에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부지가 포함되어 특혜시비가 일어나게 됨에 따라 ○○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는 1999. 5. 10. 교육위원 7인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거쳐 위 예정부지가 대로변에 위치하여 차량소음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토지매입단가가 높을 뿐 아니라 지형상 골이 깊어 토목공사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연구단지 예정부지를 토지보상가가 보다 낮고 넓고 조용한 지역으로 변경하여 선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교육연구시설 위치 반대결의안을 출석위원들 중 원고를 포함한 5인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3) 그 후, ○○광역시 교육감은 2002. 8. 26. 다시 위 ○동 894을 포함한 그 일대 44,687㎡

에 관하여 ○○광역시 ○구청장에게 ○○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도로)결정의 입안을 요청하였고, ○○광역시 ○구청장은 다시 ○○광역시장에게 위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하여, ○○광역시장은 2003. 1. 16. 위 ○동 894 일원 44,900㎡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결정을 하였다.

(4) 한편, ○○광역시 교육위원회는 위 도시계획결정 이전인 2002. 10. 21. 교육위원 7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광역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 신청을 한 위 ○동 894 일대의 교육연구단지 부지는 이미 1999. 5. 10.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3년이 지난 기간 동안 당시의 반대사유가 해소되기는 커녕 문수구장, ○○대공원 등으로 교통이 더 복잡해졌기에 교육연구단지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의 교육지원기관 위치 반대 결의안을 원고를 포함한 4인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5) 그 무렵 ○○광역시 교육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 남구에서는 부지선정을 빨리 하지 않을 경우 배정된 예산을 전액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며 위 ○동 894 일대의 교육연구단지의 부지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22개 학교가 있어 접근성에서 최적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환경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환경훼손문제와 특혜의혹을 들어서 위 교육연구단지 부지선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그러한 상황은 지역신문에도 수차례 보도되었다.

(6) 피고 김△△은 2002. 10. 12. 위와 같은 ○○광역시 교육청과 시민단체 사이의 의견 대립상황과 교육연구단지 예정부지에 원고의 사유지가 포함됨으로써 빚어진 특혜의혹에 관하여 제1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조선일보에 게재하였다.

(7) 한편, 위 ○○광역시의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후, 2003. 5. 29. 제71회 ○○광역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 “○동교육지원기관 토지매입비 예산편성의 건”이 상정되어 7인의 교육위원들 간에 예산편성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원고를 포함한 4인의 교육위원이 예산편성에 찬성함으로써 위 안건이 통과되었고, 이후 ○○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기관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의 소유자들과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다.

(8) 한편, ○○광역시 교육위원인 노○○는 2004. 9. 17. ○○광역시 교육감에게 ○동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광역시 교육청 재무관리과에서는 2004. 9. 20.경 편입토지의 소재지, 소유자, 면적, 공시지가, 감정가,

보상총액, 보상일자 등이 기재된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을 작성하여 ○○광역시 교육위원회로 송부해 주었는데, 위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는 총 33필지(잔여지 포함 시 35필지)의 편입토지 중 사유지나 국유지 또는 지목이 도로나 구거인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2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공시지가가 기재되어 있었다.

(9) 피고 김△△은 2004. 9. 하순경 위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을 입수하여 2004. 9. 24. 제2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보도하게 되었고, 이후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등을 입수하게 되어 2004. 10. 7. 제3 기사를 작성, 보도하였다.

(10) 위 기사들이 보도된 이후 ○○광역시 교육청의 홈페이지와 방송사 홈페이지에는 원고와 교육위원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다수 게재되었고, 시민단체에서는 원고의 퇴진과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심 곳곳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였다.

(11) 그 후, 피고 김△△은 새로 선출된 교육감 당선자가 2005. 7. 28.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교육연구단지를 취임 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005. 7. 29. 제4 기사를 작성하여 조선일보에 게재하였다.

라. 보도 후의 정황

피고 조선일보사는 감정평가의 담합의혹을 보도한 제3 기사가 게재된 이후 감정평가법인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해줄 것을 제소함에 따라 위 감정평가법인들과 합의하여 2004. 11. 15.자 조선일보 에이(A) 14면에 『지난 10월 7일자 에이(A) 14면 ‘○○교육단지 땅 보상 의혹 커져’ 기사와 관련하여 교육연구단지 보상평가업무를 행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무사하게 감정평가를 수행하였을 뿐 담합한 바 없다고 밝히고, 서로 다른 법인이 평가한 보상가가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인근의 평가전례나 개별지가의 차이만을 비교해 보상액이 높게 평가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혀왔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02. 10. 12.자 제1 기사에서 이미 교육연구단지 편입부지에 원고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도하였음에도 다시 2004. 9. 24.자 제2 기사에 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보도한 점,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토지의 공시지가가 전체 편입토지 가운데 가장 낮지 아니함에도 원고와 관계되는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도하였고, 원고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 토지의 감정가액과 보상가액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한 점, 제2, 3 기사에서 감정평가법인의 관계자와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허

위사실을 보도한 점, 피고들이 2004. 10. 7.자 제3 기사에서 위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기 관들이 마치 담합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그 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음에도 다시 2005. 7. 29.자 제4 기사에서 담합의혹을 다시 제기한 점, 교육위원회 의장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의장인 원고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여 부지선정에 찬성한 것처럼 보도한 점 등을 들어서 피고들이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악의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기사에 적시된 내용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 헌법도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자유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이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21조 제4항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85다카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결국 피고들의 보도내용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및 명예훼손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교육연구단지의 부지선정에 있어서 ○○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인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토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 보상가도 크게 높아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기사로 인하여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도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 조각여부

(1) 공공성의 요건충족 여부

○○교육연구단지는 1997. ○○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후 낙후된 ○○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갖는 사안으로, 특히, 위 ○동 894 일대에 위 교육연구단지의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환경훼손과 특혜시비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어남으로써 ○○광역시 교육청 및 관할구청과 지역시민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고 ○○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2차례나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였는바, 이 사건 기사는 당시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인 교육연구단지의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내용들을 소재로 한 것으로 보도대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도 위 교육연구단지의 부지선정과 관련한 ○○광역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던 원고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위한 것으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보도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

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그리고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에 있어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기사내용을 중심으로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피고들이 2002. 10. 12.자 제1 기사에서 이미 교육연구단지 편입부지에 원고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도하였음에도 다시 2004. 9. 24.자 제2 기사에 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보도한 부분

피고들이 2002. 10. 12.자 제1 기사에서 위 ○동 ○○자락 5만평의 부지에 현 ○○시 교육위원회 의장의 사유지 5,800여 평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이 2004. 9. 24. 제2 기사에서 ○○교육연구단지 건립부지로 선정한 토지 가운데 40% 가량이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보도한 사실, ○○광역시장은 2003. 1. 16. 위 ○동 894 일원 44,900㎡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한 사실, ○○광역시 교육위원인 노○○가 2004. 9. 17. ○○광역시 교육감에게 ○동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광역

시 교육청 재무관리과에서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 김△△은 위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을 입수하여 제2 기사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이 제1 기사를 보도할 당시에는 도시계획결정이 확정되기 전으로 예정부지의 면적도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면적과는 현저히 차이가 있었고, 제2 기사를 보도할 당시에는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김△△으로서 위 기사 작성의 바탕이 된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을 통하여 비로소 교육연구단지의 전체 편입토지 증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뒤늦게 밝혀졌다”는 표현만으로 피고들의 의혹제기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감정가액 및 보상가액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① 공시지가에 관하여

피고 김△△이 제2 기사를 작성할 당시 기초로 한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는 총 33필지(잔여지 포함시 35필지)의 편입토지 중 시유지나 국유지 또는 지목이 도로나 구거인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2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공시지가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9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편입토지 중 실제 가장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는 ○○ ○구 ○동 898-9 도로로 공시지가는 m²당 19,800원인 사실, 위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 기재된 공시지가는 2003. 1. 1.자 및 2004. 1. 1.자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혼용되어 있어 2003. 1. 1.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 공시지가가 기재되어 있던 토지 중 가장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는 위 같은 동 39-26, 39-27, 39-28, 39-29, 39-32로서 그 공시지가는 m²당 36,200원임에 반하여 원고의 아들 소유인 위 같은 동 39-1의 공시지가는 m²당 39,600원이고, 원고 소유의 위 같은 동 39-2의 공시지가는 m²당 36,900원이며,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학교법인 ○○학원 소유의 위 같은 동 39-14의 공시지가는도 m²당 41,600원인 사실, 그러나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 기재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장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는 원고 외 2명의 공유로 되어 있는 위 같은 동 39-2로 그 공시지가가 m²당 36,900원이고, 그 다음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는 공시지가가 m²당 39,400원으로 표시된 위 같은 동 산38-38외 8필지인데, 그 중 위 학교법인인 ○○학원 소유의 위 같은 동 39-14도 포함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는 공시지가가 m²당 39,600원으로 표시된 위 같은 동 산39-1, 39-2인데, 이 중 산39-1은 원고의 장남인 소외 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이 만연히 ○○광역시 교육청 재무관리과에서 작성한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만 의존하여 편입토지들의 공시지가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조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의 토지 모두가 편입토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것은 아님에도 제2 기사에서 가장 낮다고 표현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한 잘못은 인정되나, 제2 기사 중 공시지가와 관련한 보도의 주된 내용은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보상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크게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 점,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 공시지가가 기재되지 않은 토지들은 모두 사유지나 국유지이거나 도로나 구거로 지목이 임야인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토지와는 공시지가 및 그 보상가액의 비교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점, “교육지원기관 편입토지 현황”에 의하면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토지가 공시지가가 표시된 토지 중 공시지가가 낮은 수준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시지가와 관련한 보도내용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데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보도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감정가액 및 보상가액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제2 기사에서 원고의 장남과 의장 본인 명의의 산 39의1과 산39의2(지분율 1/3) 등 2필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공시지가가 평당 13만 원으로 전체 편입토지 33필지 가운데 가장 낮았으나 실제 보상가는 평당 52만 1,000원씩으로 공시지가의 4배였다고 보도한 사실과 제3 기사에서 원고와 원고의 장남 소유의 위 2필지는 감정평가액이 평당 52만 원선이라고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장남 소유의 위 ○동 산39-1의 평당감정가는 522,316원이고, 원고 소유의 ○동 산39-2의 평당감정가는 495,870원이고 이를 산술평균할 경우 평당감정가는 509,09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보도내용 중 감정평가액에 관한 보도부분이 다소 부정확함은 인정되나, 전체적인 기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지엽 말단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소한 허위사실이 보도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보도의 진실성인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 감정평가법인의 관계자와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피고들이 제2 기사에서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김 의장 땅인 산39의1~2 등은 교육연구단지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시세가 평당 30만 원을 밀돌았을 것”이라며 “교육연구단지

가 들어서는 점을 감안하다라도 평당 40만~45만 원을 넘기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사실, 제3 기사에서 ○○시보건환경연구원 편입토지 감정평가에 참여했던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공시지가의 4배 이상을 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개발대상지 등을 제외하면 매우 이례적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취재원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재 기자로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보도내용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할 때 비로소 귀책사유를 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위 기사의 인용보도내용 중 전자는 토지의 시세에 관한 것으로 토지의 특성상 그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평가시기 및 평가자 등에 따라 그 시세에 관한 평가가 달라서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든 점, 후자는 토지의 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4배 이상의 평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개발대상지 등”으로 표현하여 그러한 사례가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일반론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위와 같은 인용보도만으로 그 보도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들이 2004. 10. 7.자 제3 기사에서 위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들이 마치 담합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그 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음에도 다시 2005. 7. 29.자 제4 기사에서 담합의혹을 다시 제기한 부분

갑3호증의 3, 4, 5, 갑6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육연구단지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측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광역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전체 33필지 가운데 15필지가 똑같았고,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역시 ○○광역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전체 33필지 중 8필지가 똑같았던 사실, 반면 바로 옆 부지인 ○○시보건환경연구원 편입토지 27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과 ○○광역시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단 한 필지도 똑같은 사례가 없었고, 다만 위 ○○감정평가법인과 역시 ○○광역시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총 30필지 중 12필지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제3 기사를 비교해 보면 피고들이 제3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시보건환경연구원의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서 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12필지에 있어서

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생략한 점은 인정되나 여러 가지 사실관계 중 어떤 내용을 기사화하고 어떤 내용을 생략할 것인지는 기자나 신문사의 문필 또는 편집 작업의 일환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고 기사화된 보도내용이 진실인 이상 위와 같이 사실관계 중 일부를 생략해 보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보도의 진실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사실 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독자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만 구비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의무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함으로써 족하고 당해 언론사는 원문 보도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므로, 피고 조선일보사가 감정평가법인들과 합의 하에 2004. 11. 15.자 조선일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론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전제로 이를 게재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들이 2005. 7. 29. 제4 기사에 감정평가기관들의 담합의혹을 다시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보도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마) 교육위원회 의장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사회자인 원고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여 부지선정에 찬성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

피고들은 제2 기사에서 교육연구단지 예산안과 관련하여, 당시 교육위원들의 찬반의견은 3대3으로 갈려 부결될 상황이었지만, 사회자인 원고가 찬성 쪽으로 캐스팅보트(의장결정권)를 행사해 확정됐다고 보도한 사실, 실제 “○동교육지원기관 토지매입비 예산편성의견”은 2003. 5. 29. 제71회 ○○광역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7인의 교육위원들 간에 예산편성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원고를 포함한 4인의 교육위원이 예산편성에 찬성함으로써 위 안건이 통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광역시 교육위원회는 1997. 8. 개원한 이래 주류 측과 비주류 측 간의 의견대립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안문제에 관하여 4 : 3으로 찬반의견이 갈려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래 캐스팅보트의 사전적 의미는 의안의 채택 여부를 두고 가부가 동수일 때 의장이 가지는 의결권을 말하는 것이나, 위 용어는 의견을 달리하는 양쪽의 세력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그 결론을 좌우할 수 힘을 가진 경우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하므로, 비록 위 기사

내용이 원고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예산안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마치 교육위원회 의장인 원고에게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캐스팅보트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한 측면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위 교육위원회에서 주류 측과 비주류 측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에서는 사실상 의장인 원고의 찬반여부에 따라 의안의 통과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들이 이를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고,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다소 왜곡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기사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바) 기타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들이 원고가 1997. 5. 12.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직을 사임하였음에도 제2 기사에서 자신이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허위보도를 하였고, 학교법인 ○○학원 소유인 위 ○동 산39-14의 공시지가는 m²당 41,600원이고, 보상가는 m²당 약 148,333원으로서 원고와 관계가 있는 토지도 공시지가에 비해서 4배가 되지 아니하는 보상가격이 책정되기도 하였음에도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토지의 감정가격 및 실제보상가가 공시지가의 4배라고 허위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자는 전체적인 기사내용에 비추어 보면 극히 사소한 부분으로 이 사건 기사의 중요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는 이상 보도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후자는 제2, 3 기사들 중 공시지가의 4배로 보상가 또는 감정가가 적용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모두 원고와 원고의 장남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는 기사내용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이 역시 보도의 진실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 소결론

비록 원고의 주관적인 잣대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동교육지원기관 토지매입비 예산편성의 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광역시 교육청이 이미 배정받은 예산을 국고로 반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 안건에 찬성한 것이고,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위 교육연구단지에 편입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광역시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인 원고로서는 스스로 옛 중국고사에서 이르듯이 “군자방미연 불처협의간 과전 불납리 이하부정관(君子防未然 不處嫌疑間 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토지가 전체 교육연구단지 편입토지의 약 40%나 포함되어 있는 예산안의 의결에 찬성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의사가 예산안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반인의 객관적인 잣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한 이상, 그에 따른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에 있어 공익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보도내용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연구단지의 부지선정과 관련한 의혹의 제기가 특별히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보도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엽

□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7. 20.자 판결 (2005가단16980)

사실개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송경호)은 2006년 7월 20일 정○○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공사가 2005년 3월 27일 「KBS 저널」 프로그램에서 불법성형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원고에 대해 취재하면서 원고의 모습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를 변조해 주기로 하였으나, 눈 윗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 아래 부분은 그대로 방송하여 이를 시청한 원고 주변 사람들이 원고임을 알아보게 되었다

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KBS 저널’ 프로그램에 자신이 방송되는 것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도 원고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것이고 피고도 이를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취재 방송함에 있어 가명을 사용하고 음성을 변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자이크처리 등의 화면처리방법으로 원고의 영상을 당초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모자이크 처리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았어야 하고 실제 막을 수 있었음에도, 실제 부작용이 문제가 된 코 부분 이외에도 그 아래 부분을 선명하게 노출하여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단16980 손해배상(기)

원 고 : 정 ○ ○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선 아

변론종결 : 2006. 6. 29.

판결선고 : 2006. 7. 20.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27.부터 2006.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피고가, 3/4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KBS2 TV의 'KBS 저널' 프로그램 제작진은 2005. 3.경 피부관리실, 미용실, 찜질방 등에서 만연하고 있는 무면허의료업자에 의한 불법성형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불법성형시술의 실태와 폐해를 방영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불법성형시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려는 기획의도에 따라 취재를 시작하였다.

나. 위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인 최○○은 불법성형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사례를 찾던 중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의 서○○ 원장을 통하여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35년 전 무면허의료업자로부터 코 부위에 파라핀 주사를 맞은 후 파라핀이 녹아내리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위 병원을 찾기 전 이미 두 차례의 파라핀 제거 수술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도 한 차례 피부지방이식수술을 받았으며 보원수술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다. 최○○으로부터 원고의 섭외를 부탁받은 서○○은 2005. 3. 19.경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원고에게 방송국 취재에 응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라. 원고는 2005. 3. 22. 오후 4:30경 다시 치료를 위해 위 병원에 갔다가 취재를 위하여 위 병원을 방문한 최○○을 비롯한 위 프로그램 제작진을 만나 그들로부터 취재요청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위 시술사실을 주위에 숨겨왔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의 모습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주고, 목소리를 변조를 하여 달라는 조건을 붙여 취재 및 방영을 승낙하였고, 최○○도 이를 약속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원고의 요구나 최○○의 약속은 없었다.

마. 최○○은 원고를 취재한 후 2005. 3. 27. 위 'KBS 저널'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하면서 원고의 성명 대신 '차순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인터뷰 내용 전체를 음성변조 처리하여 방송하였으며, 원고를 취재한 방송은 위 프로그램의 총방송시간 2시간 중 62초간이었는데, 그 방송의 내용은 원고가 무면허 불법성형시술자로부터 코 부위에 파라핀 주사를 맞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바. 그런데, 이 사건 방송에 있어 원고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원고의 얼굴 전체의 정면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약 9초간 방영되었는데, 눈을 포함한 그 윗 부분만 모자이크처리되고, 그 아래 부분은 선명하게 방영되었고, 원고의 얼굴 중 코를 비롯한 그 아래 부분의 측면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약 27초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선명하게 방영되었으며, 원고가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로 눈을 감고 누워 있는 채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약 2초간 방영되었는데, 위 방송이 방영된 후 이를 시청한 원고 주위의 가족, 이웃들 중 여러 사람이 원고를 알아보고 방송출연사실에 관하여 문의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KBS 저널' 프로그램에 자신이 방송되는 것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도 원고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것이고 최○○도 이를 약속하였으므로 최○○로서는 원고를 취재 방송함에 있어 가명을 사용하고 음성을 변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자이크처리 등의 화면처리방법으로 원고의 영상을 당초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모자이크 처리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았어야 하고 실제 막을 수 있었음에도, 실제 부작용이 문제가 된 코부분 이외에도 그 아래 부분을 선명하게 노출하고, 원고의 걸어가는 뒷모습 전체를 방영함으로써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최○○을 비롯한 위 프로그램의 제작진의 사용자로서 위 제작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로써 이 사건 방송 전에 원고로부터 초상사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거나, 이 사건 방송의 원고 화면은 사회 일반인이 보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묘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받은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인터뷰 및 프로그램의 방영 경위 및 방영 내용, 방영시간, 방송 후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5. 3.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송 경 호

□

**기사를 언론사로부터 공급받는 포털사이트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는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자 판결 (2005가단18300)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김승곤 판사) 재판부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씨비에스아이의 노컷뉴스팀 소속 기자가 2005년 3월 8일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시장이 기자와 대화 도중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이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이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면서 ‘김현미 대변인’을 ‘전여옥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했고 이 기사는 곧바로 피고 씨비에스아이와 뉴스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피고 엔에이치엔의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 시사분야란에 『이명박 시장,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원고가 이명박 시장에 대하여 기사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같은 당 소속의 이명박 시장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엔에이치엔에게 전송하였고, 피고 엔에이치엔은 이를 그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게재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엔에이치엔이 자신들은 기사 작성 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단지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이며, 제목 또한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에 의존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 엔에이치엔으로서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피고 엔에이치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 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 엔에이치엔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엔에이치엔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 엔에이치엔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단18300 손해배상(기)

원 고 : 전 여 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 회관 814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두 아

피 고 : 1.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빌딩

대표이사 김 범 수

2.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서울 양천구 목동 917-1

대표이사 이 정 식, 정 남 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 중 운, 김 민 정

변론종결 : 2006. 8. 25.

판결선고 : 2006. 9. 8.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건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에이치엔' 이라고 한다)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피고 씨비에스아이' 라고 한다)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들 간의 기사 및 정보제공 체계

(1) 피고 엔에이치엔은 2004. 9. 30. 피고 씨비에스아이와 사이에 네이버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씨비에스아이로부터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작성한 기사를 제공받고 있었다.

(2)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노컷뉴스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컷뉴스팀의 기자가 씨비에스

노컷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사 내지 정보를 등록하면 노컷뉴스팀이 편집을 한 후 이를 씨비에스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게 되고 씨비에스 서버에 저장된 기사와 정보는 다시 1분 간격을 두고 자동으로 피고 엔에이치엔이 운영하는 서버에 그대로 전송된다.

(3) 피고 엔에이치엔은 피고 씨비에스로부터 전송받은 기사와 정보를 '네이버'에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하되 기사제목만을 기사 내용에서 뽑아 링크를 걸어 이용자들이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기사와 정보의 내용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4) 피고 엔에이치엔은 2005. 1. 31. 피고 씨비에스아이를 비롯한 각 언론사에 기사 수정 및 삭제 요청 시 반드시 피고 엔에이치엔의 네이버 뉴스팀 대표메일로 요청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오보(誤報)의 작성 및 게재 경위

(1) 피고 씨비에스아이의 노컷뉴스팀 송○○ 기자는 2005. 3. 8.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시장이 기자와 대화 도중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이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이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면서 ‘김현미 대변인’을 ‘전여옥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하였다.

(2) 위 나.항에 따라 위 기사가 같은 날 18:50경 포털사이트 네이버로 사진과 함께 자동 전송되었고, 피고 엔에이치엔은 같은 날 19:00경 분야별 주요뉴스 중 시사분야란에 「이명박 시장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다.

(3) 위 기사가 게재된 지 50여분이 지나 씨비에스의 청취자로부터 기사가 잘못 되었다는 내용의 제보가 씨비에스 측에 왔고,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같은 날 19:51경 위 기사 중 ‘전여옥 대변인’ 부분을 ‘김현미 대변인’으로 수정하였으며,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도 자동으로 수정되었다.

(4)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위 기사가 수정되었으면 나.(4)항에 따라 이메일로 수정요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엔에이치엔에 즉시 이메일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고 엔에이치엔에 통보를 함에 따라, 제목은 같은 날 21:30경에 이르러서야 수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원고가 이명박 시장에 대하여 기사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같은 당 소속의 이명박 시장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엔에이치엔에게 전송하였고, 피고 엔에이치엔은 이를 그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게재하게 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엔에이치엔은 위 기사작성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단지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이며, 제목 또한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에 의존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 엔에이치엔으로서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 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 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 엔에이치엔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엔에이치엔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들의 책임 범위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게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점, 네이버가 최대 포털사이트로서 이 사건 기사가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게재되어 그 파급효과가 큰 점,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말미암아 원고가 오해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점, 다만, 피고들이 고의로 이 사건 기사를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잘못 작성하여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 작성 후 50여분이 지나 곧바로 내용을 수정한 점, 기사 수정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오해가 풀려 위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곤

□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도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해당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도내용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6.자 (2003가단379883)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6단독(박미리 판사) 재판부는 스포츠조선 전(前) 제작국장 박○○이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도는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는 언론사 내부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 노사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스포츠조선 노사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그 주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편 스포츠조선은 신입 사장의 부임 후 계속해서 노사갈등을 겪어오다가 이 사건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사갈등이 악화되어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 스포츠조선 지부와 민주노총이 함께 스포츠조선 사옥에서 노조탄압 중지와 성희롱 피해 직원들에 대한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각종 언론에서 스포츠조선 관련 기사를 보도하자 이 사건 취재를 하게 된 점, 성희롱 사건의 성격상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므로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쪽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방송이 오로지 원고와 관련 여직원들의 성희롱 관련 인터뷰만을 방송한 것이 아니라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스포츠조선의 사장,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및 전국언론 스포츠조선지부의 지부장에 대한 인터뷰도 방송함과 아울러 언론사의 윤리성을 지적하며 이 사건 성희롱 문제가 더욱 확대되기 전에 노조와 스포츠조선 사장과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방송을 마친 점, 이 사건 방송보도는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터뷰의 방영은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들이 지난 2003년 10월 17일 MBC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이○○ 기자의 미디어 속으로」에서 『한 언론사의 성희롱과 노조 깨기』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스포츠조선 여직원들을 성희롱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피고들은 스포츠조선 여직원들의 인터뷰 내용의 진위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방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방송하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어떠한 해명도 요청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여직원들의 허위 주장의 인터뷰 내용만을 방송하였으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여직원들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받아들일도록 유도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3가단379883 손해배상(기)

원 고 : 박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치 걸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 긍 희

2. 이 ○ ○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 성 규, 한 상 혁, 김 택 수

변론종결 : 2006. 7. 18.

판결선고 : 2006. 9. 26.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별지 공문 기재 내용과 같은 공문을 교부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03. 6. 23. 소외 주식회사 스포츠조선(이하 스포츠조선이라고 한다)의 제작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제작국 직원들과 회식을 자주 하였는데, 그 때마다 원고를 비롯한 제작국의 일부 남자 직원들은 제작국 소속 여직원들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곤 하였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2003. 7. 8. 17:30경 스포츠조선 사옥 부근에 있는 J모 중식당에서 제작국 소속 남자 직원 2명과 정○○을 비롯한 여직원 4명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정○○에게 술을 권하여 정○○이 자신이 임신 증임을 밝히면서 술을 마실 것을 거절하자 “술은 뱃속에서부터 배워서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재차 정○○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권하였다.

(3) 같은 날 위 회식이 종료한 후 남자 직원들이 노래방을 가기를 꺼려하는 여직원들에게 원고와 함께 노래방에 갈 것을 강권하여 김○○을 비롯한 여직원 3명이 부득이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원고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 직원들을 불러내어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여자 직원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4) 정○○ 등 스포츠조선의 여성 노조원들은 2003. 8. 22. 스포츠조선 노조 사무실을 찾아와 노조 지부장인 이○○ 등에게 2003. 6. 및 7월에 있었던 제작국 회식 당시 일부 여직원들이 제작국 소속 상사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이○○ 등은 노조 집행부 회의를 거쳐 회사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1. 노조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울러 그 무렵 상급단체인 전국언론노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여 전국언론노조 중앙위원회에서는 그 대응방안의 하나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하기로 하였다.

(5) 한편 스포츠조선은 2002. 8.경 조선일보 출판국장 출신인 하○이 부임한 뒤 노사갈등이 계속되어왔는데,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노사갈등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 스포츠조선 지부와 민주노총이 함께 2003. 10. 6.부터 스포츠조선 사옥에서 노조탄압 중지와 성희롱 피해 직원들에 대한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함으로써 인해 각종 언론에 스포츠조선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직해임되었다.

나. 피고 이○○의 취재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MBC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이○○는 이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피고 회사의 기자이다.

(2) 피고 이○○는 스포츠조선의 성희롱 사건이 각종 언론 관련지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자 이 사건 미디어비평이 언론전문 프로그램이므로 스포츠조선의 성희롱 사건을 보도하기 위하여 2003. 10. 15. 오전 스포츠조선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성희롱 의혹”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청취하려고 하였지만 총무부와 접촉해 보라는 답변을 듣고 스포츠조선 총무부에 전화를 걸어 부서 책임자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원고에 대한 인터뷰가 필요하여 당시 직위해제 상태로 근무여부가 불명확한 원고에게 인터뷰 요청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3) 피고 이○○는 이 사건 관련 당사자인 스포츠조선의 직원인 서○○, 김○○, 오○○, 박○○, 정○○, 하○,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인 신학립, 전국언론노동조합 스포츠조선 지부의 지부장인 이○○을 인터뷰한 다음 2003. 10. 17. 23:15 MBC 미디어비평의 “이○○ 기자의 미디어 속으로”에서 “한 언론사의 성희롱과 노조 깨기”라는 제목으로 방송하였다.

다. 이 사건 방송보도의 내용

(1) 사회자가 먼저 스포츠조선에서 불거진 성희롱 의혹이 노조탄압 의혹과 맞물리면서 심각한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한 다음, 피고 이○○가 조선일보의 계열사인 스포츠조선에서 얼마 전 일어난 성희롱 의혹사건이 노사 간의 극한대립으로 변지면서 언론사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스포츠조선 노조 여성부장 유○○의 기자회견 전경을 보여준 다음 스포츠조선 로비에서 열린 성희롱에 항의하는 노조집회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2) 이어서 서○○의 인터뷰 다음 “싫다고 저희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자리 옆 주변을 다 비워놓은 상태였고 저희는 부장님 손에 이끌려서 거기 그 자리 국장 앞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국장님이랑 바로 앞에서 앞에 앉히는 거는 그래 니네들 술 따라라 그러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여자들이 그 상황에서 좋아할 여자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시더라구요. 슬금슬금 피했더니 옆으로 가니까는 다시 어깨동무를 하세요. 그래서 또 피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에 잡아당기시고 계속 거기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건데 나중에 끝나고서 집에 가면서 손에 느낌이란 게 그게 계속 남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잡히지, 하면서 제가 만져봤니까요. 건데 만져보는 상황에서 여자속옷 그 라인 밑으로 살이 좀 올라오거든요. 거기가

딱 잡히더라구요. 근데 그것을 솔직히 창피해서 그 담에도 말을 못했어요.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김○○과 서○○의 인터뷰를 방송하였다.

(3) 계속해서 술을 강권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원고의 인터뷰를 방송한 다음 사회자가 “당사자들의 진술이 극도로 엇갈리는 상황이 성희롱 사건의 전형적인 전개과정이고, 가해자가 대부분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유야무야 될 수 있는 것도 성희롱 사건의 전형적인 특성이고 이 사건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고 설명한 다음 피고 이○○가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 입장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설명을 한 후, 성희롱 외에도 더 심각한 이야기로 만삭의 임산부에게 강제로 술을 권했다는 설명을 하였다.

(4) 다음으로 임산부에게 차를 권했다는 박○○의 인터뷰 방송 후 “그날은 맥주 주셔서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됐다고 그랬더니 그날도 음료수를 안 시켜 주셔서 그냥 맥주를 시켜 주셔서 한두 잔은 괜찮다고 그날 하도 빨리 쳐다보셔서... 그래서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마셨어요. 그날은”, “여직원들 한잔씩 따라 주면서 제 순서가 됐는데 ‘뺏속에서부터 배워 나오면 좋습니다’ 이러면서 따라주셔서 할 수 없이 받았죠”, “그 날 마셨어요. 조금. 건배하고 제 바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라고 하는 정○○의 인터뷰를 방송하였다.

(5) 계속해서 부인하는 원고의 인터뷰와 정○○의 인터뷰를 방송한 다음 사회자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는 했습니까”라고 묻자 피고 이○○는 “일단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사회자가 “성희롱 의혹 사건으로 노조갈등이 촉발되었다고 하는데요”라고 묻자 피고 이○○가 “이번 사건은 이미 스포츠조선 사업장 내의 노사관계 성격을 벗어나 산별노조, 언론노조 차원의 문제로 비화된 상태입니다”라는 답변을 방송하고 계속해서 하○○, 신학립, 이○○의 인터뷰를 방송한 다음 피고 이○○는 스포츠조선 사장이 성희롱 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차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스포츠조선과 조선일보 사장은 이 문제가 더욱 확대되기 전에 노조와 머리를 맞대는 지혜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방송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 5 내지 8,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스포츠조선 여직원들의 인터뷰 내용의 진위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방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방송함은 물론 원고

의 인터뷰 내용의 방송은 여직원들의 인터뷰 내용의 방송 시간에 비해 훨씬 짧은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어떠한 해명도 요청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여직원들의 허위 주장의 인터뷰 내용만을 방송하였고, 이 사건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소외 김△△ 과도 인터뷰를 했음에도 방송하지 않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여직원들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청구취지와 같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인터뷰의 방영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1) 살피건대, 이 사건 인터뷰의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인터뷰의 방영이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미디어비평”의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터뷰의 방송은 원고가 임신부인 여직원에게 술을 강권하여 마시게 하고, 여직원들을 성희롱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위법성의 조각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은 이미 스포츠조선의 노사 간의 갈등과정에서 불거져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어 언론의 집중조명이 필요하고, 더구나 이런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는 언론사 내부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 문제가 되었다면 마땅히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비판의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편성되었고, 또한 피고들은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 기초로 그대로 보도하거나 이를 기초로 한 논평을 보도한 것으로서 기사의 진실성이 인정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참조).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인터뷰 방송의 공익성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는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는 언론사 내부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 노사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스포츠조선 노사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그 주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스포츠조선은 하○ 사장의 부임 후 계속해서 노사갈등을 겪어오다가 이 사건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사갈등이 악화되어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 스포츠조선지부와 민주노총이 함께 스포츠조선 사옥에서 노조탄압 중지와 성희롱 피해 직원들에 대한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각종 언론에서 스포츠조선 관련 기사를 보도하자 이 사건 취재를 하게 된 점, 성희롱 사건의 성격상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므로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쪽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방송이 오로지 원고와 관련 여직원들의 성희롱 관련 인터뷰만을 방송한 것이 아니라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스포츠조선의 사장,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및 전국언론스포츠조선지부의 지부장에 대한 인터뷰도 방송함과 아울러 언론사의 윤리성을 지적하며 이 사건 성희롱 문제가 더욱 확대되기 전에 노조와 스포츠조선 사장과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방송을 마친 점, 이 사건 방송보도는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이 사건 인터뷰의 방영은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

□

**보도의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일명 ‘안기부 X 파일’에 등장한 화자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1997년 대선 당시 원고가 보인 보도행태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들이 그 대화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27.자 (2005가단59554)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김도현 판사) 재판부는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들이 2005년 7월 29일 「뉴스플러스 앰니오니」 프로그램 『권력과 언론, 그 검은 커넥션』 제하의 보도를 통해 “일명 ‘안기부 X 파일’ 내용을 보도하면서 1997년 당시 김대중 후보의 건강 문제에 관해 원고가 보도한 내용의 일부만 발췌해 방송함으로써 원고가 마치 김대중 후보만을 집중 공략하는 기획 기사를 따로 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안기부 X 파일’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사실로 단정해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악의적 태도를 가지고 원고에 관한 사항을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방송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익적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었던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홍석현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와 중앙일보가 보인 편향적인 보도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대화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대화내용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단59554 손해배상(기)

원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2. 윤 ○ ○

3. 서 ○ ○

피고 2, 3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주식회사 문화방송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전 태 진

변론종결 : 2006. 8. 23.

판결선고 : 2006. 9. 27.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1) 원고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사라 함)은 ‘MBC’라는 매체명으로 전국 일원을 그 방송권역 및 가시청권으로 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뉴스플러스 암니옴니’라는 프로

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피고 윤○○, 서○○는 피고 회사 소속의 기자들로 2005. 7. 29. 뉴스플러스 암니옴니를 진행한 사람들이다.

(2) 뉴스플러스 암니옴니는 일주일에 1회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난 특정사건에 대한 신문, 방송 등 여러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비평을 하는 이른바 매체비평프로그램이다.

(3) 피고 회사는 2005. 7. 29. 22:55경부터 23:45경까지 '권력과 언론, 그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으로 소위 '안기부 X파일'에서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언론과 재벌, 그리고 권력의 유착관계를 방영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관련된 방영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행매체인 조선일보, 주간조선, 월간조선 등을 통해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거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은 그 보도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방송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김대중 후보만을 집중 공략하는 기획기사를 따로 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다.

(2)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근거로 삼은 X파일의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그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고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고를 “스스로 권력화하는 무소불위의 매체”라는 등으로 모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방송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의 이와 같은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말미암아 대외적 신용이 크게 실추되고 그 업무를 방해받는 등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건전한 매체비평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이며, 이 사건 방송내용과 같이 원고가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보도를 하고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부각하여 보도한 것은 사실이다.

(2) 설사 이 사건 방송내용 중 일부 내용의 진위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는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방송은 위법하지 않다.

3.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방송의 경위와 그 내용

(1) 피고 회사 소속의 이○○ 기자가 확보한 안기부 도청 녹음테이프와 그 녹취록(소위 'X파일')의 내용이 2005. 6.경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던 홍석현과 삼성그룹 비서실장인 이학수 사이에 오고 간 각 대선 후보자들의 근황과 삼성그룹의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문제 등에 관한 대화들이다.

(2) 원고는 2005. 7. 22.과 7. 24. 조선일보의 사설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와 더불어 X파일의 내용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가, 중앙일보가 2005. 7. 25. 1면과 3면 기사를 통해 '입 열면 안 다칠 언론사 없다', '조선·동아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역겨워'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원고)와 동아일보도 그 임원들의 대화내용이 도청되어 그 치부가 다 알려졌으니, 중앙일보에 초상이 났다고 좋아서 그러지 마라, 다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전 안기부 도청팀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면서 X파일의 내용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국정원의 불법도청행위를 더 문제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2005. 7. 27.부터는 X파일 사건의 초점을 중앙일보와 같이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맞추어 보도하였다.

(3) 이에 피고들은 원고와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이 X파일 사건의 본질을 자본, 언론 그리고 권력 사이의 유착 내지 야합에 관한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두지 않고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로 몰고 가고 있다고 보고 2005. 7. 29. 이 사건 방송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처음에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선후보자에 대한 삼성의 정치자금 전달 문제, 중앙일보의 당시 신한국당(뒤에 '한나라당'으로 당명 변경) 이회창 후보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 보도 문제 등을 다루다가, 이어 X파일 중 별지 2. 기재와 같이 홍석현과 이학수 사이에 오고 간 원고 관련 대화내용, 즉 '조선일보 방씨 일가가 모여 차기대통령 문제를 논의한 끝에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막기로 결론을 내고 이를 위해 김대중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인 건강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함. 조선일보 기자들이 김대중 후보가 치료받는 병원에서 야간 잠복 근무를 하고 있고, CT 촬영결과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10월 21일경 주간조선이나 월간조선을 통해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터뜨릴 예정임'이라는 홍석현의 말을 근거로, 원고도 1997년 대선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권력 만들기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위와 같은 홍석현의 대화내용대로 1997. 10. 20.자 조선일보, 1997. 11. 20.자 주간조선, 1997년 12월호 월간조선 등을 통해 김대중 후보에 대한 건강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방송하였다.

② 그리고 계속하여 1997년 대선 당시 원고 및 중앙일보와 신한국당 사이의 우호적 관계,

원고와 중앙일보의 반 김대중 친 이회창 성향, 1992년과 2002년 대선에서의 원고와 중앙일보의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보도태도 등을 통해 원고와 중앙일보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특정 정당과 유착관계를 맺고 그 정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나 공정보도의 원칙을 포기하였고, 스스로 권력화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하였다.

③ 이어 X파일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일보가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X파일 사건의 본질을 도청의 불법성으로 몰아가고 있고, 원고와 동아일보도 당초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던 입장에서 돌아서 중앙일보와 같이 X파일 사건의 초점을 불법도청의 문제로 바꾸었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 회사, SBS, 문화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 X파일 내용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의견이 높다는 내용을 방송한 뒤, “거대재벌의 부도덕한 면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들. 재벌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가 바로 독자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라는 피고 윤○○의 말을 끝으로 이 사건 방송을 마무리하였다.

(4)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 전에 위와 같은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의 대선관련 보도 내용과 그 성향

(1) 원고는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행매체인 조선일보를 통해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10여 회 걸쳐 거론하였는데, 주로 상대방인 한나라당 선거관계자의 발언이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 등을 보도한 것이었고, 원고 이외의 대부분의 언론도 당시 각 당의 정치적 공방 속에서 나오는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1997. 10. 20.자 ‘대선후보들 건강과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총재 등산, 이 총재 족구, 이 전(前) 지사는 춘천마라톤 참가신청’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김대중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를 보도하면서, 김대중 후보에 관해서만은 소제목 없이 그 기사 말미에 ‘산책과 맨손체조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고, 1997. 10. 25.자 ‘대정부 질문 초점’이라는 기사에서는 다른 신문들이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김대중 후보의 건강, 비자금 수사 연기 문제와 함께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신한국당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등을 보도한 것과 달리 김대중 후보의 건강과 비자금 수사 연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2) 원고는 1997. 11. 20.자 주간조선의 ‘경쟁후보가 보는 강점과 약점’이라는 기사를 통해 신한국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3당에서 선정한 선거기획 핵심인사 2인이 들고 있는 상대 후보의 강점과 약점을 보도하였는데, 주로 이회창 후보에 대하여는 두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가, 김대중 후보에 대하여는 건강문제가, 이인제 후보에 대하여는 경선불복 문제가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었다는 내용이었다.

(3) 원고는 1997년 12월호 월간조선의 '대선 3후보 최대약점 집중추적'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두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에 관해,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건강 문제에 관하여 심층적인 취재를 하여 보도하였는데, 김대중 후보와 관련된 내용 중에는 '입수한 처방전에 따르면 김대중 후보가 당뇨치료제 두 가지(유글루콘과 글루코바이), 혈압강하제 한 가지(스프렌딜), 콜레스테롤 치료제 두 가지(리판틸과 메바코드), 통풍치료제 한 가지(자이로릭) 등 여섯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4) 한편, 원고와 중앙일보는 1997년 대선 당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신한국당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이회창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대선 상황을 이회창과 김대중의 양자구도로 몰고 가려고 하는 등 선거 상황을 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보도하면서도, 그 상대방인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색깔론, 반DJP연대, 비자금 폭로 등으로 공격하고, 이인제 후보에 대해서는 대선 상황이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대결로 압축된 것처럼 편파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고, 근거 없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국민신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편파적으로 이회창 후보의 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당시 위와 같은 원고와 중앙일보의 편향보도로 인해 원고와 중앙일보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을 1 내지 3, 5 내지 8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 단

가.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 여부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은 X파일 사건과 관련

하여 그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우선시하는 피고들과 달리 원고와 중앙일보가 국정원의 불법도청행위를 더 문제시하며 진실규명을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그러한 원고와 중앙일보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원고 및 중앙일보와 재벌 및 특정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었고, 그러한 유착관계의 전형적인 사례로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와 중앙일보가 보인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편향적인 보도행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방송의 경위와 내용, 그리고 원고와 중앙일보가 국민의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내 유수의 언론사인 점,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방송에 원고와 중앙일보가 보인 지난 대선에서의 보도행태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소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방송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X파일 사건과 관련한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갑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와 중앙일보를 포함한 일부 언론을 '추악한 커넥션의 당사자, 권력과 언론의 검은 커넥션, 독자를 완전히 우롱하는 신문, 스스로 권력화하는 무소불위의 매체, 국민의 알권리나 공정보도의 원칙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진 부도덕한 권언유착, 그 부정의 뿌리, 신문사들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자사의 이익, 혹은 재벌의 권력' 등으로, 원고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정권과 문민정권 창출 과정에서 대통령 메이커의 역할을 자임한 조선'으로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방송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원고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거나, 그것이 원고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 147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방송의 진실성 여부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의 보도내용 중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방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홍석현은 국민의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굴지의 언론사인 중앙일보의 사장인 점, 그 대화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복용하고 있다는 약의 이름까지 보도한 1997년 12월호 월간조선의 내용과 홍석현의 대화내용이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 점, 원고와 중앙일보가 1997년 대선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를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었던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근거한 이 사건 방송 중 원고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

다.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 조각

결국, 이 사건 방송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익적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홍석현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와 중앙일보가 보인 편향적인 보도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대화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대화내용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방송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허위의 내용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 사 김 도 현

□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일반 시청자로 하여금 원고의 조부가 친일파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 2006. 10. 12.자 (2006나3538)

사실개요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건설 대표이사인 이○○과 이□□이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

심에서 “피고 문화방송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를 ○○건설의 명예회장으로 소개하고, ○○건설 명예회장실에서 원고 이○○와의 회견을 방영한 사실만으로 ○○건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없다”며 ○○건설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문화방송이 망 이△△을 친일파였던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PD 수첩」 보도는 망 이△△이 친일파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 시청자로 하여금 망 이△△이 친일파라는 전체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건설과 이○○은 피고 문화방송이 지난 2004년 3월 2일 「PD 수첩」프로그램 『친일파는 살아있다 3』 제하의 방송에서 원고 이○○의 조부인 망 이△△이 마치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친일파였던 것처럼 허위 보도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프로그램의 제목 및 진행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등 방송 전체 취지에 비추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망 이△△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인상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망 이△△과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있고 망 이△△이 원고 이○○의 조부일 뿐 원고 이○○이 대표이사로서 있는 ○○건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 문화방송이 굳이 ○○건설까지 거론하고 이로 인해 ○○건설을 비방하는 항의 메일이 상당수 접수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건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역시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3집 299 ~ 319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6나3538 손해배상(기)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이 ○ ○
2. 이 ○ ○

원고, 항소인 : 이 □ □

원고들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주 봉, 명 을 식, 강 병 열, 김 동 환, 구 재 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 505호

대표이사 오 연 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 돈 명, 김 형 태, 이 정 희, 윤 영 환, 탁 경 국, 송 상 교

제 1 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06. 1. 18. 선고 2004가합2605 판결

변 론 종 결 : 2006. 8. 24.

판 결 선 고 : 2006. 10. 12.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 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 이○○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 이○○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이□□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이□□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 이○○와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 이○○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건설'이라 한다)에게 300,000,000원, 원고 이○○에게 500,000,000원, 원고 이□□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이하, '피고 오마이뉴스'라 한다)는 원고 ○○건설, 이○○에게 각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다.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MBC) 텔레비전 피디(PD)수첩의 본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는 「○○건설 명예 회장 이○○ 조부 관련 '친일파는 살아있다'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피디(PD)수첩을 진행할 때의 자막과 같은크기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라. 피고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까지 「○○건설 명예회장 이○○ 조부 공적비 관련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과 「이△△ 관련 비문의 진상」이라는 부제목 아래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003. 12. 17.자 「독립투사의 공적비가 변조된 사연」의 제목 글자와 같은 색상 및 크기로, 부제목과 본문은 통상의 글자 크기로 보도하여야 한다.

마. 만약 피고들이 위 제3, 4항의 각 기간 안에 정정보도문을 보도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들에게 매일 각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피고 오마이뉴스는 원고 ○○건설, 이○○에게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①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 ○○건설에게 40,000,000원, 원고 이○○에게 180,000,000원, 원고 이□□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② 피고 오마이뉴스는 원고 ○○건설에게 50,000,000원, 원고 이○○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제1의 다.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 문화방송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항 중 다.의(2) 및 마.의(3), (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다.의 (2)항

대전애국지사 숭모회는 1994. 3. 1. 대전 대덕구 회덕에 있는 '기미 3·1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이하, 3·1운동 기념비'라 한다)와 그 옆에 '기념비 건립기'를 새긴 표지석을 설치하였다. 3·1 운동 기념비에는 '의병 이△△이 3·1 만세운동을 하였다'는 내용과 그 하단부에 '대전애국지사 숭모회 고문 이○○, 회장 이○○'라고 새겨져 있다. 기념비 건립기에는 '이 지역에 만세운동을 지휘주도한 선열로는 의병인 창의군 일대 중군장 이△△ 선생이 있다', '비룡리 송○○, 사한리 송○○, 송○○ 선생과 산내 양○○, 김○○, 김○○ 선생, 회덕 천도교인 박○○, 이○○, 장○○ 선생 등이 만세운동의 주도자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의 (3), (4)항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 중 망 김○○, 이△△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 50여 분의 분량 중 10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위 ④항 보도 부분은 진행자의 '독립투쟁으로 인한 가난과 친일의 대가로 얻은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나라,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라는 언급 뒤에 독립유공자 후손과의 회견(interview)으로 마무리된다. 망 김○○, 이△△과 관련된 부분은 조○○ 연출자(producer)의 '그나마 단 하나의 보답인 명예마저도 돈과 권력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끝에 돌아가신 김○○ 선생. 지난 2000년 손자 김○○씨는 대전시가 선생의 휘호비와 생애비를 건립한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휘호비의 앞면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글씨가 새겨져 있고 조부의 글씨는 뒷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시작된다. 이 부분 보도 내용은, 망 김○○의 휘호비 및 생애비에 함께 새겨진 망 이△△은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인 전 국회의원 원고 이○○와 전 ○○○구청장 망 이○○ 형제의 조부로 밝혀졌다는 사실, 대전시의 지원 아래 대전애국지사숭모회가 위 휘호비 및 생애비를 건립하였다는 사실, 망 김○○의 묘비에 원래의 비문에는 없었던 내용인 망 이△△의 독립운동 사실이 망 김○○의 장손도 모르게 추가되었다는 사실, 망 김○○의 묘비가 바뀔 무렵 대전시 효평동에 독립운동가 망 이△△의 공적비가 세워졌는데 대전시장 등 350여 명이 참석하였으나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회원들은 공적비를 세운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 이○○는 망 이△△이 독립운동 사실을 숨기고 죽었는데 10여 년 전에 나타난 증인 때문에 망 이△△의 행적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증인 등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지역

교수 다섯 명의 고증을 받아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거증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는 사실, 고증을 한 교수 중 2명은 망 이△△의 독립운동사실을 직접 연구한 적이 없고, 그 당시의 신문에 난 망 이△△의 독립운동에 관한 기사를 고증의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 등을 원고 ○○건설 명예회장실에서 한 원고 이○○와의 회견, 각종 비문 설립 및 보수를 주동한 대전애국지사 송모회 회장 이○○와의 회견, 김○○의 손자 김○○, 독립운동사 전공 국사학자 김○○ 충남대 교수,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사무국장 이○○, 망 이△△을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할 당시 조사내용을 고증한 교수 2명과 회견과 함께 보도하고 있다. 이 부분 보도의 마지막 부분에 조○○ 연출자의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이들 비석들이 그 자체로 독립운동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라는 언급 뒤에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사무국장의 ‘한대만 지나가도 이거 부인 못해요, 누구도 왜! 반론자가 없잖아요. 반론자가 없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큰일나려고 여기 나서요, 그때는? 여기 국회의원이 가고 시장이 가고 독립유공자가 가고 애국지사가 가서 세운 비인데 이거 누가 이걸 부인합니까?’라는 회견 장면이 보도 된다. 그 뒤에 주진행자인 최○○ 책임 연출자의 ‘네, 증인도 없고 모두의 기억이 희미해져간다고 묘비까지 바뀌서 애국지사로 둔갑시키는 현실, 역사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라는 언급으로 이 부분 보도가 마무리된다. 주진행자는 바로 이어 ‘조○○ 피디(PD)! 지금 이런식으로 친일파가, 심지어 친일파가 애국지사로 둔갑하는 사례, 적지 않죠?’라고 조○○ 연출자에게 질문하자, 조○○ 연출자가 ‘예,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었던 관계로 친일 혐의자가 독립유공자로 바뀐 예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훈장 수여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정기를 좌우하는 문화예술계까지 확대되어서 친일 청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친일혐의자들인 김○○, 모○○, 유○○, 유○○ 등이 3·1 문화상 수상자 또는 심사위원, 독립유공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차례로 소개하는 위 ⑥의 보도로 이어진다.

(4)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 직후 원고 ○○건설의 홈페이지에는 ① 각종 비석을 철거하라는 내용, ② 원고 이○○가 조부를 독립운동가로 조작한 것을 비난하는 내용, ③ 원고 이○○를 친일파의 후손으로 단정하며 비방하는 내용 등 원고 이○○, ○○건설을 비방하는 전자우편(e-mail)이 접수되었다.

2.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를 통하여, ① 망 이△△이 반일 항쟁 의병으로 활동하고, 3·1 만세운동 당시 대전 인동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총상을 입고 고향의 움막에 숨어 지내다 사망하였음에도, 「친일파는 살아있다」는 제목 아래 다른 친일파의 행적 사이에 망 이△△에 관한 보도를 하고, 망 이△△에 관한 보도를 마치면서 주 진행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친일파가, 심지어는 친일파가 애국지사로 둔갑하는 사례 적지 않죠?’ 라고 질문하고, 피디(PD)가 ‘예,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하여 시청자들에게 망 이△△이 친일파였던 것처럼 보도하고, ② 은평공원 생애비 및 휘호비는 대전애국지사 승모회 회장 이○○와 망 김○○의 후손들이 협의하여 건립하였을뿐, 원고 ○○건설, 이○○와 망 이○○가 그 건립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망 이△△은 ○○건설 명예회장인 이○○ 전의 원과 은평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전 ○○○구청장 이○○ 형제의 조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고 보도하면서, 망 이○○가 연설하는 장면을 화면으로 내보내고, 원고 이○○에게 비석의 건립 및 비문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마치 위 생애비 및 휘호비의 건립에 전직 국회의원이자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인 원고 이○○ 및 망 이○○가 관여한 것처럼 보도하고, ③ 대전 동구 효평동에 건립되어 있는 이△△ 공적비는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의회 대전·충청지회(회장 이○○)가 1997. 3.경 건립하였고, 망 이○○은 위 공적비를 건립한 후 광복회 대전·충남지부장을 역임하였으며, 광복회는 일제에 항거한 광복군 출신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한국독립유공자회와는 엄연히 다른 단체이고, 제막식에는 다수의 광복회원이 참석하였음에도, ‘광복회 회원들이 공적비 건립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제막식에 광복회 회원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원고 ○○건설, 이○○가 광복회 몰래 비밀리에 공적비를 건립한 것처럼 보도하고, ④ 망 김○○은 1892년 생으로서 휘문의숙에 입학한 1913년 경에는 만 21세이었고, 그 이전에 향리에서 망 이△△이 수학한 망 이○○ 선생의 문하에서 한학을 수학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김○○ 선생은 신교육을 받으려 휘문의숙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10년간 한학을 수학할 시간이 없었다’ 라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원고들이 비문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나) 원고 ○○건설, 이○○의 청구

망 이△△, 원고 ○○건설, 이○○는 위 ①, ②, ③, ④항의 각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 원고 ○○건설은 위 각 보도로 인하여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원고 이○○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아울러 망 이△△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하여 망 이△△의 상속인 대표로서 손해배상을 구한다.

(다) 원고 이□□의 청구

망 이○○는 위 ②항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 원고 이□□은 망 이○○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라) 정정보도청구

원고들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구한다.

(2) 피고 문화방송의 주장

(가) 원고 ○○건설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건설은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로 인하여 원고 ○○건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①항 보도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는 망 이△△이 항일투쟁을 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였을 뿐이지, 반민족행위를 한 친일파라고 보도하지 않았다.

(다) 위 ②, ③, ④항 보도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 및 망 이△△과 관련한 보도부분은 모두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또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 문화방송이 진실이라고 믿은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 ○○건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의 내용은 원고 이○○, 망 이○○와 그 조부인 망 이△△과 관련된 것이고, 원고 이○○를 소개하면서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으로 그 직책을 밝히고 있을 뿐 원고 ○○건설과 관련한 아무런 사실의 적시가 없다. 원고 이○○를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으로 소개하고, ○○건설 명예회장실에서 원고 이○○와의 회견을 방영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에서 한 사실적시로 인하여 원고 ○○건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원고 주장과 같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가 없거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망 이△△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원고 주장 중 ①항 보도 부분)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

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텔레비전 방송 보도나 신문 기사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 또는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 또는 신문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 방식 또는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및 기사 내용이 시청자 또는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과연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에서 망 이△△이 친일파였다는 내용의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는 「친일파는 살아있다」라는 피디(PD)수첩의 연중 기획 프로그램의 3부로서, 전체 보도의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일제 강점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심의하면서 그 진상규명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을 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법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알리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는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서의 위 특별법의 표결처리과정, 진주시 명석면에서 면사 편찬과정에서 친일파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내용, 망 김○○, 이△△의 비석과 관련된 내용, 친일파가 3·1 문화상을 수상하는 등으로 독립유공자로 둔갑하였다는 내용 등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망 김○○, 이△△과 관련한 부분은 전체 50여 분의 분량 중 10분가량을 차지하는데, 망 이△△의 구체적인 친일행위를 언급하거나 망 이△△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 이△△이 친일파라고 암시하는 간접적이거나 우회적 표현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부분 보도의 취지는 항일 운동경력이 없음에도 후손에 의하여 마치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가공되었다는 것을 알리는데에 있는 것이지, 친일파가 독립유공자로 뒤바뀌어진 사례의 하나로 들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 보도 뒤에 따로 구체적으로 친일혐의자가 독립유공자로 뒤바뀌어진 사례를 보도하고 있는 점, ④ 이 부분 보도 뒤에 이어지는 주진행자의 ‘조○○ 피디(PD)! 지금 이런 식으로 친일파가, 심지어는 친일파가 애국지사로 둔갑하는 사례, 적지 않죠?’라는 말에서 지칭하는 친일파는, 뒤에 이어지는 친일 혐의자로서 3·1 문화상을 수상한 김○○ 등을 지

칭하는 것이지 망 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점(‘이런 식으로’라는 부분은 독립유공자가 아님에도 독립유공자로 왜곡되는 사례로서 보도한 망 김○○, 이△△ 관련 부분의 보도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나, 주진행자는 곧이어 ‘심지어 친일파가’라고 다시 한 번 말함으로써 앞부분 ‘친일파’가 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김○○ 등을 가리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④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 직후, 원고○○건설의 홈페이지에 이○○를 친일파의 후손으로 단정적으로 비방하는 전자우편도 있으나, 상당수의 전자우편은 원고 이○○가 조부를 독립유공자로 조작한 것을 비난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는 망 이△△이 친일파라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의 시청자로 하여금 망 이△△이 친일파라는 전체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원고 이○○ 및 망 이○○ 형제가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의 건립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원고들 주장 ②항 보도 부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 중 담당 연출자가 “김○○ 선생을 밀어내고 휘호비와 생애비의 앞면을 차지한 ○○ 이△△은 누구일까? ○○건설 명예회장인 이○○ 전 의원과 은평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전 ○○○구청장 이○○ 형제의 조부인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화면으로 망 이○○가 연단에 서서 연설하는 장면을 보여 준 부분은, 망 이△△의 후손들이 다름 아닌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이자 국회의원을 역임한 원고 이○○와 대전광역시 ○구청장을 역임한 망 이○○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한편,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인 원고 이○○와 망 이○○가 조부인 망 이△△을 독립운동가로 내세운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원고 이○○와 망 이○○ 형제가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을 추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 문화방송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의 주된 취지는 특별법 제정에 즈음하여 독립운동경력을 허위로 지어내거나 친일혐의자가 독립유공자인 양 왜곡되는 현실을 보여주고자 하는데에 있다. 이는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원고 이○○와 망 이○○가 망 이△△의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에 직·간접적으

로 관여하였다는 보도가 진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피고 문화방송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위 보도 내용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원고 이○○의 “거기다 비를 세우는데 우리 할아버지 것도 같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것은 대전시의회에서 승인사항이고 시예산으로 하는 거다. 혹시 모자라면 경주 김씨들이나 ○구청에 얘기하겠노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서 내가 끄덕거리 준 것 뿐이에요”라는 회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 이○○는 사전에 이△△의 휘호비 및 생애비가 건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동의해 주었던 점, ② 이어 조○○ 연출자가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의 사업 주체를 대전애국지사 송모회라고 설명하였고, 대전애국지사 송모회 이○○ 회장은 인터뷰에서 ‘내 판단에는 한 사람의 와비를 하는 것보다도 전에 내가 조사해 봤던 사항을 해서 ...’라고 밝히고 있어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의 사업주체는 원고 이○○나 망 이○○가 아니라 대전애국지사 송모회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1987.경부터 원고 이○○와 알고 지내면서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해주는 등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이△△의 자손들인 원고 이○○와 망 이○○가 자신들의 조부인 망 이△△의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진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피고 문화방송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원고들이 광복회 몰래 이△△의 공적비를 건립하였다는 부분(원고 주장 ③항 부분)

(가)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 중 조○○ 연출자가 “김○○ 선생의 묘비가 바뀔 무렵 대전시 효평동에 독립운동가 이△△ 선생의 공적비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지방 신문은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는데 대전시장과 ○구청장, 원고 이○○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바로 다음에, 원고 이○○ : “이○○씨가 세운 겁니다”, 조○○ 연출자 : “그 분 혼자서요? 거기 송모회 ...”, 원고 이○○ : “그 사람이 혼자 세운 게 아니라, ‘광복군회 회장 이○○’ 이라고 써 넣으니까 광복군회에서 세운거죠, 그 분들이 내 신세를 많이 진 건 사실이니까 알아서 세운 겁니다. 내가 돈 한 푼도 낸 일이 없습니다”라고 원고 이○○와 조○○ 연출자가 회견한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조○○ 연출자가 ‘공적비를 설립할 당시 광복회 대전충남지부회 회원들은 공적비를 세운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라고 언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 문화방송의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실제 이△△ 공적비는 광복회가 건립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대전·충청지부가 건립을 주도했고, 그 비문 하단에도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대전·충남지부장 애국지사 이○○ 세움”이라고 새겨져 있었으며 이○○은 위 공적비 설립 이후 광복회 대전·충남지부장을 역임하였던 점, ② 조○○ 연출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한 근거는 바로 이어 보도되는 바와 같이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사무국장의 ‘제일 처음에 이 비가 제막될 적에 가야될 사람이 광복회 사람 아닙니까? 어느 단체보다도 우리가 먼저 가야 되지 않나요? 제막식 할 때 그래도 우리 지부장님이나 누가 가서서, 여기 제막식 할 때 이렇게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그것이,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내 집일인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라는 회견을 근거로 위와 같이 보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보도는 진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피고 문화방송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5) 원고들이 각종 비문에 망 김○○과 이△△의 관계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부분(원고 주장 중 ④항 보도부분)

(가)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 중 조○○ 연출자가 “대전 ○구 ○○동에 있는 김○○ 선생의 묘비에는 이△△의 독립운동 사실이 기록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의 묘비는 지난 97년 승모회 이○○ 회장이 보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수한 비에는 김○○ 선생이 이△△의 문하에서 10년간 공부를 했고, 3·1 운동 당시 대전 지역의 주동자인 스승 이△△의 독려로 동참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원래의 비문에는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어 장손도 모르게 비문이 바뀐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점,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김○○ 교수가 망 김○○이 향리에서 10년간 한학을 수학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회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 김○○이 망 이△△과 함께 10년 정도의 기간동안 한학을 수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 공적비의 비문에 망 김○○이 망 이△△의 문하에서 10년간 공부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바와 같이 ① 망 김○○과 망 이△△의 관계에 대하여 망 김○○이 망 이△△으로부터 한학을 배웠다거나 또는 망 이△△과 망 김○○이 같은 스승 문하에서 함께 한학을 수학하였다거나, 또는 망 이△△의 독려로 망 김○○이 3·1운동에 참여하였다는 등으로 두 인물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실증적인 역사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②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충남대 교수 김○○와의 회견을 근거로 위와 같이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보도는 진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피고 문화방송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6) 소결론

원고 ○○건설의 주장은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에는 원고 ○○건설에 관한 사실의

적시가 없다.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 중 원고 주장 ①항 보도 부분은 원고 주장과 같은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가 없다. 원고 주장 ②, ③, ④항 보도 부분은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 문화방송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오마이뉴스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건설, 이○○의 주장

(가) 피고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하여, ① 망 이△△이 반일 항일투쟁을 한 사실은 명백하고 또한 망 김○○이 망 이△△과 향리에서 함께 한학을 수학하고 이후 3·1 만세운동에도 함께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아울러 위 원고들이 마치 각종 비문에 망 김○○과 이△△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하여 망 이△△의 반일 항일투쟁 경력을 조작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②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과 관련하여, i) 대전광역시 지원금은 “애국지사 휘호비 및 생애비”를 건립하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망 김○○의 휘호비 및 생애비를 건립한다는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아 망 이△△의 휘호비 및 생애비를 건립하였다고 보도하였고, ii)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는 앞, 뒷면의 구분이 없고, 대로에서 보면 망 김○○ 선생의 휘호 부분이 전면임에도, 망 이△△의 글씨가 앞면에 새겨져 있다고 보도하였고, iii) 대전애국지사 송모회 회장인 이○○는 망 김○○의 휘호비 외에 흉상까지 건립해 주기로 약속한 바가 없음에도, 이○○가 위와 같은 약속을 어겼다고 보도하였으며, ③ 대전 ○구 ○○동에 있는 망 김○○의 묘소 옆에 설치된 공적비는 1997.경 대전애국지사 송모회 회장 이○○와 망 김○○의 손자 김○○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 것임에도, 원고 이○○ 등과 이○○가 망 김○○의 후손들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비문의 내용을 몰래 바꿨다고 보도하였다.

(나)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로 인하여 망 이△△, 원고 ○○건설, 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원고 ○○건설은 위 각 보도로 인하여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원고 이○○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아울러 망 이△△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하여 망 이△△의 상속인 대표로서 손해배상을 구한다.

(다) 원고들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보도를 구한다.

(2) 피고 오마이뉴스의 주장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또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 오마이뉴스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원고 ○○건설은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 ○○건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의 내용은 명예회장이인 원고 이○○와 망 이○○와 그 조부인 망 이△△과 관련한 것이고, 원고 이○○를 소개하면서 ○○건설의 명예회장으로 직책을 밝히고 있을 뿐 원고 ○○건설에 관한 아무런 사실의 적시가 없다. 원고 이○○를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으로 소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로 인하여 원고 ○○건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가 없거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망 이△△이 반일 항일투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종 비문에 망 김○○, 이△△의 관계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반일 항일투쟁 경력을 조작하였다는 부분(원고들 주장 ① 부분)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 중 김○○이 ‘모든 독립운동에 관한 문헌자료를 다 뒤져보아도 이△△에 대한 이름은 물론 조부(김○○)와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후손들이 조직적 의도적으로 가계를 미화하기 위해 조부의 이름을 판 것’이라고 회견한 내용, 독립운동사와 김○○ 선생의 항일운동을 연구해 온 김○○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가 “이△△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게 없다. 아직까지 김○○ 선생과 이△△씨가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는 어떠한 자료도 나오지 않았고 확인된 바 없다”고 회견한 내용 및 국가보훈처에서도 이△△이 독립운동가라는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서훈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였다는 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망 이△△과 망 김○○ 사이에 함께 한학을 공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고, 나아가 망 이△△이 반일 항일투쟁을 하였다는 자료 역시 부족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나) 피고 오마이뉴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는 독립운동경력을 가공하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① 망 김○○은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항일운동가인데, 망 김○○이 망 이△△으로부터 한학을 배웠다거나 망 이△△과 망 김○○이 같은 스승 문하에서 함께 한학을 수학하였다거나, 또는 망 이△△의 독려로 망 김○○이 3·1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등으로 두 인물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실증적인 역사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1990년대 이전까지는 망 이△△의 항일운동경력이 알려진 바 없었는데, 1990년 이후부터 몇몇 신문에서 이△△을 독립유공자로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1994. 3.경부터 3·1 운동 기념비 등 망 이△△의 항일운동경력을 담은 비석이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경 다시 설치한 김○○ 공적비에 비로소 망 김○○과 이△△의 관계가 기재된 점, ③ 이○○는 1999.경 국가보훈처에 망 이△△이 1919. 3. 16. 김○○ 등과 함께 대전의 인동시장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등 항일운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증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한 점, ④ 이○○가 망 이△△을 독립유공자로 서훈신청하면서 제출한 공적조사서를 고증한 교수들 중 김○○, 차○○은 원고 이○○ 등이 피고 문화방송의 피디(PD)수첩 연출자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망 이△△에 대하여 전혀 몰랐으나 이○○ 등이 망 이△△과 관련된 신문들을 보여 주기에 망 이△△이 독립운동가인 줄 알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위 공적조사서 조사자인 이○○는 망 이△△이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이미 사망한 이름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및 피고 오마이뉴스는 망 김○○의 후손 김○○, 이○○, 독립운동사 전공 국사학자인 김○○를 취재하고,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 오마이뉴스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과 관련한 부분

(가) 먼저 위 i)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전애국지사승모회는 2000. 11.경 대전광역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를 건립한 사실, 그런데 대전애국지사승모회는 당초 대전광역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그 지원사업 실행계획서에 “대전출신 애국지사 김○○ 선생 휘호 및 생애비 건립”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망 이△△의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을 사업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기사는 진실에 부합한다.

(나) 다음으로 위 ii)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는 앞, 뒷면으로 제작하여 건립되었는데, 공원 큰 길에서는 앞면에 망 김○○의 휘호

비와 생애비가, 각 그 뒷면에는 망 이△△의 휘호비와 생애비가 보이지만 그 거리가 50m 정도 떨어져 있어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없고, 공원 내에 나 있는 작은 길에서 바라보면 불과 2-3m 정도 떨어진 앞면에 망 이△△의 휘호비와 생애비가, 각 그 뒷면에 망 김○○의 휘호비와 생애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망 김○○의 휘호비와 생애비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공원 내에 나 있는 작은 길을 벗어나 잔디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하다.

휘호비 및 생애비의 내용을 읽어 볼 수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면 망 이△△의 휘호비와 생애비가 전면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기사는 진실에 부합한다.

(다) 마지막으로 위 iii)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 중 “현장에는 대전애국지사승모회 이○○ 회장이 동행했다. 이 회장은 김○○ 선생의 공적을 기릴 조형물(흉상)을 세운다며 김씨 가족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가는 등 유적비 건립 사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그런데 유적비에서 있던 은평공원에 도착한 김씨 부부는 고개를 가우뚱해야만 했다. 현장에 김○○ 선생의 흉상이 없었기 때문이다”는 부분은 대전애국지사승모회 이○○ 회장이 망 김○○의 휘호비 이외에 흉상까지 건립해 주기로 약속하고 김○○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사는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의 건립을 주도한 이○○와 관련된 보도 내용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 이○○의 명예가 훼손될 수는 없다.

(4) 김○○ 공적비와 관련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 중 “공적비 비문이 누군가에 의해 통째로 뒤바뀌어 있었다. 원래 있던 대전시장이 세운 원판 비문을 떼어 내고 전혀 다른 내용의 비문을 새겨 붙여 놓은 것”이라는 부분, “새 비문에는 이△△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다. 김씨의 조부가 후곡 의병 모집장 이△△ 선생 문하에서 10년을 수학하고 그 분의 주선으로 휘문의숙을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부분, “이와 관련 대전애국지사승모회 이 회장은 지난 1997년, 비문 받침대를 높이면서, 나와 김○○의 남동생 김○○(2000. 사망)의 합의로 교체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사의 보도 내용의 주된 취지는 공적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변경되었다는 것일 뿐, 대전애국지사승모회 회장 이○○가 유족들 몰래 비문을 교체하였다는 보도 내용이라거나 나아가 원고 이○○가 위와 같이 몰래 비문을 교체하는 데에 적극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소결론

원고 ○○건설의 주장은 이 사건 피디(PD)수첩 보도에는 원고 ○○건설에 관한 사실의 적시가 없다.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 중 원고 주장 ①항 보도 및 원고 주장 ②항 보도 중 i), ii)은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 오마이뉴스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원고 주장 ②항 보도 중 iii) 및 ③항 보도 부분은 원고 이○○와 관련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의 적시가 없다.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문화방송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건설, 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 고연금

판사 손삼락

□

올바른 취재원 확보 및 진술의 진실성 여부 확인에 대한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아니한 채 선불리 단정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보도했을 경우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자 판결 (2005가합114032)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강○○ 외 17인이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소속 취재부장,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 방송사가 지난 2005년 10월 23일 21시 「뉴스데스크 - 카메라 출동」 프로그

램 ‘경찰이 카드깡’ 제하의 보도에서 ○○경찰청의 연금매장에서 오래전부터 범죄조직과 연결되어 조직적으로 카드깡이 행해져왔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경찰청은 연금매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고, 이렇게 받은 수수료는 경찰청의 최고위층에 전달되어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기관이 명예훼손적 보도를 하면서 집단명칭을 사용하는,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그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보도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 사건 보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경찰청 ○○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고, ○○경찰청 ○○과 소속 경찰관인 원고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들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여 일반 시청자들에게 경찰관인 원고들이 경찰청사내의 ○○○매점에서 행해지는 카드깡이라는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이로 인하여 형성된 불법적인 자금을 활동비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일응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보도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경찰청 ○○○매점에서 행해지는 카드깡에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지적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기획, 제작되었고, 그 내용 또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그러나 피고 김○○은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음성변조를 통해 한 사람에게 대한 인터뷰 내용을 현직 경찰관 및 카드깡 의뢰자에 대한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고 부당한 시도를 하였으며, 또한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인터뷰 상대가 현직 경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피고에게 이 사건 보도의 핵심내용을 제보한 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매점 및 ○○○기금의 운영구조상 수익금을 비밀리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 김○○은 이 사건 보도를 위한 취재를 진행하면서 ‘○○라인’의 운영자인 장○○와 카드깡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장○○를 상대로 일정 부분 유도신문을 한 끝에 자신의 생각에 일부 부합되는 얘기를 듣게 되자 더 이상 그 진술의 진실성 여부의 확인 및 물적 증거 확보에 대

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선불리 단정적으로 판단한 점 등 여러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114032 손해배상(기)

원 고 : 강 ○ ○ 외 17인

원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 강 준, 오 양 호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최 문 순

2. 최 문 순

3. 이 ○ ○

4. 김 ○ ○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정 영 일

변론종결 : 2006. 10. 11.

판결선고 : 2006. 11. 1.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3.부터 2006.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 이라고 한다) 연금매장인 ○○○매점을 관리, 감독하는 ○○과 소속 경찰관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 이라고 한다)은 방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 엠비씨(MBC)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최문순은 피고 문화방송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이○○은 별지 기재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 라고 한다)를 담당한 취재부장이고, 피고 김○○은 이 사건 보도를 직접 취재한 기자이다.

나. 보도내용

피고들은 2005. 10. 23. 저녁 9시 뉴스 프로그램 'MBC 뉴스데스크'의 카메라 출동코너에서 '경찰이 카드깡'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보도를 하였는데, 원고들이 문제삼는 보도의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청의 연금매장에서 오래전부터 종로의 범죄조직과 연결되어 조직적으로 카드깡이 행해져왔고, ○○경찰청은 이러한 카드깡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이하 '제1 보도' 라고 한다).

(2) ○○경찰청은 카드깡으로 인한 매출액이 포함된 연금매장의 총 매출액 중 6%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러한 수수료는 ○○경찰청 ○○과에서 직접 관리해 왔는데, 그 중 일부가 ○○경찰청의 최고위층에 전달되어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다(이하 '제2 보도' 라고 한다).

(3) 위 사실이 피고들의 취재를 통해서 밝혀지자 ○○경찰청은 연금매장의 입점운영자들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이를 은폐하고자 하였다(이하 '제3 보도' 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특정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도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에서는 원고들의 실명이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경찰청의 연금매장에서 카드깡이 관례적으로 행해져왔고, ○○경찰청은 카드깡을 통한 매출액에 대하여도 6%의 수수료를 공제하였는데 이러한 수수료를 ○○경찰청 ○○과에서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가 최고위층에 전달되어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됨으로써, 공제된 수수료를 관리하고 그 중 일부를 최고위층에 전달하여 활동비로 사용하게 하는 주체로 ○○경찰청 ○○과가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위와 같이 언론기관이 명예훼손적 보도를 하면서 집단명칭을 사용하는,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그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보도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갑 2, 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찰청의 ○○과에서 위 수수료의 관리뿐만 아니라 카드깡이 행해진 연금매장(이하 ‘○○매점’이라고 한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매점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과장이 위원장, ○○계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경찰청 ○○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고, ○○경찰청 ○○과 소속 경찰관인 원고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들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나아가 이 사건 보도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카드깡을 단속해야 할 원고들이 자신의 감독, 관리 하에 있는 ○○○매점에서 카드깡이 관례적,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고, 카드깡의 매출액에서 공제한 수수료의 일부를 최고위층에 전달하여 활동비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여 일반 시청자들에게 경찰관인 원고들이 경찰청사내의 ○○○매점에서 행해지는 카드깡이라는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이로 인하여 형성된 불법적인 자금을 활동비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일응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위법성 조각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에서 방송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김○○의 취재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기준

언론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그것이 공적인 인물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1) 공익성

이 사건 보도는 ○○경찰청 ○○○매점에서 행해지는 카드깡에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지적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기획, 제작되었고, 그 내용 또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된다.

(2) 진실성 및 상당성

(가) 제1 보도

위 보도는 ○○○매점에서 종로의 범죄조직과 연결되어 조직적으로 카드깡이 행해져 왔고, ○○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7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2 내지 7호증, 갑 25호증의 1 내지 8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보도직후 ○○경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매점의 입점업체 중에서 카드깡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하였는데, 그 결과 ○○○매점의 입점업체 중에서 '종합가전○○마트'란 상호로 전자제품대리점을 운영하던 원○○가 2004. 5.경부터 카드깡을 해온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5. 12. 23.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4. 5.경 이□□가 가로수 등 지역정보신문에 속칭 '카드깡'에 관한 광고를 하여 물품구매없이 현금을 유통하려는 희망자들을 모집하면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전자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대출신청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공모하고, 2005. 5. 3. ○○○매점 내 위 ○○마트에서 이□□의 소개로 온 윤○○에게 전자제품을 1,600,000원 상당 판매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1,392,000원을 그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2004. 5. 1.부터 2005. 10. 11.까지 84회에 걸쳐 물품판매 없이 합계 166,92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이다.”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05. 12. 17. 확정되었다.

2) ○○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 이외에도 카드깡을 하기에 적합한 업체로 보이는 '□□마트(가전제품 판매업)', '○○라인(귀금속 소매업)'의 운영자 최○○, 장○○를 조사하는 등 입체업체들의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혐의점을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3) 피고 김○○은 ○○○매점에서 카드깡을 통하여 현금을 융통받은 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그로부터 카드깡 관련사실을 전해들은 후 이를 토대로 원○○로부터 카드깡사실을 확인하고, 원○○에게 요청하여 원○○에게 카드깡 의뢰자를 소개해 준 이□□의 종로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원○○와 관련된 카드깡업자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4) 피고 김○○은 취재를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경찰관을 소개받아 위 경찰관과 인터뷰를 위해 통화하였는데, 자신은 직접 인터뷰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적절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고, 이와 같은 경위로 소개받은 사람이 경찰관이라고 밝히면서 전화 인터뷰에 응함에 따라, 위 인터뷰를 통하여 이 사건 보도에서 '이모 씨'와 '경찰직원'의 발언으로 방송된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피고 김○○은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위 사람의 신분 확인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이 사건 보도에서는 피고들이 인터뷰에 응한 사람을 '경찰직원'과 '이모 씨'로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위 발언내용이 동일인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는 음성변조를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 보이려 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는 동일한 사람이었다(피고들은 위와 같이 전화로 인터뷰에 응한 사람의 신분이 현직 경찰관이라고 계속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29호증의 3, 갑 3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사람이 인터뷰에 응하면서 사용한 단어들만 감안하면 현직경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경찰청 별관 지하 1층에 위치한 ○○○매점에는 ○○○매점운영위원장과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사업자 등록을 마친 41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었는데, 위 입점업체 이외에도 매점의 관리를 위해 ○○과 소속 경찰관(당시에는 원고 유○○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명과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고용된 기능직 직원 1명이 상주하는 관리 사무실과 입점업체가 판매한 물품의 결제를 전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고용된 직원이 근무하는 카운터가 있었다. ○○○매점의 입점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입점업체의 운영자들이 그 물품가격을 적어 카운터에 있는 결제담당 직원에게 보내게 되고, 결제담당 직원이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이를 제시하고 입점업체로부터 물품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위로 판매된 물품대금은 전액 ○○경찰청매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경찰청은 위 금액 중 3~6%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입점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위 인정사실과 이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카드깡이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조직적으로 ○○○매점의 여러 입점업체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져왔다면 피고 김○○은 원 ○○ 이외에 다른 입점업체 운영자의 카드깡 사실 및 그로부터 카드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입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의 점포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로 ○○○매점의 결제과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물품의 인도가 가게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물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관리실에 상주하는 경찰관 및 직원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음성변조를 통해 한 사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현직경찰관 및 카드깡 의뢰자에 대한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고 부당한 시도를 한 점, ④ 피고들 주장과 달리 인터뷰 상대가 현직경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피고 김○○에게 이 사건 보도의 핵심내용을 제보한 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1 보도에서 적시된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2 보도

위 보도는 ○○경찰청은 카드깡으로 인한 매출액이 포함된 ○○○매점의 총 매출액 중 6%를 수수료로 받아왔고, 그 중 일부가 ○○경찰청의 최고위층의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을 6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2, 10, 12호증, 갑 19호증의 1, 2, 3, 갑 20 내지 23호증, 갑 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점의 설립 목적은 경찰직원들의 편리 및 복리증진에 있으며, ○○○매점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구내식당의 지원금 또는 ○○○금고의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실, ○○○금고의 기금으로는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 등 ○○경찰의 사기와 복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의

결한 사항 등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매점의 운영수익금은 2003. 7. 경까지 ○○○금고로 전환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3. 7.경 이후에는 운영수익금이 ○○○금고로 전환되지 않고, 위 ○○경찰청매점 명의의 예금계좌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에게 이 사건 보도의 핵심내용을 제보한 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및 ○○○매점 및 ○○○기금의 운영구조상 수익금을 비밀리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하고 있는 활동비는 사기업에서 종종 문제되고 있는 기업총수의 비자금과 비슷한 의미로서 그 취득 및 사용에 불법적인 성격을 띠는 자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제2 보도에서 적시된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3 보도

위 보도는 피고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청이 ○○○매점의 입점운영자들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이를 은폐하고자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보도내용은 피고 김○○이 ○○○매점의 운영자인 장○○로부터 들은 내용(을 6호증의 2)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나, 갑 11호증, 갑 25호증의 22, 24, 25호증, 을 6호증의 2, 을 7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은 이 사건 보도가 나가기 직전인 2005. 10. 21. ○○○매점에서 카드깡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여러 입점업체를 돌면서 카드깡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탐문하였으나, 방문한 입점업체마다 카드깡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은 사실, 이후 '○○라인'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장○○에게 카드깡을 요청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장○○ 역시 카드깡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 김○○이 계속적으로 카드깡을 요청하면서 장○○가 위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 김○○과 대화를 나눌 무렵에 장○○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보도가 있었던 당일 새벽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장○○는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김○○의 카드깡 요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공문이 내려왔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이 엇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김○○과 장○○가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일정부분 피고 김○○의 유도신문에 의해 위 발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② 장○○ 이외에 다른 입점업체의 운영자들과 나눈 대화에서는 ○○경찰청이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의심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 김○○은 장○○를 상대로 일정부분 유도신문을 한 끝에 자신의 생각에 일부 부합되는 얘기를 듣게 되자 더 이상 그 진술의 진실성 여부의 확인 및 물적 증거의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선불리 단정적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3 보도에서 적시된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피고 문화방송의 '카메라출동'이라는 코너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보도로서 시청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유익한 보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청 ○○○매점에 입점한 일부 운영자가 카드깡을 하고 있다는 확인된 사실의 보도에서 더 나아가 신분조차 확인되지 않은 제보자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하여 의혹제기 차원을 벗어나 경찰직원이라고 표시된 사람과의 인터뷰 형식을 빌려서 한 이 사건 보도는 진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 중 카드깡 관련 일부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밝혀진 점, ○○○매점의 입점업체에서 ○○○경찰청과 무관하게 카드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경찰청 청사내의 연금매장이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들 및 피고들의 사회적 신분 및 그 영향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각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일인 2005. 10.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1.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김윤정

판사 노태홍

□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는 인물에 대한 비판은 그 지위를 감안하여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8.자 판결 (2005가합90013)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산하 게임제 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의 위원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영등위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인용 오락게임기의 이용불가 및 등급분류 등을 사실상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며, 위 등급분류 결정에 따라 게임개발업체의 흥망이 좌우되고, 새로운 형태의 성인용 오락게임기의 출시에 따른 사회적 과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그 보수 역시 수당의 형식으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중 일부에서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제시하였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잘못이 없지 아니하나 그로 인하여 그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비판은 그 지위를 감안할 때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의 작성, 게재로 인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 할 것”이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 한겨레신문사와 소속 기자가 지난 2005년 7월 6일자 『성인오락기 허가 ‘로비’ 악취』, 『업체대표 ‘심의위원’ 변신 뒤 심의통과율 20% 쑥』, 『똑같이 파친코

베껴도... '화면' 으론 되고 '실물' 론 안 된다?』 제하의 기사 및 『'복마전' 게임기 심의, 진상부터 밝혀라』 제하의 사설, 2005년 7월 7일자 『'영등위 복마전' 내부폭로 잇따라』 및 『성인 오락기 제작업자들 반응 - "로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적어도 2천 만 원은 써야"』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8일자 『영등위 덕에 '붓물 터진' 성인오락실 풍경』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9일자 『영등위 오락기 복마전 심의의혹 죄송』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11일자 『사행성 오락기 단속 '무정부 상태』 제하의 기사 등에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 중 일부는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일부는 게임개발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업무를 행함에 있어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를 하는 등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90013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 1. 공 ○ ○

2. 음 ○ ○

피 고 : 1.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정 태 기

2. 양 ○ ○

3. 이 ○ ○

위 피고들 주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안 식, 조 범 석

변 론 종 결 : 2006. 10. 11.

판 결 선 고 : 2006. 11. 8.

주 문 :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들 및 선정자 백 ○ ○, 나 ○ ○, 주 ○ ○, 권 ○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이하 '선정자들' 이라고만

한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이 판결 송달일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제1면 우측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24급 고딕활자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에 관하여'라는 소제목은 4호 고딕활자로 제목 바로 아래에,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청구인의 성명은 18급 명조활자로 위 소제목 아래에 게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공○○, 음○○과 선정자 백○○, 나○○, 주○○은 2005. 7.경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라고 한다) 산하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들이었고, 선정자 권○○은 2002. 6. 5.부터 2005. 6. 4.까지 영등위 위원이었는데, 그 중 2004. 6. 17.부터 2004. 12. 31.까지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다.

(2)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한겨레신문사'라고 한다)는 일간신문 한겨레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양○○, 이○○은 2005. 7. 6.부터 2005. 7. 18.까지 한겨레신문과 인터넷한겨레에 게재된 별지 (2) 내지 (12) 기재 각 기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취재, 작성한 기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기사 부분

(1) 주씨(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이름 전부를 밝히지 않고 성만을 기재하였으나, 소위원회 위원의 수가 7명에 불과하여 이러한 기재만으로도 기사에서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편의상 실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한다)는 2001. 9. 성인게임 업체인 주식회사 ○○어뮤즈먼트(이하 '○○어뮤즈먼트' 라고 한다)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위원으로 위촉되기 불과 몇 달 전까지 위 업체의 경영진이였다. ○○어뮤즈먼트는 주○○이 위원이 된 이후 53%이던 제품의 심의통과율이 71%까지 올라갔다. 영등위는 주○○이 영국 게임 잡지의 한국사무소장이라고 공개했으나, 해당 잡지사는 이를 부인했다. 주○○은 게임산업개발원의 추천으로 위원이 되었다고 밝혔지만, 게임산업개발원은 이를 부인했다(이하 '주○○ 관련기사' 라고 한다).

(2) 공○○은 2003년 말부터 활동을 하지 않아 사무실과 연락처조차 없는 '유령시민단체'인 한국○○○감시단 대표자격으로 위촉됐다. 공○○은 부산 성인오락실업계의 대부격인 인물과 가까운 친척인데, 이 친척은 최근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한 게임기 제작업자와 동업을 하고 있다. 공○○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국○○○감시단 이사진에 부산 최대 성인오락실을 하는 김 아무개 씨를 참여시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이하 '공○○ 관련기사' 라고 한다).

(3) 소위원회에서 처남과 매형관계에 있는 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원 선정의 난맥상도 드러났다(이하 '백○○ 관련기사' 라고 한다. 위 기사 및 출처물, 사후조치 관련기사는 인터넷한겨레에만 게재된 기사이지만, 그 작성자가 피고 양○○, 이○○이어서 위 기사들도 판단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4) 영등위관계자는 '권○○ 전 위원장이 영등위 내부 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을 초 물러나면서 나○○을 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말했다.(이하 '권○○ 및 나○○ 관련기사' 라고 한다).

(5) 성인게임기 업계에서는 “영등위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주도하고 있는 일부 위원들이 특정업체를 비호하거나 견제하는 편파심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인게임기 제작업체 관계자들은 “영등위가 사행성을 높인 특정업체들의 기계만 제때 심의를 내주는 바람에 해당 업체들만 대박이 터지고 있다.”며 “업체관계자 가운데 영등위 심의의 공정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 로비줄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성인게임기 제작업자는 “로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일부 심의위원과 게임업체들의 맹렬한 로비 시도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인 한 심

의위원은 “솔직히 제작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적이 있다. 다른 위원도 그 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기간이 업체별로 며칠에서 3~4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의혹의 대상이다. 한 소위원 관계자는 “주 위원 등 일부 위원들을 제외한 상당수 위원들은 출석률이 50% 안팎에 머물렀고, 그나마도 위원들이 지각을 하거나 일찍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영등위 소위원회가 사행성이 큰 성인오락실용 게임기들에 대해 등급결정을 내주고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경찰의 사행성 오락기 단속이 무정부상태에 빠졌다. 경마업계관계자는 “새로운 게임기들은 바뀐 법규를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견줘, 법규 개정 이전에 심의가 난 게임기들에 대해선 단속이나 등급분류 취소 등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문제가 드러난 게임기의 경우 등급분류 취소처분을 하거나 실제 운영되는 내용으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등위의 발 빠른 사후조치가 아쉽다.”고 말했다(이하 ‘심의업무 관련기사’라고 한다).

다.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의 내용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 중 일부는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일부는 게임개발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업무를 행함에 있어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를 하는 등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위법성 조각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양○○, 이○○의 취재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기준

(1) 언론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그것이 공적인 인물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

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의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인바,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3) 나아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영등위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인용 오락게임기의 이용불가 및 등급분류 등을 사실상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며, 위 등급분류 결정에 따라 게임개발업체의 흥망이 좌우되고, 새로운 형태의 성인용 오락게임기의 출시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원고들이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그 보수 역시 수당의 형식으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판단

(1) 공공성

이 사건 기사는 소위원회 위원의 위촉과정 및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에서 일련의 기획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2) 진실성, 상당성

(가) 주○○ 관련기사

① ○○어뮤즈먼트 관련부분

주○○이 게임기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4. 26.경 설립된 영상게임기 제조업체인 ○○어뮤즈먼트의 대표이사로서 2001. 4. 16.부터 2002. 1. 9.까지 재직 한 사실, 위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2004. 1. 29.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어뮤즈먼트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은 2004. 6.경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등급분류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직후인 2005. 7.경

소위원직을 사퇴한 사실, ○○어뮤즈먼트가 소위원회에 등급분류신청을 한 게임물 중 최종적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게임물은 2002년에 13건의 신청에 6건(통과율:45%), 2003년에 8건의 신청에 5건(통과율:62%), 2004년에 15건의 신청에 10건(통과율:68%), 2005년에 3건의 신청에 3건(통과율:100%)으로, 이를 2004. 6.경을 기준으로 그 전후로 나누어 보면 그 이전에는(2001.~2004. 5.) 24건의 신청에 12건이 심의를 통과하였는데(통과율:50%), 그 이후에는(2004. 6.~2005.) 17건의 신청에 13건이 심의를 통과한(통과율:76%)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주○○은 위원으로 위촉되기 불과 몇 달 전까지 성인게임 업체 경영인이었다'는 부분(선정자 주○○이 ○○어뮤즈먼트의 대표이사를 사직한 이후에 위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위 기사는 선정자 주○○이 2004. 1.경까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과 선정자 주○○이 2004. 6.경부터 소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어뮤즈먼트가 신청한 게임물의 심의통과율이 20% 정도 상승했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어뮤즈먼트는 2003. 4.경 이후에 1년여의 기간 동안 심의를 통과한 게임물이 전혀 없다가 선정자 주○○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등급분류 업무를 시작한 2004. 6.경에 2개의 게임물이 심의를 통과하는 등 2004. 말까지 약 6개월여 기간 동안 그 이전의 기간에 비하여 훨씬 많은 13건의 심의신청을 하였고, 그 중 9건이 심의통과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이 위 심의통과율의 상승이 전반적인 게임물에 대한 심의통과율의 상승에만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위촉경위 관련부분

갑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게임'이라는 잡지의 2005년 6월호의 기고자 명단에 선정자 주○○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잡지사의 편집자는 선정자 주○○이라는 기고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실, 위 잡지사의 기고자는 자기 나라의 게임시장에 대한 정보 및 동향 등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잡지사에게 기고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 잡지사는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지사를 하나 두고 있을 뿐 한국에는 지사를 두고 있지 않은 사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주○○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문화관광부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명의를 빌려 위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

(나) 공○○ 관련기사

① 한국○○○감시단 관련부분

을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직 전인 2005. 7.경 원고 공○○이 운영하던 한국○○○감시단의 초기 홈페이지 화면상단에는 2003. 2.경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에 대한 추모 배너가 여전히 올라와 있었으며, 당시 위 홈페이지 상에서 가장 최근의 대외 보도자료가 2003. 3.경 게재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 한국○○○감시단의 사무실은 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화번호 역시 결번이었고,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에는 한국○○○감시단의 이사로 등재된 차○○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공○○이 운영하던 한국○○○감시단을 '2003년 말부터 활동을 하지 않아 사무실과 연락처조차 없는 유령시민단체'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 공○○이 위 감시단의 대표자격으로 위 축된 사실과 관련하여 위 감시단의 실체가 불분명한 사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의혹제기는 정당하며 그 내용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한다.

② 친척 관련부분

갑 2호증, 을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영등위내에서는 원고 공○○이 부산에서 □□우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김□□과 친척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고, 위 김□□이 한국○○○감시단의 이사로도 등재된 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공○○의 친척이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이 부분 기사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공○○과 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두 사람 사이의 정확한 신분관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부분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부분 기사가 게재된 직후 원고 공○○의 친척이 성인오락실 업주인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였다).

(다) 백○○ 관련기사

선정자 백○○의 임기는 원래 2005. 6. 14.까지였는데, 위원인선 등의 사정으로 2005. 7. 14.까지 연장되었고, 그 때 선정자 백○○의 처남인 박○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기사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인척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시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통하여 소위원회 구성의 폐쇄성 등 위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서 그 내용 역시 진실에

부합한다.

(라) 권○○ 및 나○○ 관련기사

① 선정자 권○○ 사퇴부분

증인 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권○○가 2004. 12.경 당시 영등위 감사였던 조○○이 성인경마게임 업체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 부분 기사에서 ‘권○○ 전 위원장은 영등위 내부 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라고 위 사실을 표현하였는데, 위 관련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선정자 권○○가 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도 그 후임 위원의 위촉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 바, 위 기사에서의 책임이 ‘도의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표현을 권○○ 위원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 기사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위촉 관련부분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권○○가 위원장에서 물러난 이후에 나○○이 2005. 1. 14. 사단법인 ○○○○실천운동의 추천으로 권○○의 후임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권○○ 역시 위 단체의 추천으로 영등위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권○○가 위 단체를 통하여 나○○의 위촉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이 부분 기사는 앞에서 본 백○○ 관련기사에서 본 바와 같이 위원의 위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서, 그 표현이 일부 단정적이라고 해서 이러한 잘못만으로 이 부분 기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심의업무 관련기사

① 로비 관련부분

증인 조□□,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인게임기 업계에서는 게임물이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사실, 소위원회 위원인 김○은 부산게임장 백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에 내려갈 기회에 성인게임기 업체 대표로부터 1차례 술접대를 받았었고, 다른 일부 위원들도 접대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고들에게 확인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게임 업체들의 위원들에 대한 로비시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나, 이 부분 기사의 주된 내용이 성인게임기 업체 대표 및 소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부분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자의적 심사 및 심의기간

을 6호증의 기재, 증인 조□□의 증언, 이 법원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는 ‘뉴○○’이라는 게임명으로 2004. 12. 31. 게임물을 접수한 후 소위원회로부터 보완처분을 받자 이러한 보완사항을 이행한 후 같은 게임물을 ‘뉴○○’ 이외에 ‘탑○○’(최초 접수일은 2005. 3. 25.)과 ‘핫○○’(최초 접수일은 2005. 4. 11.)이라는 게임명으로 재차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소위원회의 보완처분을 이행한 위 게임물 중 ‘뉴○○’은 2005. 5. 24. 등급분류를 통과하였는데, ‘뉴○○’과 동일하게 보완처분을 이행한 ‘핫○○’과 ‘탑○○’은 위 ‘뉴○○’의 등급분류 통과 당시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PCB 기판을 제거한 후 사진을 제출하라는 등의 이유로 2005. 5. 26. 각 보완처분을 받은 끝에 2005. 6. 16. 최종적으로 등급분류를 각 통과한 사실, 영등위는 2005. 4. 7. 파친코모사 게임은 등급분류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공지하였는데, 일본식 파친코를 전자식으로 모사한 게임물과 기계식으로 모사한 게임물에 있어서 위 공지사실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채 등급분류 결정이 이루어져 왔던 사실, 규정된 소위원회의 심의기간은 7일인데 비하여 소위원회의 평균 심의기간은 30일이고, 최장 심의기간은 122일에 이르는 사실, 소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 심의물이 과다하여 보완처리를 적시에 할 수 없는(서류에는 ‘내용검토’라고 기재됨)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위원회의 심의가 그 업무의 과다 및 전문성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일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심의기간 역시 규정에 비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데다가 내용검토라는 형태로 보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다.

③ 출석률 관련부분

이 법원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 및 선정자들(선정자 권○○ 제외)의 2005. 1.부터 2005. 7.까지의 출석률은 낮게는 65.2%에서 높게는 97%에 이르러 평균 76.6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13호증의 기재, 증인 강○○,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일정을 이

유로 늦게 오거나 먼저 가는 위원들이 있어 그 날 심의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위원들의 서명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제 특정 게임물의 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이 회의록에는 참석한 것으로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사실, 소위원회 심의 도중에 먼저 가는 위원들로 인하여 회의의 정족수가 미달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는 사실, 소위원회의 유○○ 위원은 피고들에게 “소위원회 위원들은 현업이 따로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일정에 따라 회의 시작 후에 오거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먼저 가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평균 출석률은 50%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확인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76.68%는 회의록 등 서류상의 기재 기준을 기준으로 한 출석률로 보이는데, 위 출석률이 심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게임물에 대한 정확한 출석률에 대한 수치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원들이 회의록에 일괄적으로 서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출석률은 위 수치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는 사실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 위원과의 대화내용을 기초로 위원들의 평균 출석률을 50% 정도라고 지적한 이 부분 기사는 위 수치가 일부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심의주도 관련부분

을 13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 위원은 피고들에게 소위원회의 등급분류심의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상호협의를 의한 방법으로 진행됨으로써 게임물 및 그 업계사정에 정통한 몇몇 위원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당시 게임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드물었던 점, 위원들이 한 심의기일에 처리해야 할 게임물의 수량이 상당히 과다하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그 결정에 필요한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위원회에서는 게임업계에 정통한 위원을 중심으로 등급분류심의를 행해질 수밖에 없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이 부분 기사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

⑤ 사후조치 관련부분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는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 유통, 시청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제12조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 사후관리업무를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의 3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등급분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 규정에 의하면, 게임물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영등위의 권한범위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설사 영등위의 내부적 업무 분장에 의하여 위 사후관리가 소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통과한 사행성이 큰 게임물에 대하여 영등위 또는 소위원회에게 그 등급분류취소 등의 사후조치를 촉구하는 이 부분 기사 내용이 피고들이 영등위내 소위원회의 정확한 업무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중 일부에서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제시하였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잘못이 없지 아니하나 그로 인하여 그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비판은 그 지위를 감안할 때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의 작성, 게재로 인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한겨레신문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한 창 호

판 사 김 윤 정

판 사 노 태 흥

□

방송사는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한을 가지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 조치 없이 초상 등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초상권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9.자 판결 (2005가합18444)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백〇〇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의 외주제작사 '〇〇〇부' 소속 PD인 김〇〇이 제작해 피고 방송사를 통해 지난 2005년 10월 25일 방영한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남산의 두 얼굴'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얼굴 및 음성에 대한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방송되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당했으며, 원고를 기망해 폭주족으로 보이도록 허위로 연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방송사가 방송을 내보내기 전 허위작출 여부 확인과 초상권 침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피고 방송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주제작사 PD인 김〇〇에 대해 피고 방송사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그러나 피고방송사는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방송의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다고 할 것 인바, 피고가 아무런 조치나 확인 없이 원고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방송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그 촬영이 어느 방송에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알지 못했음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촬영사실을 알고도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초상의 사용 등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하고 “피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에 제작에 관한 모든 책임은 외주제작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은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 방송사의 초상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취재 중 허위사실 유도 여부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사 PD 김〇

○이 원고를 폭주족으로 보이도록 유도하였거나 다른 어떤 허위사실을 연출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18444 위자료

원 고 : 백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명 호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재 경

변론종결 : 2006. 10. 19.

판결선고 : 2006. 11. 9.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25.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불치병인 크론병(소장 등 내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 환자인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2~3회 야간에 남산 순환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RX-7’이라는 차량(스포츠카)을 운전하곤 하였다.

나. 피고는 ‘MBC TV’ 등을 통하여 방송업을 영위하는 방송사이고, 김○○은 피고의 외주제작사인 ‘○○○뷰’(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소속된 피디로 피고의 ‘아주 특별한 아침’이란 프로그램 중 ‘대한민국 25시’란 코너 출연자로 일했었다.

다. 김○○은 ‘남산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남산에서 밤에 일어나는 일들을 취재하기로 하고 2005. 10. 21. 23:00경 다른 피디 2명, 작가 1명 등과 함께 카메라 3대를 가지고 남산에

갔는데, 남산 안중근 기념관 부근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어느 방송사에 방송되는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 원고를 인터뷰하다가, 원고의 동의하에 6mm 카메라 1개를 들고 차에 탑승한 다음 계속 인터뷰하였다.

라. 김○○이 원고의 차량을 타고 순환도로를 한 바퀴 돌고 내린 다음 김○○과 동행했던 KBS의 방송작가 오○○도 원고의 차량을 탑승하여 다시 한 바퀴 돌았는데, 오○○가 내리면서 ‘차 머플러에서 불꽃이 튀면서 가는 것(속칭 백과이어)을 보여 달라’고 부탁하자 원고는 차량을 급가속하여 엔진 분당회전수(RPM)를 올림으로써 머플러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 피고는 2005. 10. 25. 08:00경부터 약 1시간 23초 동안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약 9분 25초 동안 ‘남산의 두 얼굴’(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이라는 주제로 방영하였고, 그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25분 37초부터 25분 59초까지 약 22초 동안 방송되었다.

바. 이 사건 방송 중 원고에 관한 주요 부분은, ① 원고가 남산 순환도로에서 큰 소리를 내고 차 머플러에서 불꽃을 튀기며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모습, ② 원고와의 인터뷰 내용, ③ 위 모습들 방영 직후, 어떤 시민과의 인터뷰 내용(원고가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며 경찰단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사. 이 사건 방송 중 원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방송되었고 음성도 변조되지 않았다.

아. 김○○은 이 사건 방송에 대해서 인터넷의 피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원고가 항의글을 올리자, 직접 원고를 만나 사과하겠다며 처음 만난 장소에서 사과를 받아달라는 글을 게시하고 5일 동안 남산에서 기다렸으나, 원고는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자.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 외에도 방송에 나온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항의글이 많이 올라오자 홈페이지 중 다시보기 항목에서 이 사건 방송을 삭제하고, 2005. 11. 1. 오전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 말미에 ‘자동차를 운전했던 운전자의 모습이 사실과 다르고 남산의 폭주족들과는 관련이 없으며, 부정적으로 비춰진 데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으로 사과방송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김○○이 취재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폭주족으로 보이도록 허위로 연출하였고, 원고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음성 변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김○○의 사용자로서 김○○의 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이 사건 방송을 내보내기 전 허위작출 여부 확인, 초상권 등 침해 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가 김○○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김○○이 원고를 기망하여 허위를 모습을 연출하거나 조작한 사실도 없으며, 취재내용이 허위로 작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는 초상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소외회사가 모든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촬영 화면 상 원고가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호의적으로 촬영에 응하고 있어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초상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존부

1) 김○○은 피고가 아닌 소외회사에 소속된 직원인바, 피고가 직접 김○○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김○○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는 할 수 없다.

2) 그러나, 피고는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방송의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아무런 조치나 확인 없이 원고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그대로 방송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 취재 중 허위사실 유도 여부

한편, 김○○이나 그 일행이 원고에게 과속할 것 등을 요구하여 폭주족으로 보이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김○○이 원고의 차량을 탑승한 것만으로는 원고를 폭주족으로 보이도록 유도하였거나 다른 어떤 허위사실을 연출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오○○가 원고에게 머물러볼곳이 나오도록 요구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평소 운전할 때에도 머물러볼곳이 나오곤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가지고 허위의 모습을 연출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허위사실 작출 또는 유도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 취재 당시 원고가 평소 운전하

던 속도, 방식으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초상 등 사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 존부

을 제3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김○○과 인터뷰함에 있어 카메라로 촬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김○○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터뷰와 촬영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촬영이 어느 방송에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알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촬영사실을 알고도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초상의 사용 등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동의받은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한 책임 면제 여부

한편,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소외회사가 제반 방송법규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작에 관한 모든 책임은 소외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내부적인 약정이 존재하고 또 위 (가)항과 같이 원고가 촬영사실을 알면서도 거부반응 없이 인터뷰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당연히 믿은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가 과속으로 굉음을 내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잘못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또는 김○○이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인 초상권 등 침해로 인한 범위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살펴보면, 원고도 김○○ 등의 인터뷰와 촬영 내용이 방송에 나올 것을 예상하였음에도(원고가 주장하는 오○○와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오○○가 원고에게 방송작가라고 고지하자 원고가 자신을 촬영한

것이 폭주족으로 방송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바 있다) 김○○ 등에게 초상 침해 등 방지를 위하여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방송이 포함된 프로그램인 ‘아주 특별한 아침’은 세태와 풍물을 보여주는 오전 시간대 프로그램으로서 시사성이나 고발성이 짙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방송 중 원고에 대한 방영 시간은 약 22초로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방송 후 피고가 그에 관한 다시보기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사과 및 정정방송을 내보낸 점, 직접 행위자인 김○○도 원고에게 사과하고 그 정신적 피해를 감하고자 노력하였고 원고도 그 사실을 인식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피고나 김○○이 이 사건 방송 전에 원고가 크론병에 걸려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 정도는 참작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상권 등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 행위일인 2005. 10.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이행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11.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원

판사 최두호

판사 강은주

□

**보도에서 원고를 지목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이
저하되었다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자 판결 (2005가단286190)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9단독 재판부(판사 김광태)는 전○○이 한국방송공사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지난 2005년 7월 7일 오전 8시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및 같은 날 저녁 8시 「뉴스타임」 프로그램 ‘MRSA 슈퍼박테리아의 병원 감염 위험’ 제하의 보도에서 “병원에 병을 고치러 갔다 오히려 세균에 감염되는 병원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 병원의 외관과 간판, 원고에 관한 기사가 담긴 신문 부분, 원고의 목소리 등을 원고의 동의 없이 녹취·촬영해 방송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은 주된 목적이 병원에서 매우 위험한 슈퍼박테리아가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공익성 및 진실이라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보도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병원의 부적절한 처치와 불량한 위생 상태로 말미암아 민○○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적시가 있다고 판단되고, 아침 방송에서도 흐릿하지만 원고 병원의 외관과 간판, 사무실, 원고에 관한 기사가 담긴 신문 부분, 원고의 목소리 및 원고의 얼굴과 상반신 등이 방영되고 피해 환자가 특정됨으로써 보도에서 원고를 지목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이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방송사와 나머지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원고의 얼굴이 방영된 시간, 그 전후의 방송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단286190 손해배상(기)

원 고 : 전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 형 근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2. 이 ○ ○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3. 최 ○ ○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4. 남 ○ ○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현 호, 이 정 선, 백 경 희

변론종결 : 2006. 10. 18.

판결선고 : 2006. 11. 29.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7.부터 2006.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7.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구 ○○동 소재 M의원 신경외과 원장으로서 척추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이다. 피고 한국방송공사(‘피고 방송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 방송의 실시와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며, 피고 이○○, 최○○은 피고 방송사 소속 직원으로서 다음 방송들을 취재·편집하여 보도한 사람이고, 피고 남○○은 외주제작사인 ○○○미디어의 PD로서 다음 방송들을 취재·제작하여 제공한 사람이다.

2005. 7. 6. 저녁 원고는 퇴근 후 피고 방송사에서 원고 병원에 와서 취재하면서 사무실 등을 촬영하고 환자들과 인터뷰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전화상으로 피고 방송사의 직원들과 통화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에서 취재하고자 하는 환자와의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잘못이 밝혀지면 배상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방송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데, 그 발언 중 일부가 다음 방송에 인용되었다.

피고 방송사는 2005. 7. 7. 오전 8시 KBS 2TV의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10분가량

‘MRSA 수퍼박테리아의 병원 감염위험’에 관하여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요지의 보도를 하였는데 그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이 3분가량 원고 병원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고, 여기에 사용된 원고 병원의 외관과 간판, 원고에 관한 기사가 담긴 신문 부분, 원고의 목소리는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녹취·촬영되어 방송된 것이다. 방송 후 원고가 피고 방송사에 항의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피고 방송사는 같은 날 저녁 8시 KBS 2TV의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다시 2분가량 같은 내용으로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요지의 보도를 하였는데 그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원고 병원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고, 이는 아침 방송 내용과 동일한 영상을 토대로 비슷한 내용을 방송하되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 다만 아침 방송에서는 클로즈업된 신문 기사의 원고 상반신이 노이즈 처리된 상태로 방송되었으나, 저녁 방송에서는 노이즈 처리를 제거하여 2 - 3초가량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방송하였다.

[인정 근거 : 다통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5, 을 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명예훼손 여부 판단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방송공사가 보도한 내용은 주된 목적이 병원에서 매우 위험한 수퍼박테리아가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만, 보도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병원의 부적절한 처치와 불량한 위생상태로 말미암아 민○○이 수퍼박테리아에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적시가 있다고 판단되고, 아침 방송에서도 흐릿하지만 원고 병원의 외관과 간판, 사무실, 원고에 관한 기사가 담긴 신문 부분, 원고의 목소리 등이 방영되고 피해 환자가 특정됨으로써 보도에서 원고를 지목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이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방송공사와 나머지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항변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가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보도내용이 진실이고,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

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가) 공익성

위 보도의 주된 목적이 병원에서 매우 위험한 수퍼박테리아가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 보도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나) 진실성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민○○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3. 23. 선고 2004가합○○○○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법원은 '전○○의 1차 수술 과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MRSA 감염이 발생하였고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을 해태하여 MRSA 감염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으며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MRSA 감염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민○○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수술과정에서 아무리 철저한 소독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MRSA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이 수술 당시 수술 도구나 수술실의 청결상태, 수술 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도 없는 이상 1차 수술 당시 무균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단지 원고가 2차 수술 이후 민○○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고를 전원 시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원고로 하여금 장애에 이르게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MRSA 감염 및 치료 경위, 치료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 병원의 부적절한 처치와 불량한 위생상태로 말미암아 민○○이 수퍼박테리아에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당성

위 증거에 의하면 민○○이 수술 직전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등 건강하여 MRSA에 감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원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MRSA 감염으로 밝혀진 점, MRSA는 최근에는 병원 밖에서 획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지만 원래 장기간의 입원, 광범위한 항생제의 사용, 항생제의 장기간 사용, 중환자실 입원 등의 경우 그 감염 위험성이 높고 감염된 환자와 접촉하게 되는 의료인이나 환자 보호자

의 손 등을 통하여 다른 환자에게 전파되기 쉽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감염되는 주요 병원균으로 지목받고 있는 점, 유사한 내용의 방송이 잇따르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들이 비슷한 내용을 취재하여 '뉴스 따라잡기'라는 포맷으로 방송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 병원에서 원고 등 의료진의 잘못과 불량한 위생상태로 인해 환자가 MRSA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피고들의 보도는 설령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초상권침해 여부 판단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공중에게 공표하거나,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피고들이 2005. 7. 7. 오전 8시 KBS 2TV의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여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은 후, 아침 방송에서 흐릿한 원고 병원의 외관과 간판, 사무실, 원고에 관한 기사가 담긴 신문 부분, 원고의 목소리를 방영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같은 날 저녁 8시 KBS 2TV의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같은 내용을 요약 방송하면서는 신문에 게재된 원고의 얼굴과 상반신마저 그대로 드러나게 방영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불리하게 할 것이 명백하여 원고의 반대가 당연히 예상되며 아침 방송에 대해서도 항의를 받았고 이를 드러나게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원고의 초상을 방송화면에 그대로 드러나게 방영한 것은 별개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목적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공익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를 갖고 보도를 함으로써 비록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지지 아니하더라도 이와 같은 보도를 하면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보도에서 원고의 얼굴이 방영된 시간, 그 전후의 방송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5. 7. 7.부터 판결선고일인

2006. 11. 2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 사 김 광 태

〈별 지〉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자 판결 (2006가합36290)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박○○ 외 3인이 주식회사 김종학 프로덕션과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들은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연주 장면에 대한 촬영을 승낙한 것인 바,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은 연주장면을 촬영하면서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 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했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이 촬영된 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라며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침해예방 및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서는 “드라마 내용 전개에 있어 이 사건 연주장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고, 현재 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에서 이 사건 연주장면은 삭제됐으며 수출용 마스터 테이프에서도 연주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통해 볼 때,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그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이 제작해 피고 문화방송에 공급, 방영하는 드라마 「넌 어느 별에서 왔니」 2006년 4월 4일 8회 방영분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영분에서는 원고들의 얼굴이 공개돼 초상권이 침해됐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고들의 모습이 삭제되지 아니하고는 직접 혹은 제3자를 시켜 재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다시보기 다운로드 제공, 비디오 및 디비디 제작·반포·판매·공여, 드라마의 반포·판매·공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침해예방 및 간접강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36290 초상권침해금지등

원 고 : 1. 박 ○ ○

2. 김 ○ ○

3. 배 ○ ○

4. 한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선 호

피 고 : 1. 주식회사 김종학 프로덕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18 금산빌딩5층

대표이사 김 종 학

2.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김 문 희

변론종결 : 2006. 11. 8.

판결선고 : 2006. 11. 29.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5.부터 2006.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서 2006. 4. 4. 방영한 ‘넌 어느별에서 왔니’의 제8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직접 혹은 제3자를 시켜서 재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다시보기 다운로드 제공, 비디오 및 디비디 제작·반포·판매·공여, 드라마의 반포·판매·공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하여 재방송, 드라마의 반포·판매·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각 5억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다시보기 다운로드 제공, 비디오 및 디비디 제작·반포·판매·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각 1억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박○○은 첼로, 원고 김○○, 한○○는 바이올린, 원고 배○○은 비올라 연주자로서 국내외 각종 음악 콩쿨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등 현대음악 연주부분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김종학 프로덕션(이하 ‘김종학 프로덕션’이라고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한다)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를 외주제작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 문화방송은 방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 엠비씨(MBC)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의 촬영 및 방영

(1) 드라마의 제작과 방영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은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라는 제목의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 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 문화방송에게 공급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드라마를 2006. 3.경부터 2006. 5.경까지 16회에 걸쳐 방영하였는데, 2006. 4. 4. 방영된 이 사건 드라마의 8회분(이하 ‘이 사건 방송’ 이라고 한다)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이 촬영되어 방영되었다.

(2) 촬영 및 방영 경위

①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의 섭외담당자인 손○○는 2006. 4. 2. ○○아트홀에서 작곡가 이○○의 작곡발표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작곡발표회의 기획사인 ○○예술기획사의 대표인 박○○에게 촬영협조 요청을 하였다.

② 박○○는 이○○으로부터 드라마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손○○에게 ○○아트홀측으로부터 별도의 장소사용 허락을 받아 장소사용료를 지불하고, 제작담당자들은 입장권을 정식으로 구입하여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촬영을 허락하였다.

③ 그런데, 작곡발표회 당일인 2006. 4. 2. 원고들이 이○○을 통하여 박○○에게 자신들의 연주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을 전하자, 박○○는 이러한 사실을 손○○에게 알렸고, 이에 손○○가 박○○, 이○○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연주회 장면이 촬영될 수 있었다.

④ 위와 같이 촬영된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약 7초 정도의 짧은 분량이지만, 원고들의 주위사람들이라면 위 장면에 등장한 연주자들이 원고들임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하 ‘이 사건 연주장면’ 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이 사건 방송은 2006. 4. 4. 피고 문화방송의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 엠비씨를 통하여 방송되었다.

다. 원고들의 이의제기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 직후 이 사건 연주장면을 본 지인들로부터 원고들의 연주장면이 드라마에 방영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 문화방송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아이엠비씨(이하 ‘아이엠비씨’ 라고 한다)가 인터넷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드라마 다시보기’를 통하여 위 방영사실을 확인한 다음, 2006. 4. 6.과 2006. 4.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방송의 재방영 및 인터넷상 ‘드라마 다시보기’ 다운로드의 제공금지 등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2) 이에 피고 문화방송은 2006. 4. 7. 아이엠비씨에게 요청하여 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에서 이 사건 연주 장면을 삭제하였고, 2006. 4. 9. 텔레비전에서도 위 장면을 삭제하여 이 사건 방송을 재방영하였으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엠비씨드라마넷(이하 ‘엠비씨드라마넷’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위 장면의 삭제요청을 지체함으로써 엠비씨드라마넷은 자체 케이블방송국을 통하여 2006. 4. 10., 4. 15., 4. 16. 이 사건 연주 장면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방송을 재방영하였다.

(3) 피고 문화방송은 2006. 4. 25. 엠비씨드라마넷에게 이 사건 연주장면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엠비씨프로덕션(피고 문화방송에서 방영된 드라마의 해외판매를 위한 수출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하는 회사이다)에게도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수출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함에 있어 이 사건 연주장면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의 섭외담당자인 손○○가 박○○, 이○○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촬영을 허락하였는데,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이 촬영한 이 사건 연주장면에서는 원고들의 얼굴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바,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은 원고들과의 약속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얼굴이 포함된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잘못이 있는 이 사건 연주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연주장면의 촬영 및 방영으로 인한 원고들의 초상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연주장면에 대한 촬영을 승낙한 것인바,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은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하면서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얼굴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이 촬영된 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의 표

현대리 주장은 박○○, 이○○을 통하여 이 사건 연주장면의 촬영과 관련하여 전적인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 이○○ 역시 원고들의 조건부 촬영의사를 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연주장면의 분량이 약 7초 정도로 그리 길지 않으며 그 배경음악은 원고들이 작곡발표회에서 실제로 연주한 곳이 아닌 점, 이 사건 방송 후 원고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 문화방송은 즉시 아이엠비씨에게 요청하여 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에서 이 사건 연주 장면을 삭제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방송을 재방영하면서도 이 사건 연주장면을 삭제한 점,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이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함에 있어 원고들의 유명세에 편승하여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는 등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전개를 감안하면,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은 단지 연주회 장면이 필요했던 것일 뿐, 원고들과 같이 연주자로서 어느 정도 실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연주회 장면이나 그러한 연주자들의 연주음악이 필요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침해예방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전개상 이 사건 연주장면은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연주장면을 다시 복구하여 재방영을 하거나 비디오 등을 제작할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예방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연주장면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직접 혹은 제3자를 시켜서 이 사건 방송의 재방영, 인터넷을 통한 ‘드라마 다시보기’ 다운로드에의 제공, 비디오 및 디비디 등의 제작, 반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야(원고들은,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도 구하고 있다)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예방청구가 인정되려면 침해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침해의 가능성이 큰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을 4, 5, 8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전개에 있어 이 사건 연주장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 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에서 이 사건 연주장면은 이미 삭제되었고, 이 사건 드라마의 수출을 위하여 제작된 수출용 마스터 테이프에서도 이 사건 연주장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그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삭제된 이 사건 연주장면을 기술적

으로 쉽게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4. 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김윤정

판사 노태홍

□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못했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 된 것이 아니라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0.자 판결 (2006가단98871)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 재판부(김태병 판사)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주식회사 일요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가 지난 2006년 1월 4일자 711호 1면 「이해찬 총리 - 거물브로커 윤○○, 부적절한 골프, 단독추적」 제하의 기사 및 2면, 3면 「'구속직전까지 함께 라운딩 즐겼다」 제하의 기사 등을 통해 국무총리인 원고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거물브로커 윤○○과 함께

골프를 쳤고, 원고가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후에는 윤○○이 총리공관을 수차례 드나 든 것으로 밝혀져 원고와의 관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은 국무총리로서 직무수행상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원고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된 윤○○과 국무총리 취임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고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국무총리가 범법자의 배후인물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관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윤○○의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함께 쳤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로서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고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이 사건 기사 중 윤○○이 원고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총리공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측의 반론을 게재하지는 하였으나,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이 사건 기사를 읽는 독자에게 브로커 윤○○과 국무총리인 원고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기사에 원고 측의 반론이 게재된 바 있으므로 위자료 외에 달리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은 필요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단98871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해 찬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영 태

피 고 :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신 상 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정 원, 박 영 주

변론종결 : 2006. 10. 26.

판결선고 : 2006. 11. 30.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4.부터 200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지 '일요신문'의 제2면 좌측 상단부분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부분을 고딕체 30호 활자로, 내용은 명조체 10호 활자로 게재하라. 만약 피고가 위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공지의 사실이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4. 6. 30.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취임하였다가 2006. 3. 15. 사임한 국회의원이고, 피고는 '일요신문'이라는 제호로 주 1회 종합주간지를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이며, 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2005. 11. 21. 구속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2. 27.경 발행된 2006. 1. 4.자 일요신문 711호 1면에 큰 활자로 「이해찬 총리 - 거물브로커 윤○○, 부적절한 골프, 단독추적」이라는 제목과 그 보다 조금 작은 활자로 「구속 직전까지 함께 라운딩했다」는 부제 및 그 보다 더 작은 활자로 「윤씨 측근 6명 · 골프장관계자 증언 '한 달에 한번 골... 총리공관에도 드나들어', 이총리 측 '의원시절 몇 번

쳤을 뿐 사실무근'이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2면에서 3면에 걸쳐 기사 상단에 큰 활자로 「'구속직전까지 함께 라운딩 즐겼다」는 문구와 기사 중단에 그보다 작으나 본문보다는 큰 활자로 「'한두 달에 한번 골프, 수시로 안부전화...청와대 첩보 후에도 만나', '윤씨 측근들 골프장 관계장 증언 ... 취임 후 총리공관도 드나들어」라는 문구와 「총리실 '의원시절 몇 번 골프친 것 외에 모두 사실무근' 반박」이라는 문구를 게재하면서, 국무총리인 원고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거물브로커 윤○○과 윤○○이 2005. 11. 21. 구속되기 전까지 함께 골프를 쳤고, 윤○○이 원고가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후 총리공관을 수차례 드나 들은 것으로 밝혀져 원고와 윤○○의 관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다. 피고가 보도한 이 사건 기사는, 「윤○○의 최측근 인사는 '윤○○이 원고와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재미있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지도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다.'고 밝혔고, 「윤○○의 주변 인사들은 원고와 윤○○이 주로 수도권 Y, N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1~2달에 한 번 정도 골프를 치는 관계였고 수시로 안부전화를 나누는 사이라고 증언하였으며, 「N골프장의 관계자가 '윤○○이 우리 골프장에 자주 오는 고객이어서 얼굴을 알고 있다. 원고와 함께 가끔 우리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치곤했다. 주로 주말에 왔던 것 같은데 10월경에 한번인가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하였고, 「'원고가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후 윤○○이 총리공관에도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증언도 있으며, 한 인사는 '윤○○이 총리공관을 자기 집처럼 드나든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밝혔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기사 1면과 3면의 원고 측의 사실무근 주장 문구 외에 이 사건 기사의 말미에, 「원고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무총리실의 공보수석은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까지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알기론 국회의원 시절에 몇 번 골프를 친 일은 있다. 그것도 총리께서 다른 사람들하고 골프를 치는데 그 사람이 끼어서 치는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2001~2002년 정도였던 것 같다. 하지만 총리 취임 이후에는 사적으로 만나서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고 밝혔고, 「'총리 취임 이후 윤○○이 전화를 하여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아서 연결시키지 않았다. 총리공관에서 만났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다」며 '다만 골프장 등에서 우연히 만났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후 주요 일간지들과 인터넷 언론들은 위 보도를 인용하여 원고가 윤○○의 배후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후속보도를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 원고 측의 반론을 게재하지는 하였으나,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이 사건 기사를 읽는 독자에게 국무총리인 원고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브로커 윤○○과 윤○○이 구속되기 직전까지 골프를 함께 치고, 국무총리 취임 이후 총리공관에서 윤○○을 수차례 만남으로써, 국무총리인 원고가 범법자인 윤○○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윤○○, 황○○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사내용의 진실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국무총리로서 직무수행상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원고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된 윤○○과 국무총리 취임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고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국무총리가 범법자의 배후인물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관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국무총리 취임 후 윤○○과 함께 골프를 쳤다거나 윤○○이 총리공관을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를 취재한 피고 소속 기자인 한○○은 윤○○이 구속된 후 2005. 12.경 윤○○의 측근인물들인 홍○○, 홍□□, 최○○으로부터 원고가 최근까지 윤○○과 함께 골프를 쳤고, 원고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윤○○이 총리공관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2005. 12. 12. 피고의 사회부장에게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보고하자 골프장 관계자에 대한 보강취재를 지시하여 2005. 12. 22.경 ○○골프장의 관계자로부터 원고가 2006. 10월 말 경 윤○○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전의 진술자들과 내용이 일치하므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을 제 1호증, 을 제 4호증의 1, 2, 을 제 7호증, 을 제 8호증의 1 내지 3, 을 제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한○○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소속 기자인 한○○은 윤○○이 구속된 후 2005. 12.경 윤○○의 측근인물로서 윤○○의 비서역할을 하던 홍○○로부터 윤○○이 원고와 가깝게 지내고 최근까지 ○○골프장과 ○○○골프장 등지에서 골프를 함께 치는 사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무렵 역시 윤○○의 측근인물로서 윤○○과 돈거래가 있던 홍□□로부터 윤○○이 원고와 알고 지내면서 최근까지 자주 만나서 골프를 함께 쳤으며, 원고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몇 번 듣고 윤○○에게 친한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기분이 좋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며칠 후 역시 윤○○의 측근인물로서 윤○○과 돈거래가 있던 최○○으로부터 원고가 윤○○과 최근까지 골프를 함께 쳤다는 말과 함께, '윤○○이 원고가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후 총리공관에 3차례 갔었고 난 화분을 들고 총리공관에 간 적도 있다는 얘기를 하였고, 총리공관에 들어갔더니 왼쪽 편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멋있더라, 응접실에 들어갔더니 응접실이 30~40명 정도가 한꺼번에 앉을 수 있고 탁자가 고풍스럽고 멋있더라' 라는 말을 하여 윤○○이 총리공관

에 간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 이에 한○○은 2005. 12. 12. 피고의 사회부
 장에게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보고하자 피고의 사회부장으로부터 원고의 지위와 기사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골프장 관계자에 대한 보강취재를 지시받은 사실, 한○○은 2005. 12.
 22.경 ○○골프장의 관계자로부터 ‘윤○○은 ○○골프장에 올 때마다 장관, 국회의원, 군
 장성들과 함께 오므로 ○○골프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원고가 골프장에 올 때는
 2~3일 전부터 경비가 달라지고 청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골프를 치러 온다
 고 들었던 말을 기억하며, 원고는 골프장에 올 때 2~3팀 정도를 꾸려서 오는데 2006. 10.
 말경에도 윤○○, 기업인들, 전직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기억한다’는 말
 을 들은 사실, 한○○은 이 사건 기사의 보도 수일 전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공보수석과 전화 통화하여 공보수석으로부터 원고는 국무총리 취임
 이후 윤○○과 골프를 치거나 만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골프장 관계자의
 진술내용이 윤○○의 측근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로 한 사
 실, 한○○은 윤○○이 원고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총리공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부분
 에 대하여는 윤○○의 측근인물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①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윤○○과 윤○○의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함께 쳤
 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한○○은 윤○○의 측근들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후 이를 기사
 화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사회부장으로부터 보강취재를 지시받고 기사화를 늦추어 ○○골프
 장의 관계자로부터 윤○○의 측근들로부터 들은 말과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듣게 되자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기사화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
 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고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
 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② 이 사
 건 기사 중 윤○○이 원고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총리공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한○○은 윤○○의 측근인 최○○으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들은 말 외에는 달리 확인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기사화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
 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윤○○과 윤○○의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함께 쳤다는 부
 분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

나, 이 사건 기사 중 윤○○이 원고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총리공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당시 원고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어 그 사적활동도 대중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점, 피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된 윤○○이 원고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수차례 총리공관을 드나들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를 읽는 독자에게 원고가 범법자인 윤○○과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원고의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도록 한 점, 피고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후 주요 일간지들과 인터넷 언론들이 위 보도를 인용하여 원고가 윤○○의 배후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후속보도를 한 점과 함께, 이 사건 기사의 활자 크기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원고와 윤○○이 원고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함께 골프를 쳤다는 부분이 주된 내용이고 윤○○이 원고의 국무총리 취임 이후 총리공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도되어 독자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끈 점,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 측의 반론도 함께 게재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전제 하에 위자료 외에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기사에 원고 측의 반론이 게재된 바 있으므로 위자료 외에 달리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병

□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6. 12. 6.자 판결 (2005나68532)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일명 '684 부대' 훈련병의 유가족들이 영화 '실미도' 공동제작사인 시네마서비스와 한맥영화,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이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상업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인물의 재창조나 이야기의 구성에 있어 작가와 감독의 상상에 의한 각색이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각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하고, 또한 일반적인 관객으로서도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하며 영화를 관람하므로 영화의 모든 내용이 반드시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역사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망인이나 그 유가족의 인격권보다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는 창작 내지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망인들을 포함한 훈련병들 전원에 대하여 살인범이나 사형수 또는 사회의 낙오자들로 표현한 것은, 망인들 또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역사적 사실의 각색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밖에 없는 상업영화에 있어서 영화 제작자에게 국가기관이나 언론기관이 행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충분한 사실 확인 작업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망인들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그들과 극중 배역을 연관지을만한 직접적인 묘사를 하지는 않은 점,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훈련병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역사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게 된다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창작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 내용 중 문제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에게는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작·감독해 2003년 12월 24일 개봉한 영화 ‘실미도’에서 망인들을 살인범 또는 사형수로서 어차피 사형에 처해질 신분으로 사형을 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북파 공작원의 길을 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묘사하고, 망인들을 포함한 684부대 훈련병들이 수회에 걸쳐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을 표현하여 망인들이 마치 용공주의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으며, 영화의 시작자막, 영화포스터, 영화광고 및 공식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영화가 32년을 숨겨온 진실을 밝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그대로 믿게 함으로써 이 사건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 및 금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 내용 중 문제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에게는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나68532 손해배상(기) 등

원고, 항소인 : 김○○ 외 5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이 상 익, 박 태 영

피고,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시네마서비스

서울 중구 주자동 43-1, 5층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23
대표이사 김 인 수

2. 주식회사 한맥영화

서울 중구 주자동 43-1 흥국빌딩 3층
대표이사 김 형 준

3. 강 우 석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이 일 우, 표 종 록, 박 세 진, 이 진 수, 황 휘 건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9. 선고 2004가합102346 판결

변론종결 : 2006. 10. 11.

판결선고 : 2006. 12. 6.

주 문 :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별지 2. 영화의 표시 기재 “실미도”에 등장하는 공군 제 2325부대 209파견대, 일명 684부대 훈련병들이 살인범 또는 사형수라고 오인하거나 용공주의자라고 오인할 수 있는 별지 3. 장면 기재 장면, 대사 및 자막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를 상영하거나, 비디오테이프, 디브이디 디스크 및 인터넷 영상물 등으로 제작하여 제3자에게 인도, 임대,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 외 58인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별지 2. 영화의 표시 기재 “실미도”에 등장하는 공군 제

2325부대 209과전대, 일명 684부대 훈련병들이 살인범 또는 사형수라고 오인하거나 용공주의자라고 오인할 수 있는 별지 3. 장면 기재 장면, 대사 및 자막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를 상영하거나, 비디오테이프, 디브이디 디스크 및 인터넷 영상물 등으로 제작하여 제3자에게 인도, 임대,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외 58인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 갑 제4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68. 4.경 창설된 공군 제2325부대 209과전대, 일명 684부대(이하 '684부대'라 한다)의 훈련병이었던 망 김○○, 김○○, 김○○, 박○○, 이○○, 장○○, 정○○, 임○○, 김○○, 윤○○, 전○, 이○○ 등 12명(이하 위 12명을 합하여 '이 사건 망인들'이라 한다)의 유가족들이고(원고들과 이 사건 망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는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시네마서비스(2004. 6. 1. 주식회사 플레너스로부터 법인 분할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한맥영화는 별지 2. 영화의 표시 기재 "실미도"(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공동제작사이며, 피고 강우석은 이 사건 영화의 감독이다.

나.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의 무장 남파공작원 31명이 1968. 1. 21. 청와대에 대한 기습공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우리 군인, 경찰관, 민간인 등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다음,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8. 4.경 북한의 주석공에 대한 기습공격을 비롯한 북파 공작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공군 소속 특수부대로 684부대를 창설하였는데, 그 당시 훈련병 31명(이하 '훈련병들'이라 한다)의 모집 및 부대 운영에는 정보기관이 관여하였다.

다. 684부대의 교육대장을 비롯한 담당 기간병들은 서해의 무인도인 실미도에 설치된 비밀훈련장에서 훈련병들을 외부와 격리하고 매우 강도 높은 특수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그 창설시점부터 1971. 8. 22.경까지 계속된 특수훈련과정에서 훈련병 1명은 훈련 도중 익사사고로 사망하였고, 훈련병 6명의 경우 탈출사건, 부녀자 강간사건 등에 관련하여 기간병들과 훈련병들에 의한 사형(私刑) 등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라. 단기간에 고도로 훈련된 북파 공작원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창설된 684부대의 훈련병들에 대하여 처음에는 상당한 보급물자가 지원되었으나, 그 후 중앙정보부장이 경질되고

남북관계가 변화하여 북한에 대한 기습공격의 필요성이 점점 약화됨에 따라서 684부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수준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고, 아울러 외부와 격리된 채 이루어지는 특수훈련이 3년 이상 지속되면서 부녀자 강간사건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훈련병들과 기간병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는 등 684부대가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자 훈련병 24명은 1971. 8. 23. 새벽에 잠을 자고 있던 기간병들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교육대장을 비롯한 기간병 18명을 살해한 다음 인천으로 상륙하였다. 그 후 훈련병들은 민간 버스 2대를 순차로 탈취하여 서울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군인 및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였고,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유한양행 사옥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한 다음 출동한 군인들과 대치하던 중, 훈련병들이 소지하고 있던 수류탄이 위 버스 안에서 폭발함으로써 그 대치상황이 종료되었다.

마. 위와 같은 실미도 탈출 및 서울 진입 과정에서 위 훈련병 24명 중 대부분이 총격전이나 수류탄 폭발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임○○, 김○○, 이△△, 김○○ 등 생존한 훈련병 4명은 군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위 임○○ 등 4명은 그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기간병들 살해사실을 시인하면서, 684부대에 지원하게 된 경위와 그 모집방식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재판부는 위 4명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 1972. 3. 10.경 이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바. 백○○는 위와 같이 684부대가 창설된 이후 해체될 때까지의 역사적 사실(이하 '실미도 사건'이라 한다)을 소재로 하여 1999년 '백○○ 장편소설 실미도'를 집필하였다(이하 '소설 실미도'라 한다). 이 사건 영화는 소설 실미도를 원작으로 하여 시나리오 작업을 거친 다음 이를 토대로 제작된 영화로서 2003. 4. 말경 촬영이 시작되어 2003. 12. 24. 개봉되었는데(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국내에서 1,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였고, 그 후 대만과 일본 등 외국 영화관에서 상영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2004. 7.경 이 사건 영화가 수록된 디브이디 세트와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작하여 현재까지 이를 판매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영화 제작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망인들이 전과 없는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단지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장래를 보장하겠다는 정보기관원들의 제의를 수용하여 스스로 훈련병으로 자원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영화에서 망인들이 마치 살인범 또는 사형수로서 어차피 사형에 처해질 신분으로 사형을 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북파 공작원의 길을 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묘사하고,

② 이 사건 망인들이 훈련기간 중 복한 군가인 적기가를 배우거나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화에서 망인들을 포함한 684부대 훈련병들이 수회에 걸쳐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을 표현하여 망인들이 마치 용공주의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으며, ③ 나아가 영화의 시작자막, 영화포스터, 영화광고 및 공식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영화가 32년을 숨겨온 진실을 밝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그대로 믿게 함으로써 이 사건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의 명예나 인격권을 훼손하였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영화에 등장하는 684부대 훈련병들이 살인범 또는 사형수라거나 용공주의자라고 오인하여 이 사건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의 명예나 인격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영화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 3. 장면 기재의 장면, 대사 및 자막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를 상영하거나 기타 영상물 등으로 제작하여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유족별로 위자료 1억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영화의 원작인 소설 실미도를 비롯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 참조하였던 자료들 대부분에 훈련병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으로 범죄자가 주류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 자세한 내용은 군기밀로 문혀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훈련병들이 순수한 민간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2) 이 사건 영화에서 훈련병들이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은 그들이 복파를 위해 철저히 훈련받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오히려 이 사건 영화에서 훈련병들의 전반적인 모습은 김일성을 암살하여 조국을 통일하려는 철저한 반공주의자, 애국주의자로 그려지고 있다.

(3)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영화 상영 이후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을 반영하여 영화의 시작자막을 수정하고 공식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4) 상업영화는 비록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기초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허구에 기초한 예술작품으로 보아야 하며, 실미도 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실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피고들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거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일반론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술의 자유는 창작소재, 창작형태 및 창작과정 등에 대한 임의로운 결정권을 포함한 예술창작활동의 자유와 창작한 예술작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것인데, 이러한 예술의 자유도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와 명예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영화는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감독을 비롯한 제작진들의 상상력에 의하여 가상적인 인물들이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를 영상화한 창작물로서 통상적으로는 허구임을 전제로 하지만, 관객의 흥미와 감동을 유발하기 위하여 때로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나 인물을 모델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모델이 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영화제작자 등을 상대로 하여 문제되는 장면의 삭제 등을 구할 수 있고, 그 모델이 된 사람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死後)에 망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왜곡 등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유가족이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하여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영화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관객이 보통의 주의로 영화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영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연결 방법, 영화의 등장인물과 그 특정인의 관계가 묘사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화 내용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보다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참조).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보면, 통상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

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지만,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화의 창작·표현에 있어서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의 보도에 있어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진실성의 담보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상업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인물의 재창조나 이야기의 구성에 있어 작가와 감독의 상상에 의한 각색이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각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하고, 또한 일반적인 관객으로서도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하며 영화를 관람하므로 영화의 모든 내용이 반드시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역사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망인이나 그 유가족의 인격권보다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는 창작 내지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증시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먼저 이 사건 영화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망인들을 살인범 또는 사형수 등으로 표현하였다는 부분과 용공주의자로 표현하였다는 부분 및 이 사건 영화의 시작자막 및 홍보 내용이 망인들 또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망인들 및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로 이유로 이 사건 영화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 3. 장면 기재의 장면, 대사 및 자막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를 상영하거나 기타 영상물 등으로 제작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영화가 망인들 또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1) 살인범 또는 사형수 등으로 표현하였다는 부분

(가) 위 부분이 망인들 또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영화에서 훈련병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 사건 망인들이 실제로 684부대의 훈련병이 된 경위가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이 사건 영화의 위 내용이 망인들 또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1) 훈련병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에 관한 구체적인 영화 내용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제5, 6호증이 이 사건 영화의 시나리오와 디브이디

디스크인데, 이하 이 사건 영화의 내용을 적시함에 있어서는 따로 증거를 거시하지 않기로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영화는 주인공인 강인찬(나중에 제3조 조장이 됨, 설경구 역)에 관하여 살인을 시도하다가 사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기다리던 중 교도소로 직접 찾아온 교육대장 최재현(안성기 역)에 의하여 훈련병으로 충원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주연급에 해당하는 한상필(나중에 제1조 조장이 됨, 정재영 역)에 관하여는 사형집행을 위하여 교수형 집행장에서 절차를 밟던 중 갑자기 그 사형집행절차가 중단되고 684부대에 입소하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였으며, 위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병들에 관해서는 그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고 있다.

단지 이 사건 영화의 여러 대목에서 훈련병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훈련병들이 실미도에 상륙한 직후에 교육대장 최재현이 단상에 올라가서 훈련병 전원에 대하여, ‘보다시피 난 군인이다. 너희는 사형수이거나 사회 밑바닥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살던 인간쓰레기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군복을 입는 순간 나와 너희의 목표는 하나가 된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과업을 함께 완수할 동지가 되는 것이다. 나와 여기 있는 기간병들은 너희가 자신의 생명과 국가의 명령을 지켜낼 수 있도록 훈련시킬 것이다. (중략) 각오가 된 자는 자기 손으로 군복을 입는다.’라고 연설하고, 이에 관하여 주연급 인물인 조근재(나중에 제2조 조장이 됨, 강신일 역)를 비롯한 다른 훈련병들이 체념한 듯이 군복을 입으면서 ‘돌아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갈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씨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백 번 옳은 소리지.’, ‘언제 안전장치 달고 사시미 뜨러 다녔냐.’라고 대응하고(상영시작 후 15분경), ② 훈련병 찬석(나중에 취사병이 됨, 강성진 역)이 훈련 도중에 다리를 다치고 나서 기간병 소대장인 조중사(허준호 역)로부터 치료를 위하여 퇴소할 것을 요구받자, 찬석은 ‘여기서 다시 감방으로 쫓겨 가서 오늘 매달리나 내일 매달리나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조중사님. (중략) 밥을 짓던 청소를 하든 변소청소도 제가 혼자 다 하겠습니다.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하겠습니다. 씨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애원하고, 그 옆에 있던 제2조 조장 조근재는 ‘중사님, 누군가 그런 일을 다 해주면 나머지는 훈련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능률도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좌중을 둘러보며) 다들 우에 생각하노?’라는 식으로 다른 훈련병들의 동의를 구하자, 그 곳에 있던 모든 훈련병들은 이구동성으로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갈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대응하였으며, 이에 조중사가 수락의 뜻을 비치자 다른 훈련병들은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야, 저 새끼, 그러면 산거야?’라고 이야기하고(상영시작 후 37분

경), ③ 교육대장 최재현이 김장군에게 ‘지금 684부대원들은 재소자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김장군이 ‘원래 다 재소자들 아닌가?’라고 답변하고, 이에 옆에 있던 오국장이 ‘김일성이 목 따오라고 사형수들 불러 모아놓고 비인간적인 교육을 자행하 다니... 하하... 거 외신이 알면 우리를 얼마나 야만적인 국가로 알겠습니까.’라고 호응하였으며(상영시작 후 1시간 13분경, 여기서 ‘사형수’라 언급된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684부대의 존속 여부가 논란이 되던 상황에서 오국장이 684부대의 존재를 부정하고 폄하하고자 하는 냉소적 의도에서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④ 기간병들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한 훈련병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던 기간병 소대장 박중사(이정현 역)가 훈련병들에게 ‘가, 가까이 오지마. (중략) 어차피 죽을 새끼들이었어. 너희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우리까지 죽을 수는 없었던 거야.’라고 이야기함에 대하여 한상필, 강인찬 등이 ‘우리가 왜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당신들 목숨 값이나 개같이 버터온 우리 목숨 값이 같은 것이라고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줘야.’이라고 대응하자, 위 박중사가 ‘어떻게 똑같아. 너희 같은 범죄자 출신들이랑 우리들이 어떻게 같아. 이름도 없는 새끼들이랑 우리가.’라고 대꾸하였다(상영시작 후 1시간 48분경, 여기서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언급된 부분은 훈련병들을 전부 사살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대사와 그 표현 방법, 영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영화 내용이 일반의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이 사건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영화에서 훈련병들의 모집을 실제로 주도하였고 이후에도 684부대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교육대장 최재현이 훈련병 전원에 대하여 연설하는 위 ①의 내용 중 ‘너희는 사형수이거나 사회 밑바닥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살던 인간쓰레기들이다’라는 표현이 훈련병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모집과정의 직접적으로 묘사된 2명이 모두 사형수로 설정된 것을 두고 바로 훈련병들 전원이 살인범이나 사형수로 묘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연급에 해당하는 위 2명이 684부대 훈련병으로 자원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함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며, 이러한 점은 위 ②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처지로 간접적으로 묘사된 찬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영화에서 훈련병들을 살인범 또는 사형수로서 사형을 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복과 공작원의 길을 택한 것으로만 표현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들 이외에도 사회에서 소외된 낙오자들, 즉 사회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한 채 뚜렷한 희망이나 목표 없이 지내다가 극단적인 돌파구를

통해서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이와 달리 중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집방식과 사형수 또는 무기수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모집방식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영화에서 훈련병들이 후자의 방식에 의한 모집 대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아래에서 부가적으로 실시하는 이유에 의하면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2) 훈련병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7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에서는 이 사건 영화의 상영 이후 2005. 1. 11.까지 훈련병들에 대한 신원조사 작업과 아울러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조회 등을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망인들 중 ① 김○○의 경우 1967. 7.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② 김○○의 경우 1964. 4. 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65. 4.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67. 9.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③ 전○의 경우 1959. 3. 27. 인천지방법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다음, 196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61.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각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④ 나머지 훈련병 9명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망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병들 중 2005. 1. 11.까지 국방부에 의하여 구체적 신원이 확인된 다른 훈련병들에 관해서도 684부대에 입소하기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실미도 사건으로 인하여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던 훈련병 4명 중 임○○의 경우 군 수사기관에서 1967. 5.경 절도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684부대에 자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김○○, 이△△, 김○○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권투체육관에 다니거나 가출하여 생활하거나 곡예단 단원으로 일하던 중 모집책에 의해서 지원입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검토

훈련병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에 관한 내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의 사실이

라고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사실의 묘사에 해당한다.

위 2)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망인들의 경우 사형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없고, 달리 사회의 낙오자로서 극단적인 삶의 상황에 내몰릴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이 사건 망인들이 형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684부대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 북파 공작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금전적 보상과 장래의 보장을 비롯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겠다는 정보기관의 제의를 수용하여 스스로 훈련병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망인들을 포함한 훈련병들 전원에 대하여 살인범이나 사형수 또는 사회의 낙오자들로 표현한 것은, 비록 원고들 주장과 같이 훈련병들 전원이 살인범 또는 사형수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라도, 이 사건 망인들 또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피고들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실제의 사실과는 다르게 이 사건 망인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을 표현하여 망인들 또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 제작 당시 그러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영화 제작 당시에 존재하던 자료들의 내용을 살펴본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화에 표현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1) 훈련병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에 관하여 이 사건 영화 제작 당시에 존재하던 자료들의 내용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0,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684부대의 훈련병들이 1971. 8. 23. 서울에 진입한 사건에 관하여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정□□은 최초의 기자회견에서 이를 '무장공비에 의한 난동'으로 규정하였다가, 수 시간 후에 이루어진 후속 기자회견에서는 훈련병들의 신분에 관하여 '공군 관리 하에 수용 중이던 특수범 내지 죄수들'이라는 추상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였고, 그 다음날인 1971. 8. 24. 위 정□□, 공군참모총장 김○○, 대간첩대책본부장 김○○, 내무부장관 오○○ 등은 국회 국방위원회(내무위원회와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위 사건을 '특수범 난동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국회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였다(위와 같은 국방부 장관 등의 추상적 언급을 토대로 하여 국회의원들도 훈련병들을 '범죄죄수인 모 부대 군인'이라고 호칭하였다).

나) 같은 맥락에서 1971. 9. 15.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강○○는 국무총리 김종필에 대하여 훈련병들이 전과 10범 이상의 흉악범이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하였다(나아가 위 김종필은 2004년 2차례에 걸쳐서 방영된 서울방송(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인터뷰과정에서 684부대 훈련병들이 모두 사형수나 무기수 출신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고위공직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그 당시 언론기관에서는 실미도 사건을 '군특수범 난동사건'으로, 684부대 훈련병들을 '공군 관리 하에 수용된 특수범'으로 보도하였다.

라) 684부대의 창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의 회고록 『혁명과 이상』에는 '사형수나 무기수로 극형에 처해져 복역하고 있던 죄수들에게 조국을 위해 봉사하면 죄를 사면시켜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준다는 조건을 붙여 결사대 인원을 선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684부대 기간병 소대장이었던 김○○가 가명으로 기고한 글을 토대로 신동아 1993년 4월호에 게재된 『실미도 대북침투부대의 최후』에는 684부대 훈련병에 관하여 '들어오기 전 직업들도 가지각색이었다. 뺑소니차 운전자, 가짜 중, 소매치기, 암표장수, 식당요리사, 곡마단 감독, 편물기계 수리공, 포장마차 주인, 권투선수, 아마추어 가수, 사과나무 전지공, 돌팔이 점쟁이, 미군부대 담치기, 술만 마시면 칼 들고 파출소 쳐들어가는 놈, 여자 폭행만 전문으로 하는 놈 등 모두 다 교도소 구경을 했던 친구들이다. 어쨌든 남한테 단 한번이라도 칭찬받을 짓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중략) 이들은 하는 말들이 매우 거칠었고 교도소나 뒷골목에서 쓰는 은어, 속어가 대부분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주간동아 207호(1999. 11. 4.자)에는 684부대 훈련병에 관하여 '사형수와 무기수 등 비정규군 출신'이라 하면서, '당시 교육대장은 훈련병들을 빨리 북한으로 보내든 교도소로 돌려보내든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같이 고민했다.'는 관련자의 증언을 기재하였다.

사) 문화방송(MBC)이 1999. 12. 19. 방영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실미도 특수부대』에서 '사형수 출신의 부대원들 죽음을 무릅쓴 청와대행'이라는 제목 아래 684부대의 구성원들을 '군 특수범'이라고 밝혔고, 위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위 김○○은 훈련병들에 관하여 '내가 보고받기로는 전부 범법자라고 그러습디다. 범죄자... 강패들 그런 거를 뽑았다고 그래

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아) 684부대 기간병 소대장이었던 김○○이 2001년경 경향닷컴(www.khan.co.kr)에 기고하여 40부작으로 연재한 『실미도 684부대 주석궁 폭파부대』에서 684부대 훈련병에 관하여 ‘모집된 훈련원들은 모두 정보요원에 의하여 포섭된 양민들이다. 방식은 무작위 투망식 거점포섭으로 충청·경기 일원 등 특정지역 사람들이 집중 선발되었다. 훈련원 중 중상류층 국민이나 고급 인텔리는 한명도 없었다. 그들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하층 밑바닥 출신이었다. 향간에 죄수 또는 군 죄수라고 알려진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루머일 뿐 사실과 다르다. 시국사범은 더 더욱 아니었다. 그들은 100% 민간인들로 구성되었다.’라고 설명한 다음, 식당 요리사가 실직한 이후 자신의 피를 팔아서 받은 돈을 갈취하려는 불량배들을 때려눕힌 다음 이 장면을 목격한 정보요원에 의하여 포섭된 경위, 단검투척에 관한 묘기를 보유한 ‘곡마단 단원’이 모집 대상이 된 경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자) 한편, 이 사건 영화의 원작인 소설 실미도에는 ‘그들과 함께 해안 경비정에 승선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험한 인상에 근육이 울퉁불퉁했고, 칼자국과 문신이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행색으로 보아 사형수나 무기수뿐만 아니라 뒷골목에서 곧바로 합류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았다. 강인찬은 사람들을 세어보았다. 지원자 서른한 명, 군인들이 스물세 명이었다. (중략)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차례차례 하선을 했다. 고생 보따리를 하나씩 걸머지고 낮선 무인도로 옮겨온 살인자, 강도강간범, 현상수배자, 쫓록꾼, 개척자활단 출신들. 모두가 사회의 암이고 쓰레기 인생들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검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영화 제작 이전에 존재하던 실미도 사건에 관한 국회회의록, 언론보도, 고위공직자의 진술 등 공적인 자료에는 훈련병들의 신분에 관해 ‘공군 관리하에 수용된 특수범 내지 죄수들’, ‘군특수범’, ‘사형수나 무기수로 극형에 처해져 복역하고 있던 죄수들’, ‘사형수 출신의 부대원들’, ‘범법자, 깡패들’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위 김○○의 진술을 토대로 한 글에는 ‘모두 다 교도소 구경을 했던 친구들’이라고, 위 김○○이 기고한 글에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하층 밑바닥 출신’이라고, 이 사건 영화의 원작인 소설 실미도에는 ‘사형수나 무기수뿐만 아니라 뒷골목에서 곧바로 합류한 사람’, ‘모두가 사회의 암이고 쓰레기 인생들’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영화에서 묘사한 훈련병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성분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는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훈련병들의 전과관계와 모집경위는 물론이고 그 신원마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 이외에 다른 사실 확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이 사건 영화를 계기로 비로소 언론과 정부기관을 통하여 진상위원회가 구성되고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되는 등 구체적인 사실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훈련병들의 전과관계와 모집경위에 관하여 다소나마 밝혀진 것은 이 사건 영화 개봉 이후에 실미도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던 중 2004. 2. 7.경 서울방송(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훈련병들의 사진과 함께 관련자들의 증언을 방영하면서 서부터이며, 이 사건 영화의 개봉 이후 원고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방부에 훈련병들의 인적 사항, 모집관련 자료 등 훈련병들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는 민원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33년 전의 상황인데다가 관련부대의 해체와 유효기간 경과로 객관적 자료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면서 2004. 2. 13.자, 2004. 2. 19.자, 2004. 3. 11.자 각 민원회신을 통하여 훈련병들 중 일부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하여 주었고(갑 제10호증의 1, 2, 3), 이후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고등법원 2004라439호 영화상영금지처분사건에서의 사실 조화에 대하여 2005. 1. 3.자 및 2005. 1. 13.자로 회신을 하면서 일부 훈련병들에 대한 전과관계와 모집경위에 관하여 비로소 공식적인 확인이 이루어졌다(갑 제37호증의 4)}, ②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망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유족인 원고들의 진술을 쉽게 청취할 수도 없었고,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영화의 상영 이전에는 이 사건 망인들이 684부대 훈련병으로 모집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③ 역사적 사실의 각색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밖에 없는 상업영화에 있어서 영화제작자에게 국가기관이나 언론기관이 행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충분한 사실 확인 작업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에서 망인들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 그들과 극중 배역을 연관지을만한 직접적인 묘사를 하지는 않은 점, ⑤ 훈련병들 중 주연급에 해당하는 두 명에 대하여는 사형선고를 받은 인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다른 훈련병들에 대하여는 그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에 대하여 추상적인 상황 묘사만을 하고 그 개개의 구체적인 사례(가령, 위 김○○, 김○○의 글과 소설 실미도에 등장하는 여러 유형의 인물들)를 묘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영화의 극적 효과를 위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이 사건 영화 제작 당시에 밝혀진 사실들 중 훈련병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삭제하고 오히려 미화하기까지 한 점(예를 들면, 사실은 훈련병들에 대한 전원 사살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병들이 이러한 명령을 들은 후에야 기간병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 서울에 진입하여 버스에 있던 훈련병들 중 일부는

생존하였고 버스 폭과 경위 역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버스 안에서 훈련병들 전원 이 슈류탄을 함께 꺼내어 자폭하는 것으로 그리면서 그 과정에서 훈련병들이 자신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을 삽입한 것 등), ⑦ 이 사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볼 때 훈련병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을 추하게 표현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혐오나 멸시 등 비방의 의도를 드러내기보다는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훈련병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⑧ 실미도 사건이 있는 지 30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제작된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역사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게 된다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창작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 내용 중 문제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에게는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령 이 사건 영화에서 훈련병들 전원을 사형수, 무기수 또는 중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여서, 이 사건 영화 제작 당시 실미도 사건에 관하여 존재하던 자료들 중 위 김○○, 김○○의 글(김○○은 훈련병들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하층 밑바닥 출신일 뿐 죄수는 아니며 전원 민간인들로 구성되었다고 기술하여 다른 자료들과 가장 반대되는 내용을 썼다)과 소설 실미도(이는 기본적으로 문학적 상상력에 의하여 창작된 것이다)를 제외한 국회회의록, 언론보도, 고위공직자의 진술 등 각종 공적인 자료에는 실제 훈련병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① 위 김○○, 김○○가 훈련병들을 직접 접촉하였었고 그 글에 구체적·개별적 사례가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확실히 담보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위 김○○, 김○○의 글은 실미도 사건이 있는 지 20년 내지 30년 후에 쓰인 것으로, 김○○의 글이 게재된 후에도 주간동아와 문화방송은 훈련병들에 대하여 사형수나 무기수로 표현하였고, 김○○은 이 사건 영화 개봉 이후에 다른 언론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훈련병들 중 30~40%는 강도 또는 깡패로 전과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더욱이 피고들은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 김○○ 개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영화의 주연배우들이 실제로 위 김○○의 글을 참조하였다는 점을 주요하게 거론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글에 드러난 실미도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 이외에 훈련병들의 출신성분 등 세부적인 묘사까지도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백○○는 생존훈련병 중 1명을 교도소에서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소설 실미도를 구상하였는데, 이 사건 영화의 개봉 이후인 2004. 2. 21. 『실미도 사건 총정리 1』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제가 취재한 모든 자료와 인터뷰는 훈련병이 사형수, 아니 적어도 교도소 출신인 것이 틀림없더군요. 국회속기록(국방내무연석회의록), 국내외의 엄청나게 많은 언론매체, 박□□ 장군 회고록, 유○○ 국방장관 회고록, 김형욱 회고록, 격동 삼십년, 한국현대사, 김○○씨의 신동아 수기 등등 실미도 실자가 들어있는 모든 문서... 김○○ 공군참모총장, 민○○ 육군참모총장(국회 국방위원장 실미도진상조사단장), 김○○ 대간첩 대책본부장, 박□□ 인천지구 사단장,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약속한 전직 중앙정보부 대령 외 군인 여러명... 강○○ 군산시장(당시 국회의원) 김○○, 김○○ 위원, 이○○위원 비서관 등등의 정치인... 당시 경향신문 사회부 수석기자 손□□ 등등 언론인...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훈련병들이 사형수나 무기수 출신의 죄수라고... 확실하게 증언을 하던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 ②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상업영화를 제작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되는 사실관계에 작가와 감독의 문학적 상상력을 토대로 인물과 이야기를 그리게 되는 점(이 경우 통상 적시된 사실의 중요부분이 전체적으로 진실과 합치되면 족하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의 윤색, 과장이 있다고 하여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실미도 사건과 같이 역사적으로 미궁에 빠진 사건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가설에 기한 검토가 있을 수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수반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그 가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역사의 연구는 있을 수 없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대한 반론의 제기도 어렵게 되는 점(더욱이 개인의 사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갖는 중대한 공적 사실인 실미도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다소의 추측과 과장이 가미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제재는 상당히 완화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비록 그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진실성의 확인을 위한 노력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내용이 아닌 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만 있으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④ 피고들에게 실질적인 사실 확인 작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앞서 피고들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여 보면, 위 상반되는 자료들 중 공적인 자료들을 신뢰하여 이를 토대로 영화를 제작한 피고들을 탓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에서 이 사건 망인들을 살인범이나 사형수 등으로 표현하

여 망인들 또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용공주의자로 표현하였다는 부분

(가) 원고들이 지적하는 구체적인 영화 내용

이 사건 영화에서 훈련병들이 북한 군가인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은 세 번 나온다. ① 부녀자를 강간한 훈련병 원희가 체포되어 밧줄에 묶인 채 다른 훈련병들이 체벌을 당하는 상태에서 처절하게 ‘적기가’를 부르고(상영시작 후 1시간 6분경), ② 훈련병 원희가 사망한 직후에 다른 훈련병들이 나무반에 들어간 다음 침통한 분위기속에서 훈련병 중 일부가 중얼거리듯이 ‘적기가’를 부르며(상영시작 후 1시간 10분경), ③ 서울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훈련병 찬석이 죽어가면서 ‘적기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다른 훈련병들 모두가 이를 따라서 부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상영시작 후 1시간 55분경).

(나) 검토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에서 극중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사실 묘사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 인물에게 있었던 사실이나 사건을 묘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의 구성이나 극적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일반 관객이 보통의 주의와 방법에 의하여 그것을 사실의 묘사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정도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영화의 전개와 극적 효과를 위하여 특정 장면에서 등장인물로 하여금 특정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음향효과를 삽입하는 것 등은 원칙적으로 영화제작자의 고유한 창작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그것이 이야기의 구성이나 극적 효과를 연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정 인물에 관한 사실이나 사상의 묘사에 이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684부대에서는 원활한 북한침투를 위하여 훈련과정에서 훈련병들에게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같은 북한 군가를 가르치고 이를 부르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비록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들이 ‘적기가’를 배우거나 부른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① 훈련병들이 북파공작을 목적으로 한 특수부대원들이었고 그러한 목적 하에서 북한 군가를 배워 알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영화에서 훈련병들이 부르는 노래가 북한 군가인 ‘적기가’라는 것을 표시한 바가 없어서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위 노래가 북한 군가임을 바로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훈련병들이 북한체제에 대하여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은 없는 점, ④ 이 사건 영화에서 훈련병들은 용공주의자가 아니라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모습으로, 즉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 후 이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이는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훈련병들이 ‘적기가’를 부르는 데 대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노인 승객이 ‘이상한 노래 부르고 군인들과 싸우면서 무장공비가 아니라면 대체 댁을 뭐하는 사람들이오?’라고 묻자, 강인찬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쳐 김일성 목을 따고 주석공을 폭파하라. 이것이 너희의 임무이다!’라고 절규하는 장면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⑤ 이 사건 영화를 본 관객들은 훈련병들에 대한 경멸이나 혐오의 감정보다는 대체로 이들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점, ⑥ 영화에 삽입된 특정한 노래나 음향효과가 적절하거나 불가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이 사건 영화에서 훈련병들이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을 삽입한 것은 명예훼손의 대상인 사실의 묘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망인들 또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영화의 자막, 홍보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영화의 시작자막의 내용

당초 이 사건 영화가 국내 영화관에서 상영될 당시 본 영화의 시작 무렵에 “영화 <실미도>는 1968년에 창설된 ‘실미도 684부대’에 관한 영화이며, 영화 속 훈련병들의 출신성분이나 상황설정이 과거 혹은 현재의 다른 북과공작부대와 북과공작원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자막(이하, ‘원자막’이라 한다)이 상영되었다.

2) 광고·홍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를 국내 영화관에서 개봉할 무렵부터 종영 이후까지 운영하던 공식홈페이지의 경우, 허구임을 전제로 하는 ‘Movie(영화)’에 관한 항목(그 세부항목은 Synopsis(줄거리), Director(감독), Production Note(제작과정), Staff(제작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과 구분되는 ‘신문’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설정한 다음, 그 세부내용으로 실미도 사건에 관하여 8개의 신문기사 형식으로 작성한 내용을 게재하면서, ‘훈련병들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거나 무기징역 혹은 수감자들이 포함된 사회의 밑바닥 계층이었다. 작전 성공시 모든 형벌 취소 및 전과기록 말소 등 정부로부터 새 삶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실미도의 지옥훈련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를 국내 영화관에서 상영할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32년을 숨

겨운 진실...’, ‘2003년 12월, 32년을 숨겨온 진실이 밝혀진다. 이름도 없었다. 존재도 없었다. 살려둘 이유도 없었다.’, ‘진실에 눈물을 흘린 관객들의 이구동성’, ‘진실의 힘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신문광고를 하였다.

피고들이 2004. 7.경 제작한 디브이디 세트의 첨부물 ‘684 북파부대, 실미도(SILMIDO)’의 경우에도, 허구임을 전제로 하는 ‘Synopsis’와 구분되어 있는 ‘About Fact’에 관한 항목에 『‘실미도 사건’은 무엇인가?』라는 제목과 함께 ‘작전 성공시 사형취소 및 잔형면제! 실패 시 전원 자폭할 것’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첨부물의 속표지에는 ‘이름도 없었다... 존재도 없었다... 살려둘 이유도 없었다! 32년을 숨겨온 진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이 2004. 7.경 제작·판매하기 시작한 비디오테이프의 겉포장에는 ‘이름도 없었다... 존재도 없었다... 살려둘 이유도 없었다! 32년을 숨겨온 진실... 이제는 말한다!’, ‘진실에 눈물흘린 1,100만 관객들의 이구동성’ 등의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나) 검토

살피건대, 원자막의 경우 684부대 훈련병들의 출신성분이나 상황설정이 ‘다른’ 북파공작부대와 무관하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오히려 이 사건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684부대 훈련병들의 출신성분이나 상황설정만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영화의 광고·홍보에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영화가 ‘진실’이라는 것이며, 공식홈페이지와 디브이디 세트의 첨부물에서는 적극적으로 특정 내용(특히, ‘훈련병들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거나 무기징역 혹은 수감자들이 포함된 사회의 밑바닥 계층이었다. 작전 성공시 모든 형벌 취소 및 전과기록 말소 등 정부로부터 새 삶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실미도의 지옥훈련을 받게 된다.’는 내용 부분)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홍보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영화가 역사적 진실 그대로 제작된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만을 이유로 영화제작진의 광고·홍보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선불리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적절한 조화와 선택을 요소로 하는 상업영화에 있어서 영화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홍보하였다고 하여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하였으며 극적 허구와의 조화 속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이와 같은 홍보 방식이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상업영화의 일반적인 홍보 관행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영화제작 당시까지 밝혀진 사실관계

를 토대로 하여 영화제작자가 그 광고·홍보 중 사실을 적시한 내용에 대하여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화제작자에게 그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영화의 시작자막과 홍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사건 영화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한 것 이외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훈련병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에 관한 부분까지도 진실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인데(홍보의 내용은 영화에서 묘사된 내용 이외의 것을 담고 있지는 않다), 앞서 이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망인들 또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시작자막과 홍보 자체만을 들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영화의 개봉 이후 실미도 사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어 그 실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이 사건 망인들의 모집경위에 관하여도 일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사후적으로 이 사건 영화의 시작자막과 홍보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감을 자극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제작·판매하고 있는 디브이디 디스크 및 비디오테이프의 시작자막을 '영화 <실미도>는 1968년에 창설되어 실재하였던 실미도 684부대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제작당시 관련자료 부족과 공식적인 정보공개의 부재 등을 이유로 영화의 구체적인 상황설정이나 표현은 문학적 상상력에 의존하였습니다. 따라서 훈련병들과 기간병들에 대한 출신성분, 훈련과정 기타 상황설정 중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또한 684부대는 다른 북파공작부대와 그 소속 북파공작원과는 무관합니다). 특히 이 영화 상영 이후 언론 등을 통해 훈련병들의 인적사항 및 이들 중에 순수한 민간인이 다수 참여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저희는 앞으로도 숨겨져 있던 실미도 사건에 대한 진실이 더욱 더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영화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했던 관련자 여러분 및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충심으로 고대합니다.'라고 수정하고, 앞서 지적인 홍보물 부분을 삭제하였는바, 영화의 제작·상영 이후에 밝혀진 사실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명예훼손의 결과를 가져온 점에 대하여도 피고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4) 소결론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를 제작·상영하고 홍보함에 있어서 훈련병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에 관하여 표현하고 훈련병들이 적기가를 부르도록 표현하고 이 사건 영화를 진실이라 홍보한 것이 이 사건 망인들 또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영화의 상영 등 금지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망인들이나 원고들의 인격권이 중대하게 훼손되거나 왜곡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유가족인 원고들이 인격권 침해로 근거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영화의 상영 등의 금지를 구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영화와 같이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역사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망인이나 그 유가족의 인격권보다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는 창작 내지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영화제작의 토대가 된 각종 자료들의 확실성과 신빙성,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실확인작업이 비교적 용이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영화제작자가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영화의 내용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인격권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등 참조). 특히 법원에서 ‘예술적 창작물’인 영화의 상영 자체를 금지하거나 혹은 그 영화내용을 직접적으로 수정·삭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예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직접적 구제수단이 허용되는 사안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의 태양 및 그 정도, 침해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격권의 핵심적 내용이 중대하게 훼손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망인들을 용공주의자로 표시하였다는 부분은 명예훼손의 대상인 사실의 묘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망인들 또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들어 망인들이나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망인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에 대하여 살인범이나 사형수라고 묘사하고 이를 사실이라고 자막에 표시하거나 광고를 한 행위가 망인들이나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원고들은 이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해 침해되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영화의 상영 등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창작 작품인 이 사건 영화에 명예훼손적 사실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바로 그 부분의 삭제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명예훼손적 사실로 인하여 인격권의 핵심적 내용이 중대하게 훼손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영화의 제작 경위, 영화 제작 당시 있었던 실미도 사건에 대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그 신빙성,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의 태양 및 그 정도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망인들 및 원고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들의 모집경위나 출신성분에 대하여 살인범이나 사형수라고 묘사하고 이를 사실이라고 자막에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들어 망인들이나 원고들 인격권의 핵심적 내용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영화의 상영 등 금지청구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함이 상당한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심 상 철

판 사 김 종 수

판 사 함 종 식

□

언론이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전지방법원 2007. 1. 23.자 판결 (2005가단52747)

사실개요

대전지방법원 민사11단독 재판부(재판장 최병준 판사)는 위탁급식업체 대표 김○○이 주식회사 대전방송과 ○○여중 교사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지난 2005년 9월 21일 19시 「현장리포트」 프로그램 “학교 급식, 무엇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제하의 방송에서 중국산 찌쌀 등 수입 농산물이 학교 급식, 일반 음식점 등에 공급되고 있다는 내용에 이어 ○○여고에서 급식을 운영하는 원고가 중국산 찌쌀 등을 사용하고 있고, 학교법인과 급식계약 체결에 부정확한 청탁이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와 명예 및 신용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대전방송 및 위 방송에 출연하여 인터뷰에 가담한 피고 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각 방송보도를 접한다면 원고와 학교법인 이사장이 결탁하여 이면합의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는 등 급식실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와 학교법인 간에 모종의 뒷거래나 부정적인 청탁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급식실의 직영전환이 무산되고 위탁급식 재계약 내지는 기간연장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의 급식업체가 폭리에 가까울 정도로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있고, 학교 급식으로서 위탁급식보다는 직영급식이 더 나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음식 맛이 없고, 청결하지 않으며, 일하는 아주머니가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말하고 “원고와 학교법인 이사장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위 ‘결탁’으로 볼 만한 부정확한 청탁이나 대가가 오고 갔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진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위탁계약의 연장합의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계약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중 누구도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사장이 학교에 불리한 합의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전방송은 원고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결탁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학교 측에서 원하던 직영급식이 어렵게 되어 법원에서 법정화해로 2년간의 급식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 대전방송의 위법성

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단52747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강 노

피 고 : 1. 주식회사 대전방송

대전 동구 효동 122-1

대표이사 이 중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관 형, 이 기 영, 이 봉 재

2. 권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동 환

변론종결 : 2006. 12. 22.

판결선고 : 2007. 1. 23.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구 ○동 소재 ○○도시락을 운영하면서 대전 ○○여자중학교(이하 ‘○여중’이라고만 한다) 및 ○○여자고등학교(이하 ‘○○여고’라고만 한다)의 급식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대전방송(이하 ‘대전방송’이라고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고, 소외 김□은 1995. 1. 9.경부터 피고 대전방송에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 권○○은 ○○여중의 교사로서 전교조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전교조 ○○여중·고 분회의 회장이자.

나. 소외 김□의 취재과정 및 방송보도 내용

(1) 피고 대전방송은 2005. 9. 21. 19:00경 ‘현장리포트’라는 프로그램에서 프로듀서인 소

외 김□이 학교 구성원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지역사회단체가 함께할 때 아이들에게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의도로 취재·제작한 ‘학교급식, 무엇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17분 동안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라 한다).

(2) 피고 대전방송의 ‘현장리포트’ 프로그램은 대전 충남지역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하여 담당 프로듀서가 취재 구성하여 보도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인데, 프로듀서인 소외 김□은 2005. 4.경 서구청 의회에서 학교급식조례가 부결되고, 대전지역에 ‘학교급식 조례제정 시민연대’가 결성되는 등 학교급식의 변화 필요성에 관한 광범위한 여론이 조성되고, 수입농산물을 급식에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에 관련된 여러 움직임을 취재·보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방송보도를 기획하였다.

(3) 소외 김□은 수입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언론보도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의 단속자료를 참고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의 급식업체와 ○○여고 사이의 급식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학교급식지원 대전시민연대의 제보를 받아 위 단체의 소개로 ○○여중 교사인 피고 권○○을 찾아가 급식실 운영과 관련된 그 동안의 경위를 청취하는 한편 위 권○○ 및 ○○여고 측으로부터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원고와 체결된 위탁계약서류, 소송관련 서류 등을 제공받아 검토하였으며, 급식현장에서 학생들 및 원고를 직접 인터뷰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방송보도 내용은 크게 프롤로그, 본편, 에필로그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① 프롤로그는 급식재료에 수입농산물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 좋은 급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 ② 본편은 급식과 관련된 학교행정의 비교육적인 처사, 대전시 학교급식조례운동,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학교 소개에 관한 내용, ③ 에필로그는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과 관련된 대법원 관례의 의미에 관한 내용으로 각 구성되었다.

(5) 이 사건 방송보도 첫머리에서 사회자는 중국산 찹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중국산 찹쌀이 최근 학교급식 등으로 보급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라는 멘트로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을 소개하였고, 이어 프롤로그 부분에서 중국산 찹쌀이 밥맛이 없고, 농가에 경제적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이산화황 등이 검출되었고, 이러한 수입 농축산물 및 중국산 찹쌀이 학교 급식이나 시중 음식점에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프롤로그 마지막 부분에서 ○○여중 교사인 피고 권○○

이 “누구는 돈 내고 먹는 아이, 누구는 그렇지 않은 아이라고 할 때,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아이들의 상실감 그런 것을 비교육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당길수록 좋겠죠. 학생들의 무료급식……”이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방송된 후에 “어느새 수입농산물이 깊숙이 파고든 현실 속에서, 더욱 심각한 사실은 학교 급식 등으로 공급돼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고민해 봤습니다.”라는 프로듀서 김□의 멘트가 이어진 다음 화이트이펙트 처리(앞 화면과의 단절을 위해 화면을 백지상태로 한 후 다음 화면으로 전환되는 방송기법) 후 ○○여고의 어느 교실로 화면이 바뀌면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방송된 후 학교 급식 조례 부결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이어졌다.

(6) 에필로그 부분까지 모두 방송된 후 스튜디오에서 사회자는 “예, 청소년들의 건강은 한 국가의 건강의 척도입니다. WTO의 협상에서도 미국 같은 나라는 학교 급식 등의 대량 소비처엔 자국 농산물을 쓴다는 예외조항을 미리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입 농산물이 물 밀 듯 들어올 때 과연 우리 자녀들의 밥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라는 멘트로 이 사건 방송보도를 마무리하였다.

다. 이 사건 방송보도 이후의 상황

원고는 2005. 11. 7.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전동부경찰서에 피고 권○○, 소외 김□, 피고 주식회사 대전방송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중기를 각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들은 2006. 3. 27.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4, 을 가 제1호증, 을 가 제4호증, 을 가 제5호증, 을 나 제10호증, 을 나 제11호증의 65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① 중국산 찌쌀 등 수입 농산물이 학교 급식, 일반 음식점 등에 공급되고 있다는 내용에 바로 이어서 ○○여고의 모습 및 원고가 운영하는 급식실이 비취지면서 원고의 급식업체와 ○○여중·고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내용이 방송됨으로써 원고의 급식업체가 중국산 찌쌀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학부모들로부터 수많은 확인 전화를 받았고, ② 원고와 ○○여중·고의 학교법인인 △△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고만 한다) 간의 ○○여고 급식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법적 분쟁 끝에 2년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학교

법인의 이사장 간에 부정한 결탁이 있어서 이사장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로 인해 2년간의 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래의 계약은 계약의 주체가 학교장으로 되어야 함에도 이사장을 주체로 하여 잘못 체결되었다는 내용이 방송됨으로써 원고의 업체가 학교법인과 급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나 비리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었으며, ③ ○○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위탁급식업체인 원고의 업체와의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위탁급식 업체의 이윤이 20~30%인데, 이러한 이윤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재투자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직영으로 급식형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내용 및 새로이 실시된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방송됨으로써 위탁급식보다 직영급식이 더 낫다거나 위탁급식은 문제가 많고 원고의 급식업체가 위와 같은 이윤을 남기는 것처럼 오인되어 각 원고의 사회적 가치와 명예 및 신용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방송보도를 한 피고 대전방송 및 위 방송에 출연하여 인터뷰하는 등 위와 같은 방송보도에 가담한 피고 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피고 대전방송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9. 8. 28. 학교법인 이사장인 소외 배○○와의 사이에 원고가 급식실에 투자한 설비 시설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1999. 9. 1.부터 2004. 8. 31.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임대한 시설에 원고의 부담으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방설비 및 급식운영에 필요한 기물을 완비하여 학교법인의 소속학교인 ○○여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탁 업체를 교체하게 될 경우 원고는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원고의 부담으로 피고의 시설에 설치한 위 기물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고에게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여고 교장은 2004. 1. 8. 급식계약의 주체는 재단이사장이 아니라 학교장이어야 한다는 관련법규정을 들어 원고와 재단이사장이 맺었던 것과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역시 1999. 9. 1.부터 2004. 8. 31.까지 5년간으로 하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2003. 7. 31. 및 2004. 6. 15. 원고의 급식업체에 대한 교육

청의 급식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18%인 점과 급식의 질이 낮고 급식에서 바퀴벌레나 쇠 수세미가 나오는 등 급식 식재료와 조리과정에 문제가 많았던 부분을 지적하고,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장 직영급식 권장 방침에 따라 직영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에 따라 2004. 6. 22. 급식실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고 교장은 2004. 6. 23. 원고에게 2004. 8. 31. 자로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급식실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겠다는 결정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6. 24. ○○여고 교장에게 급식실에 약 340,000,000원을 투자하여 급식시설을 하였고, 이를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큰 금액을 투자한 것은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소외 학교법인 이사장인 소외 배○○와 사이에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여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원고가 ○○여고의 급식실을 비워주지 않자 ○○여고 측에서는 학생들을 급식실로 보내지 않기로 하여 급식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고, 이에 ○○여고 교장은 2004. 8. 30. 학부모에게 학교급식의 중단에 따른 도시락 지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원고는 ○○여고의 급식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점유하다가 2004. 9. 15. 대전지방법원에 소외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10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염두에 두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학교법인이 계약기간 연장 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맞서서 학교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급식실을 명도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배○○가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2004. 9. 7. 자 배○○ 명의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바) ○○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소외 □□도시락으로부터 매일 도시락을 주문하여 학생들의 점심을 대신하였고, 2005. 5. 2. 학생·교직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도시락 급식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의 53%, 교직원의 44%가 당시 실시되던 도시락 급식보다 종전 위탁급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고, 학교 자체 직영급식 실시 전까지의 급식형태가 어떤 형태이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학생의 79%, 교직원의 73%가 종전의 위탁급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학교 급식실과 관련한 원고와의 소송이 계속됨에 따라 도시락 급식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처지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의 도시락 급식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감에 따라 ○○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 대책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식으로 도시락보다는 급식실을 활용하는 것이 효

을적이라고 보아서 원고와 합의하여 위탁급식을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여고 측은 2005. 6. 16. 이 사건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을 2007. 10. 31.로 연장하되, 위 기간이 종료되면 원고는 소외 학교법인에게 급식실을 명도하고, 그 내부 시설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져 소송이 종료되었으며, 원고는 2005. 7. 1.부터 급식을 재개하였다.

(사) 그러나, ○○여고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비롯한 일부 교사들은 위와 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학교 측과 마찰을 일으켰고, 이들은 새로이 재개된 원고의 급식실 급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무렵인 1999. 10. 30. 급식실에 금 123,040,000원 상당의 급식 설비를 설치하였다는 내역서를 학교법인에 제출하였고, 그 후 금 172,113,400원 상당의 급식 설비를 1999. 6. 21.부터 2003. 4. 20. 사이에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내역서를 학교법인에 제출하였으며, 2004. 6. 30. 학교법인과의 위탁급식계약을 연장하면서 금 146,449,000원 상당의 급식설비를 기간 만료일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내역서와 기부채납원을 학교법인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가 제3호증의 1, 2, 을 가 제6호증의 1, 을 가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나 제1호증, 을 나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나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나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나 제6호증, 을 나 제8호증, 을 나 제11호증의 12 내지 14, 22, 23, 25, 33 내지 37, 41 내지 51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여자고등학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 여부 판단 기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

으로 삼아야 한다.

(3) 원고 주장의 위 제2항 ①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중국산 찌쌀 등 수입 농산물이 학교급식, 일반음식점 등에 공급되고 있다는 내용에 바로 이어서 ○○여고의 모습 및 원고의 급식실이 비취지면서 원고와 ○○여중·고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별지 기재 내용이 방송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방송보도의 제작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방송보도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중국산 찌쌀 등 수입 농산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측과 급식 위탁 업체 간의 문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조례 부결 문제 등 학교 급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각 주제를 구분하여 방송하였던 점, 수입농산물 문제에 관한 보도와 원고의 급식실 운영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보도 사이에 화이트 이펙트 처리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적으로 위 두 가지의 주제가 이어져 있는 것일 뿐이지 피고 대전방송이 ○○여고 교실이나 급식실을 비취 주면서 수입농산물 주제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학교급식에 수입농산물을 사용한다는 등의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이 사건 방송보도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부분에서 각 수입 농산물 문제에 대하여 거론한 점만을 들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학교급식실을 운영하면서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송보도내용이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주장의 위 제2항 ②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와 소외 학교법인 간의 이 사건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결국 2년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피고 대전방송이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원고와 학교법인의 이사장 간에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구두합의를 하고, 소송계속 중에 이사장이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과정에서 원고와 이사장 사이에 결탁 의혹이 있고, 그로 인해 2년간의 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래의 계약은 계약의 주체가 학교장으로 되어야 함에도 이사장을 주체로 하여 잘못 체결되었다는 등의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내용은 이를 시청하는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장과 체결되어야 할 위탁급식계약이 재단 이사장과 체결되고, 원고와 학교법인 이사장이 결탁하여 이면합의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는 등 ○○여고의 급식실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와 학교법인 간에 모종의 뒷거래나 부정적인 청탁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급식실의 직영전환이 무산되고 위탁급식 재계약 내지는 기간연장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위와 같은 보도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을 훼손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원고의 위 제2항 ③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피고 대전방송은 ○○여고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을 직영으로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위탁급식업체인 원고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위탁 급식 업체의 이윤이 20~30%인데, 이러한 이윤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재투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영으로 급식형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새로이 실시된 원고의 급식실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인터뷰 형식을 빌려서 급식이 청결하지 못하거나 맛이 없고, 마지못해 학생들이 급식실을 이용하는 듯한 내용이 방송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방송보도 부분은 이 사건 각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각 방송보도를 접한다면 원고의 급식업체가 폭리에 가까운 정도로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있으며, 학교급식으로서 위탁급식보다는 직영급식이 더 나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음식 맛이 없고, 청결하지 않으며, 일하는 아주머니가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부분 방송보도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대전방송은 이 사건 방송보도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작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취재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기준

(가) 언론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그것이 공적인 인물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의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인바,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대전방송의 '현장리포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심층 취재를 토대로 사회적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일반 시청자들에게 보도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고, 위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이 사건 방송보도는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학교급식 문제에 대하여 국가와 지역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수입 농수산물 문제, 급식업체와 학교 측 사이의 급식실 운영에 관한 법적 공방 문제, 급식조례부결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성격, 보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나) 원고 주장의 위 제2항 ②부분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학교법인 이사장인 배○○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계약의 당사자인 학교장을 제외한 채 이사장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구두로 계약기간종료 이후 그 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과정에서 소위 '결탁'으로 불 만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가 오고 갔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전방송이 원고와 소외 배○○가 결탁하여 계약기간을 보장하여 주기로 이면합의를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진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초 원고와 학교법인 간의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상에 원고가 급식실에 투자한 설비 시설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만료 후 위탁업체 교체시에 원고가 민, 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으며, 기간 만료 후 급식실에 투자한 설비시설을 학교 법인에 무상으로 기부한다고 명시하였을 뿐이지 위 계약서에 원고와 소외 배○○ 사이에 이루어진 기간연장 또는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와 소외 배○○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이면약정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작성

된 바가 없다가 원고와 소외 학교법인이 급식실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던 시점에서 위 배○○가 뒤늦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사실, 학교급식은 학교법인 이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전체의 문제인데, 이 사건 위탁계약의 연장합의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계약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중 누구도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음에도 소외 배○○가 학교에 불리한 합의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학교 급식 상황은 학교장이 결정할 권한사항이라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여고 학교장과 다시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도 원고가 당초의 계약기간인 5년이라는 계약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위탁급식업체들은 5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후 급식설비를 모두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재계약이나 계약 연장 등을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 당시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학교장 직영급식이 보다 교육적이고 안전하며 질이 높다고 보아 이를 학교급식 운영형태 방침으로 정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고, 그에 따라 학교법인이 직영급식이 더 낫다고 평가하여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급식 시설 설치 금액 및 시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금 123,040,000원 상당의 급식 시설이 설치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약 340,000,000원 상당의 급식 시설 설치로 인한 계약 연장 합의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 172,113,400원 상당은 대부분 이 사건 위탁계약 이후에 설치된 급식 시설에 관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 김□이나 피고 대전방송은 원고와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소외 배○○가 결탁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학교 측에서 원하던 직영급식이 어렵게 되어 법원에서 법정화해로 2년간의 급식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2항 ② 방송 부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 대전방송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 주장의 위 제2항 ③부분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김□이 취재과정에서 참고한 ○○여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급식실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음식물에서 쇠수세미가 나오는 등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학생 등 급식 이용자의 급식 만족도가 1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기재

되어 있었던 사실, 역시 위 김□이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한국 급식 전국네트워크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자료집에 의하면 급식업체의 이윤이 20~30%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급식을 재개한 이후의 급식실에 대한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은 소외 김□이 실제 급식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취재하여 그대로 보도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여고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위탁급식이 중단되어 도시락 급식을 하던 중에 실시된 것으로서 당시 실시된 도시락 급식과 기존의 위탁급식을 비교한 급식 만족도로서 원고의 위탁급식 자체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중 위 제2항 ③부분은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전방송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송 부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 대전방송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 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 권○○이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패널로 참가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소외 김□의 취재에 응하여 ○○여고의 급식실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인터뷰 내용은 학교 측이 원고와의 문제로 급식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원고와 위탁급식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부분에 관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급식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과 급식 운영에 있어서 이윤이나 영업상 이익보다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 권○○이 인터뷰한 내용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권○○이 소외 김□의 취재에 응하여 급식실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패널로 참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권○○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최 병 준

□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자 판결 (2006가합24129)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차○○이 조선일보생활미디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학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와 피고 학원사의 각 월간지가 보도한 내용 중 인정 사실 및 평범한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왕따를 당해 자살충동을 느꼈거나 배우자가 남존여비 사상이 짙은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는 보도, 가족의 실명공개는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피고들과의 인터뷰를 거절하였는데도, ‘여성조선’과 ‘주부생활’ 기사의 경우, 제목 및 그 표현에 있어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기사내용의 상당부분이 원고와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점, 정보화 시대의 특성상 여성지에 특정 기사가 보도되면 다른 많은 매체를 통하여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세간의 관심이 더욱 커지며, 실제로 인터넷에 이 사건 ‘여성조선’ 기사를 인용한 글이 다수 게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와 피고 학원사는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사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여부가 문제될 정도의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인터뷰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영향력 있는 타 매체에 보도되었던 부분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도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피고 동아일보사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과거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연예인이었고, 원고가 출연했던 드라마는 지금도 케이블 TV를 통해 종종 방송되며, ‘○○과 □□’의 리메이크 소식과 동시에

원고에 관한 기사가 쇄도했는데, 원고는 공적 인물이고,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보도한 것이며,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원고와 전화 인터뷰를 한 후 원고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고, 과거 원고가 모 종교 위성 방송에 출연하여 과거의 일을 털어놓았던 내용을 취재하여 기사의 내용을 보강하였으므로, 인터뷰하였다고 기사화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에 목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와 피고 학원사의 주장에 대해 “한때는 공적 인물이었거나 유명사건과 관련된 사인의 사생활이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의 사생활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인터뷰를 분명하게 거절하고 기사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와 피고 학원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정정보도청구와 피고 동아일보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가 발행하는 월간 『여성조선』 2006년 3월호 「드라마 ‘○○과 □□’의 원조 ‘○○’ 차□□ 본지에만 심경고백」 제하의 기사, 피고 동아일보사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여성동아』 2006년 3월호 「‘○○과 □□’의 ○○역 차□□ 은퇴 후 근황」 제하의 기사, 피고 학원사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주부생활』 2006년 3월호 「‘○○과 □□’ 궁극한 왕년의 톱스타 차□□이 직접 전한 근황인터뷰」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들과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며, 원고의 사생활, 가족관계, 원고의 집, 원고가 다니는 교회 등을 공개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24129 손해배상(기)등

원 고 : 차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손 영 호, 최 은 순

피 고 : 1. 조선일보생활미디어 주식회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2-4

대표이사 이 창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3. 주식회사 학원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프라자

대표이사 이 용 모, 최 옥 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만

변론종결 : 2006. 12. 13.

판결선고 : 2007. 1. 24.

주 문 : 1. 원고에게,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 주식회사, 주식회사 학원사는 각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1.부터 2007.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 주식회사, 주식회사 학원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 주식회사, 주식회사 학원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1/5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1. 원고에게,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 주식회사는 50,000,000원, 피고 동아일보사는 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학원사는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명의로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일간신문 조선일보, 같은 중앙일보, 같은 동아일보, 같은 경향신문, 같은 매일신문의 제1면 상단에 가로 37cm, 세로 1.7cm의 칸을 설정하여 그 안에 가로 1.8cm, 세로 1.8cm 크기로 '공고문'이라는 대체목을 50급 고딕체로 게재하고, 가로 1.5cm, 세로 1.5cm의 크기로 '차□□씨와 관련된 허위 인터뷰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라는 소제목을 40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후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

의 본문을 15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라.

3. 피고들은 위 제2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이행시까지 1일 각 금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86년부터 1987년까지 모 TV에서 방영된 인기드라마 ‘○○과 □□’의 여주인공 ‘김○○’역을 맡아 연기하면서 ‘차□□’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원고는 1988년 결혼 한 후, 연예계를 떠나 현재까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으며, 결혼 이후 아무런 연예활동을 한 바가 없다.

(2)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 주식회사는 월간여성지 ‘여성조선’을,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월간여성지 ‘여성동아’를, 피고 주식회사 학원사는 월간여성지 ‘주부생활’을 각 발행하는 언론사이다(이하,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 주식회사는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피고 동아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학원사는 ‘피고 학원사’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경위

(1) 모 TV는 2006년 초순경 1980년대 중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과 □□’이라는 드라마를 20년 만에 다시 제작해 2006. 2.부터 방영하겠다고 밝혔다.

(2) 위 모 TV의 발표 이후 원작의 여주인공인 ‘차□□’(원고의 예명)이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순위 1위로 떠오르고 나아가 원고를 비롯한 원작의 등장인물, 리메이크작의 여주인공, 드라마의 내용 등에 대한 관련기사들이 연일 게재되는 등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3)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의 이○○ 기자는 2006. 2. 14.에, 피고 학원사의 이□□ 기자는 2006. 2. 8.에 원고에게 각 전화를 하여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인터뷰 의사가 없고, 기사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은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몇 가지 물어본다면서 질문을 하여 원고가 답변한 몇 가지 내용과 원고가 C○○ TV 출연당시 또는 미국 LA의 전도집회에서 말한 내용을 따로 취재하여 이 사건 ‘여성조선’ 기사를 작성하였다.

(4) 피고 동아일보사의 기자는 C○○ TV의 연출자를 통하여 원고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다.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1)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는 여성조선 2006년 3월호의 신문광고와 표지에 「드라마 ‘○

○과 □□의 원조 ‘○○’ 차□□ 본지에만 심경고백」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그 밑에 「‘한 남자의 아내, 아이들 엄마로 만족, 지금 컴백의사 없지만 은퇴한 건 아니다」라는 부제목을 게재하고, 목차에는 「‘○○과 □□’ 한○○ 역의 원조 차□□ 단독 인터뷰, 88년 결혼과 함께 사라졌던 이유, 2남 1녀 키우며 사는 근황 독점 공개」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보도하였다. 위 기사에는 원고의 연예인 활동 당시의 사진과 최근의 사진이 실려 있다.

드라마 ‘○○과 □□’ 한○○ 역의 원조 차□□ 단독 인터뷰

• “교인이면 누구나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운전 중이라는 그녀는 인터뷰를 꺼내자 살짝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 “다시는 연기를 안 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차□□은 ○○○ TV의 몇몇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과 □□’을 촬영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예전에는 전속이라는 게 있어 타 방송국에 가면 텃세가 심했거든요. 홀로 많이 외로워했었죠.”라며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 또한 무남독녀 외동딸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실질적 가장이 됐던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집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집안을 책임져야 했다는 게 꽤나 큰 짐이었다. 왕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힘든 일을 겪으며 심하게 상처를 받을 때는 잠수교를 운전하며 가다 빠져 죽고 싶은 적도 있었다고...

• “한 남자의 아내, 아이들 엄마로만 살고 싶어요”.

(2) 피고 동아일보는 여성동아 2006년 3월호 표지에 「‘○○과 □□’의 ○○역 차□□ 은퇴 후 근황」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목차에 「‘○○과 □□’ 끝으로 은퇴한 차□□ 근황」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지3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보도하였다. 위 기사에는 원고가 연예인으로 활동할 당시의 사진과 최근의 사진이 실려 있다.

결혼과 함께 은퇴한 드라마 “○○과 □□” 원작 주인공 차□□ 요즘생활

•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며 사는 데 만족, 조용히 살고 싶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2004년부터 1년간 선교전문 채널 ○○○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차□□의 즐거운 책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일주일마다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화제의 기독교 서적을 소개하고 저자와 인터뷰 등을 가졌다...

그는 또 틈이 날 때마다 간증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고 한다. 2003년 <동아일보>에는 이런 그의 활동이 소개되기도 했다. 차□□은 여전히 언론에 자신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을 꺼렸다. 지인을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조용히 살고 싶다. 남편을 비

릇한 가족들도 내가 나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3) 피고 학원사는 주부생활 2006년 3월호 표지와 목차에 「‘○○과 □□’ 궁금한 왕년의 톱스타 차□□이 직접 전한 근황인터뷰」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지4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보도하였다. 위 기사에는 원고의 연예인 활동 당시의 사진과 ‘차□□이 살고 있는 강남의 한 아파트와 그녀가 집사로 있는 ○○○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 아래 아파트 전경과 교회의 사진이 실려 있다.

원조 ‘○○과 □□’ 차□□ 전 야망보다 사랑을 택했어요.

• 인터넷 검색 순위 1위에 오른 차□□

기자는 무작정 그녀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 몇 번의 방문 끝에 어렵사리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 “○○와 □□”은 저의 젊은 날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드라마잖아요. 정말 감회가 새롭더군요. 드라마를 보면서 예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 시절 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 첫 방송 보면서 옛 추억을 떠올렸다

○○○ 교회집사로 간증 등 신앙생활

• 저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이고 한 집안의 며느리이죠. -이하 중략- (이하 위 각 기사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4)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된 이후, 인터넷의 다른 매체들도 ‘여성조선’의 기사를 인용한 글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 갑 5, 11, 12, 13호증, 을가 4, 5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 7호증, 을다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이□□의 각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① 원고가 피고들과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를 허위로 작성하고, ‘심경고백’, ‘갑자기 사라진 이유’, ‘연예인 시절에 타 전속사 텔런트에게는 텃세가 있어 힘들고 외로웠다’, ‘지금 컴백의사 없지만 은퇴한 것은 아니다’, ‘왕따’, ‘강물에 빠져죽고 싶었다’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실고, 남편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을 밝히고, 원고의 집, 원고가 다니는 교회의 사진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② 광고 및 이 사건 각 기사에 원고의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며, ③ 이 사건 각 기사에 원고의 사생활, 가족관계, 원고의 집, 원고가 다니는 교회 등을 공개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가.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1) 일반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타 방송사 전속탤런트로서 드라마 출연 시절 힘든 생활을 보냈고, 지금 컴백의사가 없으며, 여성잡지의 인터뷰에 응했다는 내용(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의 남편의 나이와 이름, 원고의 집, 원고가 다니는 교회를 밝힌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심경고백”, “텃세가 심했다”, “왕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힘든 일을 겪었다”, “잠수교를 운전해 가다 빠져 죽고 싶은 적도 있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앞에서 본 범りに 비추어 볼 때, 이들 기사의 전반적인 취지가 1980년대 ‘○○’과 ‘□□’이라는 TV드라마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하여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원고가 1988년 결혼과 함께 홀연히 연예계를 은퇴한 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현재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행복하게 지내면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 및 신앙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연예인이 아닌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주로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고, 일반 독자들에게 주는 이미지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여성잡지의 기사제목은 일반적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끌려는 의도에서 다소 선정적으로 제

목을 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독자들도 일정한 범위의 과장과 허식에 익숙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초상권 침해여부

(1) 일반론

초상권이란 우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포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나 2호증,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사에 실린 원고가 연예인 활동을 할 당시의 사진은 원고의 과거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촬영되어 이미 세상에 널리 공개된 사진이고, 이 사건 각 기사에 실린 원고의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 중 ① ‘여성조선’에 실린 사진은 원고가 ○○○ TV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진이고, ② ‘여성동아’에 실린 사진은 원고가 ○○○ 교회의 집회에서 간증을 할 당시 동아일보 사진기자의 요청에 의해 촬영되어 2003년 3월 22일자 동아일보에 ‘신나는 교회...○○○교회 상식 깬 세대별 전도집회 화제’란 기사에 게재되었던 사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사진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던 것이거나 원고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일반 독자들에게 주는 이미지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중에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사진들이 원고의 과거 연예활동과 현재의 선교활동에 관한 보도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권)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1) 일반론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규

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그러한 권리를 이하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이라 한다).

그러나 사생활 보도가 전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항이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 사인의 입장에 선 경우 공개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즉, 일반인의 감각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됨으로써 심리적인 부담, 불안을 느끼게 될 사항)"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 학원사에 대하여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는 '여성조선'에 "원고가 '○○과 □□'출연당시 타 방송국의 텃세로 인하여 몹시 힘들었고, 왕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힘든 일을 겪으며, 자살 충동을 느낀 적도 있었다. 원고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과 6개월 정도 교제한 후 결혼하였으며, 현재 2남 1녀를 두고 있다. 원고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남편은 남존여비사상이 짙은, 여자에게 자유를 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말대답한 적이 몇 번 없어요'"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사실, 피고 학원사는 '주부생활'에 원고가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10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한 사실과 남편의 실명을 보도하고, 원고의 집과 교회의 사진을 실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각 기사 내용이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피건대, 원고가 연기자로 생활할 당시 따돌림을 당해 자살충동까지 느꼈던 일, 원고의 가족관계와 거주지, 원고의 남편의 신상과 성격 등은 원고와 관련된 사적인 사실에 해당하고, 위 사실들은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 할 것이다(피고 조선생활미디어, 학원사는 원고가 C○○ TV 출연 당시 또는 ○○○ 교회의 전도집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말했다므로, 이는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C○○ TV는 특정 교회의 위성방송채널로 별도의 수신기를 설치해야만 볼 수 있고, 선교 및 신앙활동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방송으로서 일반대중을 위한 연예채널이 아니라는 점, 원고가 특정 교회의 집회에서 전도의 목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체험을 고백한 것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평범한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왕따를 당해 자살충

동을 느꼈다거나 배우자가 남존여비 사상이 짙은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는 보도, 가족의 실명공개는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피고들과의 인터뷰를 거절하였는 데도, '여성조선' 과 '주부생활' 기사의 경우, 제목 및 그 표현에 있어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기사내용의 상당부분이 원고와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점, 정보화 시대의 특성상 여성지에 특정 기사가 보도되면 다른 많은 매체를 통하여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세간의 관심이 더욱 커지며, 실제로 인터넷에 이 사건 '여성조선' 기사를 인용한 글이 다수 게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와 피고 학원사는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나) 피고 동아일보사에 대하여

피고 동아일보사가 '여성동아'에 '원고는 연예계 선배의 소개로 개인사업을 하던 지금의 남편(55)을 만났으며 현재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고, 양재동에 위치한 한 교회의 집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원고가 끝내 거절해 인터뷰는 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 기사의 하단부에 2003년 3월 22일자 동아일보의 '신나는 교회'...○○교회 상식 께 세대별 전도집회 화제'란 기사 내용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스물세 살에 부친을 잃은 뒤 두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다 교회에 나간 후 마음의 평정을 얻었고, 남편은 결혼 전 함께 교회에 나가자고 약속했는데 결혼 후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나, 앞으로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리라고 믿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위 기사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여부가 문제될 정도의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인터뷰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영향력있는 타 매체에 보도되었던 부분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도 힘든 점 등을 고려 할 때 위 기사는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관련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

(1) 피고 조선일보사, 학원사의 주장

위 피고들은 ① 원고는 과거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 연예인이었고, 원고가 출연했던 드라마는 지금도 케이블 TV를 통해 종종 방송되며, '○○과 □□'의 리메이크 소식과 동시에 원고에 관한 기사가 쇄도했는바, 원고는 공적 인물이고,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보도한 것이며, ②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원고와 전화 인터뷰를 한 후 원고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고, 과거 원고가 ○○○

TV에 출연하여 과거의 일을 털어놓았던 내용을 취재하여 기사의 내용을 보강하였으므로, 인터뷰하였다고 기사화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어떤 보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므로,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衡量하여 그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할 만한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생활 공표의 위법성은 공표된 사생활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표현 목적의 공공성), 본인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표현 내용의 진실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여부

한때는 공적 인물이었거나 유명사건과 관련된 사인의 사생활이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원고는 1978년경부터 TV 텔런트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88년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한 후 일체의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원고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 할 것이고,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의 사생활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위 피고들은 원고가 2004년부터 1년간 COO TV에서 매주 한 번씩 ‘차□□의 즐거운 책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므로, 공인이라고 주장하나, COO TV가 선교를 목적으로 한 특정 교회의 위성방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 원고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을가 1호증의 1, 을다 2호증의 2, 을다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이□□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가 기자가 묻는 질문에 몇 가지 대답은 했으나, 인터뷰를 분명하게 거절하고

기사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만일 위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기자 신분임을 밝히고 수시로 전화하여 질문과 답변이 오갔을 때는 언제나 그 전화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인터뷰가 있었고, 기사화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간주하여 보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4. 손해배상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 학원사는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기사를 여성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요 경험직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여성조선' 과 '주부생활' 의 기사가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기사의 내용, 표현방법, 언론기관으로서의 위 피고들의 지위 및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를 각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원고는 위자료의 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정정보도문의 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인정되는 부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청구도 위자료 지급 이외에 별도의 정정보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원고에게, 피고 조선일보생활미디어, 학원사는 위자료로 각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6. 3. 31. 부터 위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7.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동아일보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정은영

판사 노태홍

□

**안기부 간부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내용의 실행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해 관리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7. 5. 9.자 판결 (2004나83398)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전 안기부 간부들, 주식회사 월간조선과 그 소속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전 안기부 간부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및 피고 월간조선과 소속 기자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문건이 안기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또는 이에 유사한 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안기부 직원이 개별적, 자의적으로 안기부 내 상부에 대한 건의용이나 ‘광화문’ 팀에 대한 보고용으로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에 광고발주 중단을 암시하였을 가능성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이 이 사건 문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안기부 외의 다른 국가기관의 압력을 받거나 혹은 그 자신의 판단으로 원고의 광고발주를 기피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광고수주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문건의 작성시점보다 앞선 1996년 말경부터이고, 특히 피고 박○○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가 1996년 12월 21일에 이르러서야 안기부 제1차장으로 임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건 작성 당시 피고 전 안기부 간부들이 안기부의 부장이나 제1차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전 안기부 간부들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의 실행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하여 부하직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 전 안기부 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피고 전 안기부 간부들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 한겨레신문은 월간조선의 2001년 4월호 『특종 - 안기부가 1997년 4월 5일 작성

한 「한겨레신문 종합분석」 입수』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 한겨레신문이 로동신문 서울지국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친북·좌익 성향의 보도를 하여 왔고, 광고수주를 위해 국영기업체를 협박하거나, 재벌대기업의 안전사고 등에 대해 축소 보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 전 안기부 간부들에게는 “피고들의 직권 남용 행위로 인해 언론기관으로서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당하고 법인으로서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각자 7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 월간조선과 소속 기자들에게는 “안기부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 각자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2집 240~261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4나8339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정 태 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 정 희

피고, 항소인 : 1. 권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창 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 한 흥

2. 박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 순 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대표이사 조 갑 제

2. 조 갑 제

3. 조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들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0. 선고 2001가합34985 판결

변 론 종 결 : 2007. 3. 21.

판 결 선 고 : 2007. 5. 9.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권○○, 박○○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조갑제, 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 권○○, 박○○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각 32,302,2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2. 2.부터 2007.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원고와 피고 권○○, 박○○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의 항소비용 및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조갑제, 조○○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권○○, 박○○은 연대하여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5.부터, 피고 주식회사 월간조선사(이하 피고 '월간조선사'라 한다), 조갑제, 조○○은 연대하여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월간조선사는 제1심 판결송달 후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조선'에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그 표지 중앙부분에 제목을 24급 고딕활자로, 표지 다음 면에 제목을 24급 고딕 활자로, 내용을 18급 명조 활자로 하여 게재하고, 피고 월간조선사가 그와 같은 정정보도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2,000만 원씩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권○○, 박○○ :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원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월간조선사, 조갑제, 조○○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부터 2004.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월간조선사, 조갑제, 조○○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면 아래에서 4행의 '2003. 1. 3.'을 '2001. 1. 3.'로, 6면 아래에서 5행의 '제공 거부함으로써'를 '제공을 거부함으로써'로, 7면 13행의 '정부대책 비판'을 '정부시책 비판'으로, 7면 16행의 '칼럼리스트'를 '칼럼니스트'로, 8면 3 내지 7행의 '마지막으로 ... 첨부하고 있다'를 '이어 '한겨레신문 기사와 북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비교'에서는 정부의 통일방안 비난, 국가보안법 개폐주장, 안기부 개폐주장, 미전향 출소자 북한송환 주장, 밀입북 사건 두둔, 핵문제 관련 북한입장 두둔, 박○ 총장의 주사파 폭로발언 비난, 좌익사범 석방·수배자 해제 촉구'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기사·사실·칼럼 내용과 북한 신문·방송의 보도내용을 표를 통해 비교·서술하고, 끝으로 '한겨레신문 기사와 북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대비자료'에서는 위와 같은 비교·서술의 대상이 된 한겨레신문의 기사 등의 원문과 북한 로동신문이나 중앙방송의 보도내용 원문을 상호 대비하는 방식으로 첨부해 두고 있다'로, 11면 10행의 '2003. 3. 14.'을 '2001. 3. 11.'로, 11면 18행의 '2003. 3. 15.'을 '2001. 3. 15.'로, 12면 3행의 '2003. 3. 14.'을 '2001. 3. 14.'로, 12면 12행의 '2003. 3. 16.자'를 '2001. 3. 16.자'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판결 이유 '제1항'의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권○○, 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권○○, 박○○(이하 '제2항'에서 '피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문건 작성 당시 안기부의 부장, 제1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구 안기부법이 정한 직무범위를 넘어 원고를 사찰하여 원고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였고, 또한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고의 사세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광고발주를 중단케 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언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가사 이 사건 문건이 안기부의 공식적인 업무의 하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문건의 작

성 및 그 내용의 실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내버려둔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안기부 재직 당시 이 사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는 등 이 사건 문건의 작성에 관여한 바 없고 나아가 그 내용을 실행하는 데 대하여도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문건의 작성

국가정보원이 2001. 3. 14. 공보실을 통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존재 사실을 부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측 직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운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 이외에 이 사건 문건이 안기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 월간조선사, 조감제, 조○○이 이 사건 문건이 안기부에서 작성되었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이 원고의 조직·경영실태·구성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 보도태도·구성원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한겨레’의 기사 등의 날짜를 적시하여 열거하고 있음은 물론 일반인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의 신문·방송 역시 날짜와 제목을 적시하여 ‘한겨레’의 기사 내용과 비교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세확장 등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한 주체가 조직력, 정보력, 영향력을 구비한 국가기관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문건은 국가기관 중 특히 ‘안기부에 대한 시각’이나 ‘안기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논의하고 있거니와, 안기부가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본래의 직무인 국가안전보장업무 이외에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사찰을 일부 수행하는 등의 파행을 보이기도 하였고, 특히 언론기관에 대한 사찰을 위해 별도로 ‘언론팀’을 조직하고 주요 언론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기사 내용을 파악하고 언론기관의 조직, 구성원의 이념적 성향, 보도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는데(피고 권○○도 이 사건 문건 작성시점 직전인 1996. 12. 9.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언론팀’

의 존재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국내정보수집요원이 언론사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다면 이 사건 문건은 국가기관 중 안기부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한편, 국가정보원은 제1심 법원이 2002. 4. 18., 2002. 5. 28., 2004. 7. 14.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존재 여부에 관해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을 하였는데도 그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문건 내용의 실행

안기부가 이 사건 문건 내용에 담긴 장·단기 대책이나 원고에 대한 고려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 역시 없다.

다만, 이 사건 문건의 작성시점 직전에 이 사건 문건에 대책으로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 등 국영기업체들이 원고에 대한 광고발주를 중단하기도 하여 원고가 광고수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문건은 원고의 사세확장 등을 저지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적시된 대책들 중 상당부분은 정상적인 법집행, 행정규제 또는 통상적인 활동 등의 외관을 띠고 있어 일반인으로서 그 과정에 안기부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특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안기부가 이 사건 문건 내용에 담긴 대책 중 일부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든다.

(3) 피고들의 책임 여부

우리 민법이 불법행위의 원리로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가해자는 자신의 고의·과실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자인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권리 또는 보호법익에 대하여 '상대방 자신의 가해행위'가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자인 피해자에게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의 실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들 자신의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점, 즉 피고들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의 실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어느 정도로 개입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실행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내버려둔 잘못이 있다 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경우에도, 피고들에게 어떠한 관리감독 태만 행위가 있었는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

고, 이를 위해서는 과연 누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하였고 피고들이 그에 대한 관계에서 관리감독 할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1. 3. 15.자 ‘한겨레’에서 이 사건 문건 작성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의 아들 김○○과 정무수석비서관이던 이○○은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언론대책을 수립·집행하는 조직으로서 이른바 ‘광화문팀’을 구성하여 매일 일간신문의 논조를 보고받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하는 한편, 이○○이 총리행정조정실장, 재경원·외무·내무·국방·공보처 각 차관, 경찰청장, 안기부 언론홍보담당 1특보가 참석하는 차관급 언론대책 비공식회의를 매주 한 차례씩 주재했다고 보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문건이 위 ‘광화문’ 팀이나 안기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또는 이에 유사한 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한겨레’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나 안기부 개폐’ 등을 주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안기부 직원이 개별적, 자의적으로 안기부 내 상부에 대한 건의용이나 ‘광화문’ 팀에 대한 보고용으로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에 광고발주의 중단을 암시하였을 가능성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이 이 사건 문건을 아무 관계 없이 안기부 외의 다른 국가기관의 압력을 받거나 혹은 그 자신의 판단으로 원고의 광고발주를 기피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 조○○이 제1심에서의 피고 본인 신문 당시에는 자신이 국가정보원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문건을 입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문건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다른 문서와 함께 피고 조갑제의 사무실로 배달되어 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문건의 입수경위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 조갑제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문건이 자신에게 배달되어 왔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광고수주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문건의 작성시점보다 앞선 1996년 말경부터이고, 특히 피고 박○○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가 1996. 12. 21.에 이르러서야 안기부 제1차장으로 임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과 이 사건 문건 작성 당시 피고들이 안기부의 부장이나 제1차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그 내용의 실행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하여 부하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월간조선사, 조갑제, 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19면 7, 8행의 ‘이 사건 문건에 …… 첨가하기도 하였고’를 ‘이 사건 문건의 ‘한겨레신문 기사와 북한 신문·방송 보도 내용 대비자료’에 수록된 자료 중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와 ‘한겨레’의 사실의 각 일부만을 축소 인쇄하여 대비시켜 두기도 하였고’로, 19면 10행의 ‘게재하고’를 ‘진술하고’로, 21면 1, 2, 3행의 ‘그에 덧붙여 …… 비교·게재하였다’를 ‘그에 덧붙여 요약 부분의 서술 도중에 이 사건 문건의 ‘한겨레신문 기사와 북한 신문·방송 보도 내용 대비자료’에 수록된 자료 중 로동신문의 1994. 2. 25.자 “파쑈적인《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한겨레’의 1994. 10. 21.자 “보안법, 이제는 없애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실의 각 일부만을 축소 인쇄하여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게재하기도 하였다’로, 22면 7행의 ‘전문공개 부분’을 ‘요약 부분’으로, 22면 11행의 ‘5,000만 원에’를 ‘5,000만 원 상당의’로, 29면 12, 13행의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판결 이유 ‘제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 권○○, 박○○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4. 11. 2. 피고 권○○, 박○○(이하 ‘제4항’에서 ‘피고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각 32,302,2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이 당심에서 취소됨으로써 위 판결의 가집행선고도 당심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각 32,302,2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 이후로서 피고들이 구하는 2004. 12. 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권○○, 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월간조선사, 조갑제, 조○○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권○○, 박○○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 월간조선사, 조갑제,

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권○○, 박○○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김진현
판사 이우철

□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자료
또는 정황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9.자 판결 (2006가합66611, 2006가합73756병합)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5월 9일 장○○과 이○○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택상의 3녀인 장○○, 이승만의 양자인 이○○인 원고들은 피고 방송사가 방영한 드라마 「서울1945」에서 장택상과 이승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어느 정도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드라마의 작가나 제작자가 소재로 삼은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근거자료 또는 정황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그러한 근거자료 또는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추측, 풍자 내지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시된 사실이 중대한

허위로서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들이 여운형 암살 배후에 이승만, 장택상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마치 이승만, 장택상이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명확하게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드라마의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고, 원고 이○○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친일경력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 등에서 미군정으로부터 다소의 후원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근거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다소 과장되고 추측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거자료와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일 뿐 왜곡이나 억측 또는 중대한 허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66611 손해배상(기)

2006가합73756(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 1. 장 ○ ○

2. 이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배 호 성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혁, 임 상 혁

변론종결 : 2007. 4. 11.

판결선고 : 2007. 5. 9.

주 문 :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100,00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쟁점

장택상의 3녀인 원고 장○○, 이승만의 양자인 원고 이○○는 피고가 제작, 방송한 드라마인 ‘서울 1945’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에서 장택상, 이승만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 장택상이 친일경찰출신인 극중 가상인물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배후에서 지시한 것처럼 묘사됨으로써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는지 여부(쟁점 ㉠)

㉡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망인의 인격권을 훼손하였는지 여부(쟁점 ㉡)

㉢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가상인물인 친일파 문정관의 딸 문석경을 수양딸로 삼는 것으로 묘사된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망인의 인격권을 훼손하였는지 여부(쟁점 ㉢)

2. 일반론

가.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술의 자유는 창작소재, 창작형태 및 창작과정 등에 대한 임의로운 결정권을 포함한 예술창작활동의 자유와 창작한 예술작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것인데, 이러한 예술의 자유도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와 명예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나 예술작품이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할 경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재가 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그 예술작품의 창작자를 상대로 그로 인한 침해의 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그 인물이 사망하였다면, 그 유족이 망인의 인격권 침해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 명예감정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동일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예술작품이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예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모순, 충돌하는 두 법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객관적인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사실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일반대중의 욕구는 증대되어 가는 반면, 소재가 된 망인에 대한 유족의 추모감정은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점, 역사적이고 공적인 인물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평가와 비판은 균형있는 역사인식을 도출하기 위한 여론형성을 위해서도 더욱 장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예술활동의 자유는 역사적 인물인 망인의 인격권의 보호보다 우선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다.

나. 일반적으로 방송사에서 제작, 방송하는 드라마도 작가와 프로듀서를 비롯한 제작진들의 상상력에 의하여 가상적인 인물들이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를 영상화한 창작물로서 헌법상 권리인 예술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드라마에서도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어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문화예술의 한 기법인 소위 팩션(faction : 사실을 뜻하는 fact와 허구를 뜻하는 fiction의 합성어) 기법이 드라마 등 예술의 각 분야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기법이 사용된 드라마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해 그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 즉 ① 드라마의 근본적인 제작목적이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정면으로 재조명하는 것인지 여부, ② 드라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이 중심인물인지 배경인물인지 여부, ③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각 차지하는 비중, ④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드라마에 허구적 요소가 가미된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허구적 요소보다 사실적 요소가 강조된 소위 논픽션(nonfiction) 역사드라마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대로 사실적 요소보다 허구적인 요소가 더 많은 드라마의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강하게 인식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므로 드라마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판단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비록 드라마에서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약간의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불명확하고 모호한 묘사만으로 실존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또한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어느

정도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드라마의 작가나 제작자가 소재로 삼은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으로 수증할 정도의 근거자료 또는 정황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그러한 근거자료 또는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추측, 풍자 내지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시된 사실이 중대한 허위로서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같은 드라마에서 실존인물의 배역이 직접 하는 대사나 행동이 아니라 그 실존인물과 대립적인 입장에 있는 다른 인물의 대사를 통하여 그 실존인물에 대한 사실이 묘사될 경우, 이는 그 실존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당시 그와 대립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으로 본 그 실존인물에 대한 추측 또는 평가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라. 나아가 드라마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되어 이야기가 전개됨에 있어서 그들을 통해 묘사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허구로 승화되어 일반시청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다면, 비록 그들 사이의 이야기가 실제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먼저 이 사건 드라마의 성격을 살펴보고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및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드라마의 성격

이 사건 드라마는 일제시대 및 해방전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어린 시절 같은 마을에서 성장하였지만 출신계층과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허구의 가상인물들, 즉 김해경(한은정 분), 최운혁(류수영 분), 이동우(김호진 분), 문석경(소유진 분), 박창주(박상면 분), 문동기(홍요섭 분) 등을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그들 간의 사랑과 우정, 이념적 대립과 가족애 등을 그린 드라마이다. 이 사건 드라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로는 이승만, 장택상, 여운형, 김구, 김일성, 박헌영 등이 있는데, 총 71회분에 이르는 이 사건 드라마의 전체 방영분 중 이승만, 장택상은 제29회분에 이르러서야 처음 등장하고, 위 실존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의 횟수도 위 중심인물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며, 이들은 위 중심인물들간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배경인물로 등장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7 내지 22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하 이 사건 드라마의 대사나 장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위 인정근거를 원용하되, 그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나. 쟁점 ㉔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여운형 암살사건의 배후에 이승만, 장택상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별지1의 기재와 같고, 피고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별지2의 기재와 같다.

(2) 판단

별지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친일경찰출신인 박창주가 해방이후 수도경찰청장이었던 장택상을 찾아가 경찰로 다시 채용되고 조선정판사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승만과 접촉한 이후 그와 가깝게 지내다가, 이승만이 여운형을 비롯한 좌익세력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는 극우단체의 인물을 사주하여 여운형을 암살한 다음, 암살의 배후를 추궁하는 여운형의 측근 최운혁에게 “빨갱이 놈들에게서, 소련 놈들에게서 남조선을 지켜내는 분들이다. 나를 경찰청 보안과장 자리까지 끌어올리신 분들이고, 내게 조직을 만들 자금과 거사 자금을 내주신 분들이다. 네놈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분들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최운혁이 인민일보에 “미군정과 이승만의 분단 정책이 결국 남북통합을 주장하며 좌우합작을 성사하고자 하셨던 몽양 여운형 선생의 죽음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신는 것으로 묘사되며, 경찰의 방조 아래 여운형이 암살되었다는 취지의 나레이션도 나온다. 위 장면들만 본다면, 이 사건 드라마의 시청자들이 여운형의 암살을 사주한 박창주의 배후에 이승만 또는 장택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별지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장택상은 여운형 암살사건 이전에 수 차례에 걸쳐 박창주에게 여운형의 처리에 관하여 경계망동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하고, 이승만과 한민당을 위해서는 여운형이 죽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박창주를 보고는 상당히 놀란 표정으로 그를 질책하는 모습도 보이며(원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에서 장택상이 박창주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싫지 않은 기색을 보이는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묘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운형 암살사건 이후 그 수습과정에서도 이승만과 장택상은 그의 암살과 전혀 무관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이 사건 드라마의 전체적인 전개과정 에다가 다음의 사정, 즉 ① 극중 박창주가 여운형의 암살 배후를 묻는 최운혁에게 위와 같은 대답을 한 것은, 평소 독단적이고 저돌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박창주가 자기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여운형 암살을 지시하고도 자신과 대립적인 지위에 있었던 최운혁이 계속적인

추궁을 해오자 마치 자신의 배후에 거대한 세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위세를 과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어 위와 같이 대답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점, ② 경찰의 방조 아래 여운형이 암살되었다는 취지의 나레이션도, 여운형 암살사건 발생 직전에 혜화동 사거리 파출소 부근에서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달려와 여운형이 탄 리무진의 통행을 가로막고 바로 이어 암살범 한지근이 나타나 여운형을 저격한 다음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를 뒤쫓던 경호원 박성복이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최태화에 의해 공범으로 오인되어 체포됨으로써 결국 현장에서 암살범을 체포하지 못하게 되었던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경찰이 여운형의 암살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온 사정(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최운혁이 인민일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실는 것으로 묘사된 부분 또한 당시 여운형을 지지하던 좌익진영이 여운형 암살에 관한 입장과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힘든 점, ④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나 장택상이 직접적으로 여운형의 암살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는 점, ⑤ 이 사건 드라마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가상인물들에 의한 허구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마치 이승만, 장택상이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명확하게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이 사건 드라마의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 ㉔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 이○○가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① 조선공산당원들이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있던 조선정판사 안에서 조선공산당원인 이관술이 “허어, 참. 한민당이나 이승만은 친일 자본가 놈들 돈으로 흥청망청한다는데. 우리당은, 해방일보 찍을 종이 값도 부족하니...”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4회분), ② 조선정판사 사건 이후 이동우가 조선공산당을 비난하자 최운혁이 조선공산당의 처지를 옹호하면서 “한민당이나 이승만 박사 쪽은 친일파들이 갖다 바치는 돈이 넘쳐나겠지. 친일파 돈으로 조직을 키우고, 신문을 찍고, 우익단체를 후원하고! 조선공산당은 어떠냐? 당을 운영할 자금도 없고, 신문 찍을 종이조차 허덕인다.” 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5회분), ③ 일제시대 때

친일자본가인 것처럼 묘사된 가상인물 이인평의 비서가 이인평에게 “군정청 관재처에 전주 고무신 공장 불하 이자와 이차 불하 대금을 냈습니다. 돈암장에도 일금 오만원을 최강욱 비서관님에게 전했구요”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9회분)

(나) ① 해방 후 이승만의 귀국에 대해 박헌영을 비롯한 조선공산당원들이 대화를 나누던 중 이현상이 “이승만이 누군가! 과거의 유물 이씨 조선의 친족이네. 시대의 유물을 데려와 대체 어찌자는 건가, 미군정은?”이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29회분), ② 최운혁이 강의를 하던 당시 경성제대 강의실내에서 한 학생이 “이승만 박사께서 귀국하자마자,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해산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0회분), ③ 최운혁, 이동우, 문동기 등이 만나 당시 민족지도자들인 이승만, 여운형, 박헌영의 회동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던 중 이동우가 “이 박사님은 미군정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0회분), ④ 최운혁, 이동우, 오철형이 김구의 귀국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최운혁이 “(이승만 박사는) 누구보다, 미군정과 가까운 분이다. 이박사님이 하지 사령관에게 간곡히 권했다면, 백범 주석께서, 임정요인들과 더 일찍 귀국하셨을 수도 있을 게다. 설사 일찍 환국하시는 게 안됐다 해도, 그렇게 초라하게 귀국하시지 않도록, 환영식은 준비해 주실 수 있었다”라는 대사를 하고, 뒤이어 오철형이 “이승만 박사는 음흉한 반동이야!”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제31회분)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방 이후 이승만의 주도 아래 조직된 보국기금실행위원회가 1945. 12. 12. 대한경제보국회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족된 이후, 대한경제보국회는 1946. 4.경 당시 미군정 사령관인 하지의 정치고문이자 이승만의 개인 고문이었던 굿펠로우 대령을 통하여 미군정의 승인을 얻어 조선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1,000만 원을 이승만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특히 하지는 이승만과의 연락을 담당하던 스택 중위에게 위와 같이 모금된 자금은 이승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을 비롯하여 이승만 등 우익진영의 정치자금조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사실, 그런데, 당시 대한경제보국회의 간부진에는 민규식, 박기효 등 친일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승만은 해방 이후 하지의 끈질긴 요청 끝에 맥아더 사령관의 전용기를 통해 조선으로 귀국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그 외에 안철현, 서중석 등 여러 역사학자들의 논문에서도 이승만이 해방 이후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미군정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서술들이 다수 존재한다(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이처럼 이승만이 친일경력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 받았고 그 과정 등에서 미군정으로부터 다소의 후원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근거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앞서 본 위 장면들에서 극중 다른 인물들(특히 최운혁, 이현상, 오철형은 이승만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었던 인물들이다)의 대사를 통해 위와 같이 다소 과장되고 추측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근거자료와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일 뿐 왜곡이나 억측 또는 중대한 허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쟁점 ㉔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극중 가상인물인 친일파 문정관의 딸 문석경을 수양딸로 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드라마에서 문석경은 극중 가상인물인 친일파 문정관의 딸로 태어나 유복하게 유년시절을 보낸 후 아버지의 사망 등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완전히 몰락할 위기에 처하였다가 이승만과의 만남과 교류를 계기로 다시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야망과 질투의 화신으로 그려지는 가상인물이고, 이승만은 적어도 문석경에게 있어서만큼은 문석경의 이러한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적인 존재로서 배경인물의 기능만 하고 있을 뿐 역사적 인물로서 크게 부각되어 있지는 않다. 이 같은 이 사건 드라마의 전체적인 전개과정 및 실존 인물과 가상인물의 결합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승만과 문석경 사이의 이야기는 상당한 정도로 허구적인 이야기로 승화됨으로써 일반시청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비록 그러한 허구적인 이야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가사 그것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은 문석경으로부터 친일파인 문석경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정 등을 전해 듣고는 “세상에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지. 자네 아버님이 친일을 한 것은 결코 잘못이 없다. 말할 순 없다만, 그래도 함께 보듬고 갚아야 하는 것을... 소련과 공산당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라고 말하는 대사(제35회분) 등을 통해 친일파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동시에 밝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 이승만이 문석경의 처지를 가엽게 여겨 그를 수양딸로 삼게 되는 극적인 설정으로 인하여 원고 이○○의 주장처럼 이승만이 주책없고 흥물스럽게 그려지거나 친일파와 손잡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것처럼 묘사됨으로써 이승만의 인격권이나 그 유족의 추모의 정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한 창 호

판 사 노 태 흥

판 사 이 중 훈

〈별지 1~2〉 방송내용 생략 - 편집자 주

